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권해 이행지표 개발 결과 발표회

일시 2023. 12. 15. (금) 오후 2시~5시

장소 국회 제2세미나실

시간	순서	발표
14:00-14:30	환영사 및 축사	국회의원, 연대단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등
14:30-15:00	지표 개발 최종안 및 기초선조사 결과	김기룡 /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15:00-15:15	지표개발연대 활동 및 향후 계획	정혜란 / 한국장애포럼 활동가
15:00-16:15	분야별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기초선 조사 결과	조미연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소영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선임
		이정하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정다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16:15-16:25	UNCPRD 이행 점검 협력안	조은영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
16:25-16:35	UNCPRD 이행 계획	이승엽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16:35-17:00	질의응답	온/오프라인 참석자

지원 **D'LIGHT**
범무법인 디라이트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예지**

KDF Korean
Disability
Forum

전국장애이동권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사단법인두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이학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피플퍼스트

목차

■ 환영사 및 축사

- ◎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4
- ◎ 윤종술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 6
- ◎ 강승욱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변호사) 8

■ 발표

- ◎ 지표개발 최종안 및 기초선조사 결과 /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 11
- ◎ 지표개발연대 활동 및 향후 계획 / 정혜란 한국장애포럼 활동가 75
- ◎ 분야별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기초선조사 결과
 - 조미연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83
 - 김소영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선임 91
 - 이정하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109
 - 정다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115
- ◎ UNCRPD 이행 점검 협력안 / 조은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123
- ◎ UNCRPD 국가 이행 계획 / 이승엽 보건복지부 사무관 125

■ 참고자료

- ◎ OHCHR 지표(국문 / 영문) 127

환영사 및 축사

환영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 지표 개발 결과 발표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행사를 함께 준비한 한국장애포럼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으로 함께해
주신 김기룡 교수님, 정혜란 활동가님, 정다운 활동가님, 김소영 선임님,
이정하 활동가님, 조미연 변호사님, 조은영 조사관님, 이승엽 사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 2, 3차 심의에 따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31년까지 한국정부는 4, 5, 6차 병합 보
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간보고서 검토 기한까지 포함하면 10여 년
이 남은 셈입니다.

앞으로 10년,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지난 4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
행지표 개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표회에서는 지난 토
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된 한국정부의 2, 3차
최종견해 이행 점검지표와 기초선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발표회가 정부
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
랍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노력한 장애당사자 국회의원
으로서,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장애인 권리를 보

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 지표 개발 결과 발표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회의원 김예지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 윤종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귀빈 여러분, 공동주최로 뜻 모아주신 김예지 의원님과,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법무법인 디라이트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참석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를 발표하는 오늘 이 자리를 열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전 세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장애인의 권리를 담은 전 세계인의 약속이자, 대한민국 헌법에도 준수 의무가 명시된 중대한 인권 규범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이라면 이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은 여전히 미진한 실정입니다.

지난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한국이 받은 2,3차 최종견해는 한국 사회 장애인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 통합 교육 실현,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 노동권 보장 등은 2014년 1차 최종견해와 2, 3차 최종 견해가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10년여간의 시간 동안,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는 반증입니다.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다음 최종견해에서도 반복해서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민사회의 점검과 이행 촉구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 규범의 가치 기반 규범 서술인 인권 기준과 원칙을 실제 적이고 실행 가능한 메시지로 전환하여 정책입안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이 규범 이행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며 인권 지표 제작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강조한 바 있습니다.

최종견해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장애인 정책을 국제 규범에 부합하게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전 세계적 선례를 마련한 지표개발단에 큰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한국장애포럼은 앞으로도 단단한 국제 연대를 확장하고,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 윤종술

축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강송욱 변호사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대한민국 정부 2,3차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을 위하여 고민하고 힘써 주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연대, 이에 참여하여 주신 한국장애포럼(KDF)을 비롯한 국내 장애계·법조계 단체 및 실무 담당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행지표 개발 결과 발표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도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번 사업에 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 2022년 9월경 내어 놓은 대한민국 정부의 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8년만에 받는 두 번째 평가입니다. 그러나 최종견해는 2014년 1차 국가보고서에서 이미 지적되었던 많은 내용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반복하여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반성과 함께 이번 2,3차 최종견해는 반드시 그 실질적인 이행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이행지표는 대한민국 정부의 최종견해 이행을 견인하고, 이를 면밀히 점검하며 감독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운동 활동가, 시민단체 및 학계 등 여러 당사자들이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오랜 세월 노력하고 투쟁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장애인권 현실은 아직 개선될 점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이행지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장애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길잡이가 되어 주리라 확신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행지표 개발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정부 2,3차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을 위한 소중한 노력이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 협약 준수, 나아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의 온전한 보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강송욱

지표개발 최종안 및 기초선조사 결과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기초선 조사 결과

2023. 12. 15.

지표개발단: 김기룡(중부대학교), 김동호·김소영(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연운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정하(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부민주(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이재민(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김수원(한국피플퍼스트), 우정규(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학인(전국장애인아학협의회),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주현(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다혜(사단법인 두루),
최용걸(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지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미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최한별·정혜란(한국장애포럼)

1.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개요

1) 개발 목적

-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최종견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보 제공
 -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현재의 국내 장애인 권리 보장 수준 확인
 - 최종견해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 평가)할 수 있는 목표 수준 파악
 - 최종견해에서 강조하거나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사항 확인
 - 최종견해에 대한 담당 공무원, 전문가, 종사자 등의 이해 증진
 - 최종견해에 대한 장애인 및 가족의 이해 증진

2) 개발 원칙

-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개발하였음
 - 타당성의 원칙: 최종견해 내용에 부합하는 지표인가?
 - 최종견해의 배경, 의도 및 주요 내용 등을 대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지표로 개발
 - 최종견해 관련 해당 조항의 내용을 반영한 지표로 개발

- 측정 가능성의 원칙: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지표인가?
 - 가급적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량지표로 구성하고, 해당 측정요소를 알아볼 수 있는 정량 지표를 개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례 수집 등 주관적 지표 제시
- 실효성의 원칙: 최종견해 이행 여부를 모니터하고, 최종견해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지표인가?
 - 최종견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데 효과적인 지표로 개발
 - 최종견해의 이행 수준을 평가할 수 있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 권고 이행에 필요한 후속 정책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발
- ※ 인권 조약 관련 지표의 기본 구성 원칙에 입각하여 지표 개발
 - 조약의 관련 조항과 위원회의 일반 논평에 주로 기술된 바와 같이 인권의 규범적 내용에 대해 확인된 지표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
 - 의무 이행자, 주로 국가의 인권 의무에 대한 약속과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행하는 노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둠
 - 모든 인권을 동등한 입장에 두고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을 강조
 - 인간의 권리, 행위 또는 부작위, 책임 및 구제 메커니즘(법적, 행정적)을 포착하는 지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차별금지, 평등, 참여, 책임, 법의 지배, 정당한 절차, 올바른 거버넌스 및 구제(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등 포괄적인 인권 규범을 인식하고 반영
 -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위해 맥락상 의미 있는 지표를 제시하는데 노력

3) 개발 절차

-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개발하였음



- 첫째, 내용분석 단계에서는 최종견해의 내용과 구체적 의미를 파악하는 등 핵심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음
- 둘째, 측정요소 개발 단계에서는 최종견해 내용 중 지표를 통해 측정할 필요가 있거나 측정할 수 있는 사항을 측정요소로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
- 셋째, 지표화 단계에서는 핵심내용과 측정요소 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실효성, 측정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표안을 도출하였음
- 넷째, 팩트시트 작성 단계에서는 개발 지표의 내용과 의미 및 측정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음
- 다섯째, 개발된 지표안과 팩트시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음

4) 개발 형식

- 최종견해 이행 지표는 지표별 팩트시트와 최종견해 내용별 개발 지표 리스트로 각각 개발, 정리하였음
- 지표별 팩트시트의 형식은 다음과 같음

항목		내용		
지표명		6-a-1. 장애 범주 확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지표 근거		CRPD 또는 CRPD 관련 일반논평 근거 조항(단락)		
		일반원칙 및 의무(제1~4조)		
		최종견해 내용 전문		
		(a) 국내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을 협약의 조항에 따라 검토하고, 특히 심리사회적장애인, 지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HIV/AIDS 감염장애인 등의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여, 그들의 특성과 욕구가 인정되도록 보장할 것		
지표 특성	지표 유형	구조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
	측정 방식	양적 사실 기반		질적 주관적 평가
지표 핵심 내용		<p><i>(권고별 측정요소(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제시)</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 및 개정 ○ 미등록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지원하는 법률과 정책의 수립 		
지표 정의		<p><i>(제안하는 지표의 개념 설명)</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미등록 장애인(시청각 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HIV 감염 등)을 인정하고, 개별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지표 산출방법 (측정방법)		<p><i>(지표를 측정하는 방법, 지표의 값/내용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절차 제시)</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장애 개념을 고려하여 장애 범주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여부 		
비고		<p><i>(아래와 같은 사항 제시 가능)</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개발 과정에서 참고하였거나, 참고할만한 자료명 제시 ○ 지표 측정(산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제시 ○ 그 외 지표 개발 과정에서 검토/고민되었던 내용이 있다면 간략히 제시 		

- 최종견해 내용에 따른 개발 지표 리스트는 최종견해 전문, 최종견해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방법, 지표형식 및 소관부처 순으로 각각 제시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로

대체함

3.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결과

1) 개요

- 73개 번호로 구성된 최종견해 중 우려, 제언, 일반적 사항 등을 제시한 37개는 제외하고,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 포함된 36개 최종견해를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하였음
- 36개 최종견해의 핵심내용 및 측정요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견해의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장애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측정 가능한 형태로 지표안을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 총 148개의 지표를 개발하였음
- 148개의 최종견해 이행지표 중 측정이 어렵거나, 중복된 내용을 담은 지표 37개를 삭제하고 111개를 최종 선정함
- 111개의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50개의 정량지표와 61개의 정성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량지표는 수량화된 정보를 통해 숫자, 비율, 값 등으로 표시할 수 있고 수치화된 평가 준거를 통해 이행, 부분이행 또는 미이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하고, 정성지표는 해당 최종견해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질적 자료 또는 현황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행, 부분이행 또는 미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된 지표를 말함
 - 정량지표는 다시 사실에 기반하여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기존 자료를 활용해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구분되며, 최종견해 이행지표의 정량지표는 사실 기반 양적 지표 46개와 주관적 평가 기반 양적 지표 2개로 구성
 - 정성지표는 다시 사실에 기반하여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기존 자료를 활용해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구분되며, 최종견해 이행지표의 정성지표는 사실 기반 질적 지표 59개와 주관적 평가 기반 질적 지표 2개로 구성
- 또한 111개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구조지표, 과정지표 및 결과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구조지표(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가가 인권 조약을 비준한 후에는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가 이를 이행하겠다고 받아들인 기준, 법적 근거, 정책, 제도적 메커니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말함(총 54개 지표)
 - 국가가 해당 내용(협약의 해당 조항에서 제시한 사항)을 수행하려는 수용, 의도, 약속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지표예)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국가가 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 직업 및 기술 교육에 관한 국가 정책의 기간 및 적용 범위
 - 과정지표(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인권 약속을 원하는 결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의무 이행자)의 지속적인 노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구조적 지표와는 달리, 여기에는 의무 이행자가 현장에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정책과 구체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도 포함됨(총 43개 지표)

→ 국가가 해당 내용을 원하는 결과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책적 조치와 행동 프로그램을 평가예) 예산 할당에 따른 지표, 접수된 인권 불만사항 및 시정된 비율, 특정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의무 이행자가 확대하는 인센티브 및 인식 조치, 특정 기관(예: 국가인권기구, 법률 시스템)의 기능 변화

- 결과지표(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주어진 상황에서 인권 향유 상태를 반영하는 개인 및 집단의성취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총 14개 지표)

→ 인권 향유 증진을 위한 국가 노력의 결과를 평가예) 사회 보장 제도에 참여하는 노동력의 비율, 오심 사례가 보고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상을 받은 피해자의 비율 그리고 대상 인구 그룹별 교육 수준(예: 청소년 및 성인 문해율)

- 111개의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모두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그 이행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UN장애 인권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지표이므로, 각 지표가 어떤 부처 소관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 하였음.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지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57개), 그 다음으로 법무부(13개), 고용노동부(12개), 행정안전부(9개), 교육부(7개), 국토교통부(6개), 여성가족부(5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2개), 외교부(4개), 문화체육관광부(2개)로 나타났으며, 법원행정처(5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4개), 방송통신위원회(3개), 국가인권위원회(1개), 통계청(1개)이 담당해야 할 지표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2) 개발 결과

○ 개발된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다음 표와 같음

<표>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에 따른 이행지표 개발 결과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6	6-a. 장애 범주 확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 기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미등록 장애인(시청각 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HIV 감염 등)을 인정하고, 개별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사회적 장애 개념을 고려하여 장애 범주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여부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6-b. 장애정도판정기준문항 중 ICF에 근거한 환경요인 등을 반영한 문항의 비율	· 장애판정제도가 ICF에 근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법적 환경적 장벽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장애정도판정 질문 항목 중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질문 항목 수 ÷ 장애정도판정 전체 항목(기준)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8	8-1. 선택의정서 비준	·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선택의정서 비준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외교부
10	10-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중 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을 대표하는 위원의 비율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 구성 시 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 등 장애 유형· 정체성· 단체 유형 등을 고려한 모든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을 대표하는 위원 수 ÷ 전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12	12-a. 장애인의 다중적·교차적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	·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장애 차별 종식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전략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또는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12-c. 장애인 권리 관련 소송 패소 장애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및 변제 시스템 마련 등 공정한 보상 제도 실시	· 국내 소송비용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에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이 상대방 변호사 보수 부담에서 면제될 수 있는 소송비용 또는 변제 지원 관련 방안, 원칙 또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또는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12-d.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절차(지침)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 등 장애 차별 시정 기구의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 사건 발생시 적용되고 있는 조사 및 권리구제 지원 절차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별도의 효과적 조사 준거 마련 필요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또는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국가인권위원회
14	14-b. 국가 수준 장애 정책 내 성인지 계획 및 예산 반영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등 국가 수준 장애인 정책 내 성평등 관점에 입각한 정책 과제 수립 및 예산 반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14-c-1.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 차별 관련 법령 내 장애여성·소녀 차별 금지 조항 반영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다중 및 교차 형태의 차별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14-c-2.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다중적·교차적 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다중적·교차적 차별 시정을 위하여 국가 수준의 정책 방향 수립, 관련 정책 내 반영 여부, 별도의 국가 전략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14-d. 주요 선출직 공무원 및 각 정당의 해당 후보자 선출시 장애여성 할당제 도입	·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 및 각 정당의 해당 후보자 선출시 장애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관련 정책 수립·시행 또는 정당별 당헌·당규 개정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6	16-a-1. 관련 법령 내 장애아동 참여권 관련 사항 규정	· 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장애아동 관련 법령 내 장애아동의 참여권(자신의 의사를 존중받고,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16-b-1. 국가 수준의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내 장애아동 지원 사항 반영 비율	· 아동복지정책, 청소년복지정책 등 국가 수준의 지역사회 복지 정책 내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과제 수 ÷ 국가 수준의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과제 수) × 100 * 국가 수준의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과제 목록 정리 필요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17-c. 통합놀이터 설치	· 기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	· 해당 사항을 반영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등 장애아동의 놀이터 접근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법령에서의 장애아동의 접근권 및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한 관련 법령 제·개정 여부로 확인		실기반)	부
18	18-a-1. 장애인 인식 제고 및 편견 대항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 장애인 단체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장애인의 인식 제고와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18-a-2.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 등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 비율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교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자 수 ÷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공무원, 교사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참여 대상자 수) × 100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참여 대상자 수 확인 필요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20	20-a.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못하는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 관련 법령에 건축물 규모, 수용 가능 범위,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장애인의 완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20-b. 국가 접근성(기준의 구축 및 법적 강제 수단 마련 등) 전략 수립	· 접근성 관련 협약의 각 조항(제5조 ~ 30조) 내용을 포함한 국가 접근성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20-c-1.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의 저상버스 확보 비율	·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의 휠체어 이용 가능 저상버스 도입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중 저상버스 수 ÷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국토교통부
	20-c-2. 음성 및 읽기 쉬운 교통 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 수준의 계획 수립	· 음성, 수화 및 읽기 쉬운 표시 등 장애인의 교통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 수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국토교통부
	20-c-3. 휠체어 이용 등 모든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정류장 또는 버스터미널 비율	·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등의 버스 정류장 및 터미널이 휠체어로 탑승이 가능한 환경(이동편의시설 등 확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정류장 및 터미널 수 ÷ 시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국토교통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정류장 및 터미널 수) × 100			
	20-d-1. 교육시설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점자 디지털 기기 보급 비율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및 고등교육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율(장애인이 원하는 형태의 디지털기기 지원 비율 포함)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교육시설 이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수 ÷ 교육시설 내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상 시각장애인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교육부
	20-d-2. 가정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점자 디지털 기기(프로그램 포함) 보급 비율	· 가정 내 생활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율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수 ÷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상 재가 시각장애인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방송통신위원회
22	22-a-1.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등의 자살과 실종 예방에 대한 정책 수립	· 자폐성장애인, 심리사회장애인 등에 대한 자살/실종 예방과 대응 정책 및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22-a-2. 부모 등 가족의 장애인 살해 후 자살 예방과 대응 정책 수립	· 부모 등 가족의 장애인 살해 후 자살 예방과 대응 정책 및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22-a-3. 전체 국민 대비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자살률	·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자살 비율을 전체 국민의 자살 비율과 비교하여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자살률 ÷ 전체 국민의 자살률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22-a-4. 전체 국민 대비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실종 사건 발생 비율	·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실종 사건 비율을 전체 국민의 실종 사건 비율과 비교하여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실종 사건 비율 ÷ 전체 국민의 실종 사건 비율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24	24-a.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 국가 수준의 재난위험경감계획 내 장애인을 위한 지원 내용 반영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재난 위험 상황을 경감시키기 위한 계획에 장애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
26	26-b. 긴급상황에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 긴급상황에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26-d. 위기상황 및	· 위기상황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 관련 법령 또는 정	구조지표	C(질적/사	보건복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긴급사태 발생시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지원 체계 구축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형식의 정보를 적절한 기기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실기반)	부
28	28-a-1. 후견제 등 대체의사결정제도의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전환 체계 구축	· 장애 관련 정책(계획)과 민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견제 등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을 참고하여 의사결정지원제도에 관한 정책(계획)이 있는지, 민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주요 법령에 대체의사결정제도 내용을 삭제하거나 의사결정지원제도를 규정한 조항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 제시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법무부
	28-a-2. 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중 성년후견인이 차지하는 비율	· 장애인에 대한 특정후견, 한정후견 및 성년후견 중 성년후견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성년후견인의 수 ÷ 전체 장애인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법무부
30	30-a.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실행 계획 수립	·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법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 장애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에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검찰청)· 행정안전부(경찰청)· 법원행정처
	30-c-1.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 마련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	· 기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이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규칙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8항, 동법시행령 17조 1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규칙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 제시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검찰청)· 행정안전부(경찰청)· 법원행정처
	30-c-2. 모든 법정 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기초한 물리적 접근성 보장 계획 수립	· 모든 법정시설을 장애인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 접근성 관련 구체적인 이행계획(정책, 지침 등)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원행정처
	30-d-1. 법관 및 사법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 실시 근거 마련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법관과 사법 종사자(경찰, 검찰, 국선변호사(인), 교정직 공무원)에게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 실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30-d-2. 법관 및 사법 종사자의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 이수율	· 법관과 사법 종사자(경찰, 검찰, 국선변호사(인), 교정직 공무원) 중 장애인 사법접근권에 관한 교육을 실제 이수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1회 이상 장애인 사법접근권 교육을 받은 법관과 사법 종사자의 수 ÷ 법관과 사법 종사자의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
	30-e.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율	·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는 개별화된 지원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제도를 실행(관련 지침/규정 마련)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수 ÷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의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법무부
32	32-a-1. 장애인의 비자의적 자유를 박탈하는 관련 법률 조항 폐지	· 장애인 비자의적 자유 박탈을 가능하게 하는 민법의 성년후견 관련 조항 및 정신건강복지법 등 모든 관련 법률 조항 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폐지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32-a-2. 장애인 심문 및 구금 시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편의 제공 사항이 반영된 법률 마련	· 장애인 심문 및 구금 시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편의 제공 사항이 반영된 비차별적 법률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
	32-a-3. 장애인의 비자의 시설 입소 및 병원 입원 비율	· 비자의적으로 시설 또는 병원에 입소·입원한 장애인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비자의적으로 시설 또는 병원에 입소·입원한 장애인 수 ÷ 전체 시설 또는 병원 입소·입원 장애인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32-b-1. 심리사회적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이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심리사회적 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 등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
	32-b-2. 격리치료시설 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격리치료자 비율	· 격리치료시설 내 장애인의 수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격리치료시설 내 장애인 수 ÷ 격리치료시설 수용자 수) ÷ (격리치료시설 내 비장애인 수 ÷ 격리치료시설 수용자 수)}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법무부
34	34-b-1. 시설 내	· 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진	· 시설 인권침해 중	구조지표	C(질적/사	보건복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진정 절차 마련	정 절차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거주인 진정 비율 및 후속조치 이행 비율제시		실기반)	부
	34-b-2. 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현황	· 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가해자 조사 및 제재와 그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미처벌 사례) 확인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34-b-3. 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거주인이 진정한 사건의 비율	· 시설 내 장애인이 인권침해 사건을 직접 진정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거주인 진정 사건 수 ÷ 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36	36-a. 장애인 학대피해 생존자의 재활 및 배보상을 포함한 포괄적 학대 예방 전략 수립	· 장애인 학대 등에 대한 예방과 배보상 구제방안을 포괄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36-b-1. 시설 내외 장애아동 폭력 및 학대 근절 행동계획 수립	· 시설 내외 장애아동 폭력 및 학대 근절 계획을 채택하고 효과적인 시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36-b-2.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분리 통계 체계 마련	·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분리 통계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36-c-1. 젠더 기반 폭력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접근 가능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고려한 지원센터 및 쉼터를 포함하여 별도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여성가족부
	36-c-2.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지원 센터 수	·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고려한 지원센터 또는 쉼터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젠더기반 폭력 피해 생존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지원센터 수 합계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여성가족부
	36-d.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의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이수 비율	·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학대를 인식하고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이수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종사자 수 ÷ 전체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 수) × 100			
38	38.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 및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 근절 조치 및 보상 계획 수립	·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과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매커니즘과 보상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여성가족부
40	40. 장애이주민의 입국 및 장애 관련 서비스 접근을 막는 차별 법령 또는 정책 폐지	· 장애가 있는 이주민의 입국과 장애서비스 접근을 막는 차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 관련 법령 또는 정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 하고 있는 관련 법령 폐지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
42	42-a. 협약 제19조, 일반논평 제5호 및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정·보완	· 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협약, 일반논평 제5호 및 탈시설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정, 보완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 수정·보완 여부 및 수정·보완 내용의 협약, 일반논평제5호 및 탈시설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	구조지표	D(질적/주관적평가)	보건복지부
	42-b. 거주시설 예산 대비 아동 포함 탈시설 전략 이행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의 비율	·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탈시설 전략 이행 강화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가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어느 정도 증액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탈시설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아동 포함) 탈시설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 ÷ 거주시설 지원 예산}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44	44-a-1. 공중파 텔레비전 수어통역, 화면해설 의무 비율 증가율	· 공중파 텔레비전의 수어통역 및 화면해설 의무 비율 증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당해연도 고시 의무 비율 - 전년도 고시 의무 비율) ÷ 전년도 고시 의무 비율}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방송통신위원회
	44-a-2.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준수율	·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준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웹접근성 준수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수 ÷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
	44-a-3. 정부 및 공공기관 출판물(ISBN 부과 대상)의 접근가능한 형식(읽기쉬운 버전, 점자, 보이스오버) 제공	· 정부 및 공공기관 출판물 중 읽기쉬운자료, 점자, 보이스오버 등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출판물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작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출판물 수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비율		÷ 전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출판물 수) × 100			
	44-a-4.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인터넷 이용 장애인 수 ÷ 전체 장애인 수) ÷ (인터넷 이용 국민 수 ÷ 전체 국민 수)} × 100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4-a-5.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률	·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스마트폰 이용 장애인 수 ÷ 전체 장애인 수) ÷ (스마트폰 이용 국민 수 ÷ 전체 국민 수)} × 100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4-a-6.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비율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율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수 ÷ 전체 키오스크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4-b.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지침이 반영된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	· 장애인이 방송 콘텐츠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방송통신위원회
46	46-a. 실종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GPS 추적장치 설치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당사자 동의 절차 준수	· 실종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GPS 추적장치 설치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당사자 동의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48	48-a. 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리기, 출산(임신) 및 양육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	· 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리기, 출산(임신) 및 양육 등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802조, 제804조(약혼), 동법 제808조, 제804조(혼인), 동법 제873조, 제887조, 제894조, 제898조, 제902조, 제906조 (입양) 등의 법률 개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개정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
	48-b.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지원 정책 마련	·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지원 정책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48-o.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비율	·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장애인에 대한 돌봄 제공 시간과 외부 돌봄 지원 인력의 돌봄 제공 시간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장애인 돌봄	결과지표	B(양적/주관적평가)	보건복지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제공시간 ÷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장애인 돌봄 제공 시간 + 외부 인력을 통한 돌봄 제공 시간) × 100			
50	50-a-1.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교육 정책 내 통합교육 관련 사항 반영	·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교육 정책 내 통합교육 관련 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D(질적/주관적평가)	교육부
	50-a-2. 전일제 통합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비율	· 일반학교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일반학급 배치 장애학생 수 ÷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배치 장애학생 수) × 100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교육부
	50-a-3.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이수 비율	·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운영 역량 증진을 위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이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통합교육 연수 이수 일반교육교원 수 ÷ 전체 일반교육교원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교육부
	50-b.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에 적합한 읽기 쉬운 학습 자료,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에 적합한 읽기 쉬운 학습 자료,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여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교육부
	50-c. 어린이집 이용 장애영유아의 동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에게도 교육부 산하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지원을 보장하여 재원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담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교육부·보건복지부
	50-o.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지역사회로의 전환 비율	· 고교 졸업 장애학생 중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비율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취업 또는 진학 고교 졸업 장애학생 수 ÷ 전체 고교 졸업 장애학생 수) × 100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교육부
52	52-a-1. 상법 제372조 완전 폐지	· 상법 제732조 완전 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 폐지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
	52-a-2. 가임기 장애여성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 여성장애인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률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에 접근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여성장애인 건강보건의료사업 이용자 수 ÷ 가임기 장애여성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52-a-3.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 정신장애인이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용 정신장애인 수 ÷ 전체 정신장애인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52-b-1. 보건 관련 종사자 대상 장애인 권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건관련 종사자(의사, 간호사, 한의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병원종사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지 확인하는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52-b-2. 국민 대상 건강 정보 중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식(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쉬운 형식 등)으로 제공되는 건강 정보 비율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련 정보가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형식(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쉬운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건강 정보 수 ÷ 전체 건강 정보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54	54.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적과 체류 상태에 따른 제한 규정 폐지	· 장애인의 국적과 체류 상태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른 가활과 재활 접근 보장을 위해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56	56-a-1. 노동 관련 법령 내 장애를 이유로 한 제한 직종 수	· 직종 관련 법률 내에 장애유형을 이유로 직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 직업 관련 법령 중 장애유형을 근거로 한 제한 조항 반영 법령 수 측정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56-a-2. 국가 수준의 장애인 노동 관련 정책(계획) 내 채용 광고, 채용 절차, 합리적 편의 제공, 재훈련, 승진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내용 반영	· 현행 관련 국가 정책 내 고용, 취업, 승진, 재훈련에 장애포괄적(차별 제제) 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국가 수준의 장애인 노동 관련 정책 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고용, 취업, 승진, 재훈련 관련 차별 금지 및 장애포괄적 조치 포함 여부 확인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56-b-1. 전체 인구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대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비율	· 장애인에 대한 동일 가치 동일 보수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의 임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전체 임금근로자의 3개월 평균 임금 ÷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 3개월 평균 임금) × 100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56-b-2. 최저임금 배제 장애인에 대한 보상 체계 도입	·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56-c-1. 탈시설 장애인 일반노동시장 참여 비율	· 탈시설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최근 5년 간 탈시설한 장애인 중 일반 노동시장 피고용인 수 ÷ 최근 5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년간 탈시설한 장애인 중 피고용인 수) × 100			
	56-c-2.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56-c-3.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지적, 청각, 정신장애)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 지적, 청각, 정신장애 등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지적, 청각, 정신장애인 중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 전체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 100 *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한 피고용인 수 ÷ 전체 피고용인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56-c-4. 일반노동시장 내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지적, 청각, 정신장애) 지원체계 구축	· 일반노동시장 내 지적, 청각, 정신장애 등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의 지원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56-d-1.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 비율	·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보호작업장 내 근로 장애인 수(근로자+훈련생) ÷ 전체 장애 노동자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56-d-2.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중 일반 일자리로 전환한 장애인의 비율	· 보호작업장으로부터 개방되고 통합적이며 접근가능한 일반 일자리로 전환한 장애인의 비율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보호작업장 근무 중 일반 일자리로 전환한 장애인 수 ÷ 보호작업장 근무 장애인 수) × 100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56-d-3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에 장애여성 의무고용 할당 비율 도입	·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의 개방노동시장 내 참여 증대를 위한 특별 보호 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58	58-a-1. 국가 수준의 장애 정책 내 장애인의 빈곤경감계획 강화 조치 마련	·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 및 빈곤경감계획을 강화했는지 확인하는 지표	· 국가 장애인종합계획상 장애인빈곤경감계획 비교, 장애인 빈곤을 통계 확인하여 제시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58-a-2. 전체 국민 대비	· 장애인의 빈곤 수준을 일반 국민	※ 다음 측정산식 활용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장애인의 빈곤율	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용 · 장애인의 빈곤율 ÷ 전체 국민의 빈곤율		실기반)	부
	58-a-3.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금액에 대한 정부와 장애인단체 간 협의체계 구축	· 장애인단체들과 장애인의 소득 보장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장애수당 등 관련 민관 협의체(장애인단체 포함) 확인하여 제시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58-b-1.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 폐지	·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특히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폐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시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58-b-2. 장애인연금 수급 비율	·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 대비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연금수급비율: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 등록 장애인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58-b-3. 관계법령 및 정책 상 기초생활수급, 장애수당 등 수급 대상에 장애인, 장애인 포함	· 장애인, 장애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등과 같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는 즉각적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60	60-a. 선거과정과 정치적, 공적 생활에서 장애인의 완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	· 선거과정과 정치적, 공적 생활에서 장애인의 완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0-c. 선거자료 및 투표시설에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강화 조치 마련	· 선거자료 및 투표시설에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강화 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0-d. 전체 국민 투표율 대비 장애인의 투표율	· 전체 국민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대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모니터링 직전에 실시된 전국 규모의 동시 선거 결과 중)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 ÷ 전체 국민의 투표 참여율) × 100	결과지표	B(양적/주관적평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2	62-1. 어문출판물 발행 대비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데이지도서 제작 비율	· 어문출판물 중 점자, 녹음, 데이지도서로 제작되는 출판물의 비율을 통해 마라케시조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텍스트데이타자료, 전자점자도서, 전자책 제작 수 ÷ 어문출판물 발행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문화체육관광부
	62-2. 장애인의 문화생활 프로그램 이용률	· 장애인의 문화생활 향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실제 이용률을 통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문화생활 참여 장애인 수 ÷ 전체 등록장애인 수) × 100	결과지표	B(양적/주관적평가)	문화체육관광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 문화생활 범주 개발 필요			
64	64-a. 기존 장애 관련 통계 내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이주 지위, 교육 수준, 고용 상황 및 거주지 분리 통계 수집	· 장애 관련 통계 내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이주 지위, 교육 수준, 고용 상황 및 거주지 분리 등 분리 통계 수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통계청
	64-b.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연구 예산 비율	·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연구 예산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중앙정부 각 부처의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예산 합계 ÷ 중앙정부 각 부처의 연구 개발 예산 합계) × 100 * 연구 개발 예산 범주 개발 필요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66	66-1. ODA 총 예산 중 장애 관련 분야 예산 비율	· KOICA에서 집행하는 ODA 총 예산 중 장애특정, 포괄 프로그램 예산 비율 확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전년도 · (장애 관련 분야 예산 합계 ÷ ODA 총 예산)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외교부
	66-2. KOICA와 장애인단체 간 협력 프로그램 수	· KOICA의 지원 프로그램 중 장애인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의 개수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지원 프로그램 중 장애인단체와의 협력하는 프로그램 수의 합계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외교부
	66-3.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운영 횟수	· KOICA에서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운영하는 민관협의체의 회의 개최 횟수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민관협의체의 회의 개최 횟수 합계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외교부
68	68.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연도별 개최 횟수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연도별 개최 횟수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	· 연도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집계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69	69. 장애여성 및 탈시설 관련 최종견해에 따른 1년 이내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 장애여성 및 탈시설 관련 최종견해에 따른 1년 이내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70	70. 장애 관련 분야 공직자 등의 CRPD 최종견해 인지를 위한 노력	· 정부, 국회 구성원, 관련 부처 공무원,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자, 의료 종사자, 법조인, 언론인 등에게 관련 직군 각 구성원에게 정부의 최종견해 전달 및 이에 대한 조치 마련 요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결과지표	B(양적/주관적평가)	보건복지부
71	71. 정부 보고서 작성 시 장애인단체를 포함하여 협의하는 체계 구축	· 정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장애인단체 포함 협의체 운영에 관한 법령 등 규정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72	72. 중앙정부 차원의	· 최종견해를 다양하고 접근가능	·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정지표	A(양적/사	보건복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처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된 최종견해 관련 콘텐츠 발행 종수	한 형식으로 제작 및 배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발행한 최종견해 관련 콘텐츠 수 합계		실기반)	부

4.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1차년도 기초선 조사 결과

1) 조사 절차

- 다음과 같은 지표별 모니터링 조사 양식을 사용하여 조사 진행

항목		내용			
지표명		6-a-1. 장애 범주 확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지표 특성	지표 유형	구조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	
	측정 방식	양적		질적	
		사실 기반		주관적 평가	
지표 소개	지표 산출방법	<i>(지표를 측정하는 방법, 지표의 값내용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절차 제시)</i> ○ 사회적 장애 개념을 고려하여 장애 범주 확대를 위한 장애인 복지법 개정 여부			
	활용 자료	<i>(지표 측정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i>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탑재된 최신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관련 내용			
모니터링 결과	지표 이행 여부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기타 _____
	측정 결과 및 판단 근거	<i>(지표 측정 결과 기술 또는 지표 이행 여부 판단 근거 기술)</i> ○ 최근 1년간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에 장애 범주 확장 관련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향후 과제 (개선 사항)	<i>(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시)</i> ○ 시청각장애인, HIV/AIDS 감염장애인 등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범주로 정의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개정 추진 필요			
	비고	<i>(아래와 같은 사항 제시 가능)</i> ○ 모니터링 과정에서 검토/고민되었던 내용이 있으면 추가 제시 ○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관련 통계 자료 개발 방안 마련 등 개선 과제 등 제언			

- 조사 진행 후 전체 검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모니터링 결과 수정 및 보완

2) 주요 조사 결과

- 모니터링 실시 결과, 111개 모니터링 지표 중 이행된 지표 2개, 부분 이행된 지표 13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지표는 47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로 분류된 지표는 49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기타로 분류된 지표 중 기초선 조사 결과만 제시한 경우는 26개 지표이고, 측정이 어려워서 그 결과값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표는 23개로 나타났음.
- 모니터링 실시 결과 이행률은 1.8%(부분 이행까지 포함할 경우 13.5%)였으며, 기타 지표를 제외하여도 이행률은 3.2%(부분 이행까지 포함할 경우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행된 지표는 다음과 같음

번호	지표	지표 정의	산출 방법	모니터링 결과
8	8-1. 선택의정서 비준	·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선택의정서 비준 여부로 확인	→ 선택의정서 비준 완료(2022년 12월)
52	52-b-1. 보건 관련 종사자 대상 장애인 권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건관련 종사자(의사, 간호사, 한의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병원종사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지 확인하는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운영 중에 있음 - 사업내용: 보건의료종사자 등 관련기관 종사자에게 장애인건강권에 대한 교육 운영 - 사업대상: 의료인, 장애인관련 시설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예비의료인 등 - 세부사업: 장애인 건강권관련 교육운영 · 교육시간: 1~2시간 · 교육운영: 연 4회 이상 · 교육내용: 장애인건강권 관련 법, 정책, 장애인과 의사소통

- 부분 이행된 지표 및 이행되지 않고 있는 지표의 모니터링 결과 등 구체적인 모니터링 결과는 붙임 자료 참고

[붙임]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전문 내용에 따른 개발 지표 현황 및 모니터링 실시 결과 요약표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6	6-a. 장애 범주 확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 기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미등록 장애인(시청각 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HIV 감염 등)을 인정하고, 개별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사회적 장애 개념을 고려하여 장애 범주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여부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관련 내용			√		→ 최근 1년 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내 장애 범주 확대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최근 1년간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장애 범주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및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주요과제 내용으로 '장애 인정이 어려운 희귀·난치질환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유형 인정기준 개선연구('23~'24)를 거쳐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25~)'라고 발표하였으나 희귀·난치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개선범위와 현시점 기준 연구 진행 단계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여부에 대한 이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	○ 시청각장애인, HIV/AIDS 감염장애인 등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범주로 정의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개정 추진 필요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 따라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이 반영된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필요
	6-b. 장애정도판정 기준문항 중 ICF에 근거한 환경요인 등을 반영한 문항의 비율	· 장애 판정 제도가 ICF에 근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법적 환경적 장벽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장애정도판정 질문 항목 중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질문 항목 수 ÷ 장애정도판정 전체 항목(기준)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42호 장애정도판정기준			√	→ 장애정도판정기준상의 기준 중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질문(기준) 항목 없음 → 기초선 조사 결과, 장애정도판정기준문항 중 ICF에 근거한 환경요인 등을 반영한 문항 비율은 0%임 ※ 정량지표 중 과정지표는 향후 평가 준거 마련 후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당해연도 모니터링에서는 기초선 조사 결과만 제시. 이하 정량지표는 모두 동일하게 이행여부 평가 실시)	○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ICF에 근거한 사회 환경적 장벽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8	8-1. 선택의정서 비준	·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선택의정서 비준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외교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 선택의정서 비준 완료(2022년 12월)		
10	10-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중 장애아동, 지적장애아동, 장애인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 구성 시 장애아동·지적장애아동·정신장애아동·장애인	※ 다음 측정산식 활용 (장애아동, 지적장애아동, 정신장애아동, 장애인)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탑재된 최신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관			√	○ 2023년 9월 현재, 정부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중 장애여성 1명, 지적발달장애아동 부모 1명 등 당사자성을 고려한 장애아동, 지적장애아동, 정신장애아동, 장애여성, 이주장애아동 등을 대표하는 위원은 2명으로 보이고, 전체 위원 수	○ 장애아동, 지적장애아동, 정신장애아동,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아동을 대표하는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을 대표하는 위원의 비율	애여성·난민과 이주장애인 등 장애 유형·정체성·단체 유형 등을 고려한 모든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성, 난민과 이주장애인을 대표하는 위원 수 ÷ 전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 수) × 100				련 내용					<p>는 총 29명임 → 기초선 조사 결과, 2023년 현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중 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을 대표하는 위원의 비율은 6.9%((2/29)*100)임</p>	<p>개정 필요 ○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대통령 산하의 상설기구로써 설치·운영 필요</p>
12	12-a. 장애인의 다중적·교차적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	·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장애 차별 종식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전략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또는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다중적·교차적 차별 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현황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p>○ 다중적·교차적 차별 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발의안의 경우 17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위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상 장애인의 다중적·교차적 차별 해소를 위한(기존의 장애여성, 장애아동 외 장애인 이주민, 장애인 LGBT 등) 국가 전략 계획은 전무함</p>	<p>○ 장애인의 다중적·교차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법령(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장애인 관련 법령의 개정(다중적·교차적 차별 해소를 위한 내용 포함) 및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반영 필요</p>
	12-c. 장애인 권리 관련 소송 패소 장애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및 변제 시스템 마련 등 공정한 보상 제도 실시	· 국내 소송비용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에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이 상대방 변호사 보수 부담에서 면제될 수 있는 소송비용 또는 변제 지원 관련 방안, 원칙 또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또는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최신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하위법령 등 관련 내용(소송 패소 장애인의 소송비용 중심으로)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p>→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소송 패소 장애인의 소송비용에 관련한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 이행전략 마련(2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최종견해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전략 마련 계획일 뿐 소송 패소 장애인의 소송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내용 등은 전혀 없음</p>	<p>○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소송 패소 장애인의 소송비용지원에 관한 내용 반영 필요</p>
	12-d. 정당한	· 국가인권위원회 등	· 해당 사항을 반영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국가인권	· 해당 사항 관			√		<p>→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법령</p>	<p>○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p>

■ UNCRPD 최종건해 이행지표개발 발표회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주 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편의제공 거부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절차(지침) 마련	장애 차별 시정 기구의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 사건 발생시 적용되고 있는 조사 및 관리 구제 지원 절차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별도의 효과적 조사 준거 마련 필요	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또는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사실기반)	위원회	련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및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차별 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었음	한 편의제공 거부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침 등 마련 필요
14	14-b. 국가 수준 장애 정책 내 성인지 계획 및 예산 반영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등 국가 수준 장애인 정책 내 성평등 관점에 입각한 정책 과제 수립 및 예산 반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 등록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정부 제출 2024 예산안 (의안정보시스템) 중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및 '성인지 예산서' 중 보건복지부 예산안		√			○ 9대 정책분야 30대 중점 과제 74개 중 장애여성 관련 정책 목표는 각각 0개/1개(8-3)/4개(2-2-2, 8-3-1.2.3) ○ 2024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예산 4조 9,892억 1천만 원 중 성인지 예산은 2조 7,269억 9,200만원으로 54.65% 수준 → 국가 수준 장애 정책 내 성인지 계획이 74개 하위 과제 중 4개에 불과	○ 성인지 관점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여 모든 장애 관련 정책에 장애여성 주류화 필요 ○ 필요시 성별 격차 큰 고용, 고등/평생교육, 사회참여 등 장애인실태조사 근거하여 성인지 도입 정책 우선순위 마련
	14-c-1.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 관련 법령 내 장애여성·소녀 차별 금지 조항 반영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 장애 관련 법령에서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다중 및 교차 형태의 차별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 웹사이트에 등록된 장애인차별금지법		√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관련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으나, 장애소녀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이 포함된 조항은 부재하다는 사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에 대한 다중 또는 교차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법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특정 유형의 차별만을 목록형으로 열거하는 차별금지법이 아닌, 성별, 연령, 장애유형 등 교차적 차별을 다룰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16	14-c-2.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다중적·교차적 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다중적·교차적 차별 시정을 위하여 국가 수준의 정책 방향 수립, 관련 정책 내 반영 여부, 별도의 국가 전략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정책 수립·시행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정책 계획에 모두 장애여성에 관한 내용만 담겨있고, 장애소녀에 대한 내용 없음. ○ 그마저도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는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과제 하나만 담겨있고 이마저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과 동일함(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확대, 의료기관 종사자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장애여성과 소녀에 대한 다중적/교차적 차별 시정 관련 내용 부재	○ 장애여성과 소녀가 마주하는 다중적/교차적 차별에 대한 연구 및 데이터를 통해 법률 및 정책 마련 필요
	14-d. 주요 선출직 공무원 및 각 정당의 해당 후보자 선출시 장애여성 할당제 도입	·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 및 각 정당의 해당 후보자 선출시 장애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관련 정책 수립·시행 또는 정당별 당헌·당규 개정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직선거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라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장애여성 할당은 물론 장애인 할당제조차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또한, 교육감 등 기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할당제는 별도 규정 없음 → 공직선거법에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선출시 장애여성 할당 제도 도입 관련 규정 부재	○ 장애여성의 정치 영역 의사결정 대표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
16	16-a-1. 관련 법령 내 장애아동 참여권 관련 사항 규정	· 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장애아동 관련 법령 내 장애아동의 참여권(자신의 의사를 존중받고,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자료(추가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에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제4조제5항에 “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에 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등 장애아동 참여 관련 법적 근거가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 → 장애 관련 법령에 장애아동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가 제시되어 있지 못하고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주류 법령 내에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장애아동 참여 관련 다양한 권리가 관련 법령 내 반영 필요
	16-b-1. 국가 수준의 아동	· 아동복지정책, 청소년복지정책 등 국가	※ 다음 측정산식 활용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제7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내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관련 내용 미반영 	○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내 장애아동 및 장애

■ UNCRPD 최종건해 이행지표개발 발표회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18	· 청소년 복지 정책 내 장애아동 지원 사항 반영 비율	수준의 지역사회 복지 정책 내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장애아동 · 청소년 지원 정책 과제 수 ÷ 국가 수준의 아동 · 청소년 복지 정책 과제 수) × 100 * 국가 수준의 아동 · 청소년 복지 정책 과제 목록 정리 필요			여성가족부	(2023~2027) 및 제2차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 제7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108개 세과제 중 1개 과제(장애청소년 부모 지원 및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만이 장애청소년 관련 정책임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의 72개 세과제 중 2개 과제만 장애아동 관련 과제임 (장애아 가족양육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확대 추진, 건강 취약아동 치료·관리 및 부모 돌봄 지원 강화) → 국가 수준의 아동 및 청소년 정책 180개 과제 중 3개 과제만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과 직접 관련된 정책임 → 기초선 조사 결과, 국가 수준의 아동 · 청소년 복지 정책 내 장애아동 지원 사항 반영 비율은 1.7%임. (3/180)*100=1.7%	청소년 권리 보장 관련 내용 포함 필요
	17-c. 통합놀이터 설치 등 장애아동의 놀이터 접근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기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법령에서의 장애아동의 접근권 및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 · 개정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		○ 기구이용형 그네의 어린이 놀이터 설치 근거로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나, → 놀이시설 관련 법령 등에 장애아동의 놀이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 장애아동이 통합된 놀이환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 및 관련 정책 시행 필요
	18-a-1. 장애인 인식 제고 및 편견 대항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 장애인 단체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장애인의 인식 제고와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 장애인의 인식 제고 및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시행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부재	○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의 인식 제고와 편견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 필요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20	18-a-2.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 등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 비율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교사,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자 수 ÷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공무원, 교사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참여 대상자 수) × 100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참여 대상자 수 확인 필요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실시 현황 자료(기존 자료)				√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대상인 공무원과 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참여 대상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교육 참여자 유형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장애인식개선 교육 참여자에 대한 통계 자료 구축 방안 마련 필요
	20-a.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못하는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 관련 법령에 건축물 규모, 수용 가능 범위,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장애인의 완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건축물 규모, 수용가능 범위,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접근성 보장 관련 사항 미반영	○ 건축물 규모, 수용가능 범위,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접근성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개정 추진 필요
	20-b. 국가 접근성(기준)의 구축 및 법적 강제	· 접근성 관련 협약의 각 조항(제5조 ~ 30조) 내용을 포함한 국가접근성 계획 수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 최근 발표된 제4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내에는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고 모니터링 관련 내용은 부재	○ 제9조 접근성 조항에 명시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접근성 전략을 채택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

■ UNCRPD 최종건해 이행지표개발 발표회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수단 마련 등) 전략 수립	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역시 관광에 국한되어 추상적인 접근성 목표만 제시(무장애관광 도시 설치) → 제4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제6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국가 접근성 전략 관련 내용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을 확립을 포함한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접근성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관련 계획에 반영 또는 별도 계획 수립 필요
	20-c-1.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의 저상버스 확보 비율	·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의 휠체어 이용 가능 저상버스 도입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중 저상버스 수 ÷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중 휠체어 접근 가능한 버스 전무한 상황. 광역버스 역시 2층형 좌석버스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나 283개 광역 노선 중 10%에 불과한 22개 노선에서만 2층형 저상버스 운행 중임을 확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노선버스 수는 34,860대이며 이중 저상버스는 11,838대로 저상버스 도입률은 34%임. 그러나 고속, 시외, 광역버스로 구분된 통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기초선 조사 결과,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의 저상버스 확보 비율은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내 버스 유형별 저상버스 확보 비율 통계 추가 필요 	
	20-c-2. 음성 및 읽기 쉬운 교통 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 수준의 계획 수립	· 음성, 수화 및 읽기 쉬운 표시 등 장애인의 교통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 수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국가 수준의 교통 정보 접근성 지원 계획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 수화 및 읽기 쉬운 표시 등 장애인의 교통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 수준의 계획 수립 필요 	
	20-c-3. 휠체어 이용 등 모든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정류장 또는 버스터미널	·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등의 버스 정류장 및 터미널이 휠체어로 탑승이 가능한 환경(이동편의시설 등 확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정류장 및 터미널 수 ÷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321개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 중 휠체어 탑승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터미널은 5개 터미널(서울, 강릉, 부산, 당진, 전주)에 불과 → 기초선 조사 결과, 휠체어 이용 등 모든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정류장 또는 버스터미널 비율은 (5/321)*100 =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내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의 휠체어 접근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비율	지표	정류장 및 터미널 수) × 100											
	20-d-1. 교육시설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점자 디지털 기기 보급 비율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및 고등교육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율 (장애인이 원하는 형태의 디지털기기 지원 비율 포함)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교육시설 이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수 ÷ 교육시설 내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상 시각장애인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교육부	· 교육부(추가 조사)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교육시설 이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수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관련 통계 자료 구축 방안 마련 필요	
	20-d-2. 가정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점자 디지털 기기(프로그램 포함) 보급 비율	· 가정 내 생활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율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수 ÷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상 재가 시각장애인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자료 (추가 조사)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관련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관련 통계 자료 구축 방안 마련 필요	
22	22-a-1.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자살과 실종 예방에 대한 정책 수립	· 자폐성장아인, 심리사회장애아인 등에 대한 자살/실종 예방과 대응 정책 및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위한 법률」 ○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3~’27) ○ 2023년 자살예방 사업안내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위한 법률」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23년 자살예방 사업안내 등에 관련 내용 일부 반영되어 있고, 지자체 차원의 실종예방 조례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 관련 정책이 제안되어 있으나, → 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등의 자살과 실종 예방 관련 정책 미비	○ 발달장애아인에 대한 직접 자살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종사자 중심 교육 구성 개선 필요	

■ UNCRPD 최종건해 이행지표개발 발표회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22-a-2. 부모 등 가족의 장애인 살해 후 자살 예방과 대응 정책 수립	· 부모 등 가족의 장애인 살해 후 자살 예방과 대응 정책 및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 ('23~'27) 2023년 자살 예방 사업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자살 예방 기본 계획의 수립),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 2023년 자살 예방 사업안내 등 →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에 자살 예방과 대응 관련 정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부모 등 가족의 장애인 살해 후 자살 예방과 대응과 관련된 정책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안정적인 계획 실천 필요
	22-a-3. 전체 국민 대비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자살률	·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자살 비율을 전체 국민의 자살 비율과 비교하여 확인하기 위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자살률 ÷ 전체 국민의 자살률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 장애인 장애유형별 사망원인별 조사망률(2021) 통계청 장애인 등록현황(2021) 통계청 2022년 사망원인 통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국민 자살률(2021) : 자살률 26.0명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13,352명)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자살률 : 42.0명 (2021년, 10만명 당,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인 자살률 9.6명 × 221,557명 ÷ 100,000 - 자폐성장애인 자살률 6.2명 × 33,650명 ÷ 100,000 - 정신장애인 122.4명 × 104,214명 ÷ 100,000 2020년에 비해 자살률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국민 자살률과는 큰 차이를 보임 → 기초조사 결과 전체 국민 대비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자살률은 1.62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필요 특히 정신장애인 부분의 자살 예방 대책 필요 	
	22-a-4. 전체 국민 대비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실종 사건 발생 비율	·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실종 사건 비율을 전체 국민의 실종 사건 비율과 비교하여 확인하기 위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실종 사건 비율 ÷ 전체 국민의 실종 사건 비율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 실종 아동등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20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처리현황 49,287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인 신고접수 처리현황 8,344건 → 기초조사 결과 전체 국민 대비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실종 사건 발생 비율은 16.9%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종통계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연령불분), 치매환자(연령 불분)를 구분하고 있으나, 뇌병변장애인 등 추가적인 대상확대 필요 국제적인 발달장애인의 범주가 달라 비교지표의 개선 필요 	
24	24-a. 국가안전관리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재난 위험 상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장애인 포함)에 대한 법률 및 교육 등 정비 및	· 기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또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주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기본계획 등 국가 수준의 재난위험감각 계획 내 장애인을 위한 지원 내용 반영	황을 경감시키기 위한 계획에 장애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사항 반영 여부 확인				획 ·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확대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위험감각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에 장애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재난위험감각계획 포함, 반영 필요
26	26-b. 긴급상황에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 긴급상황에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지침			√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기본적인 지역사회 탈시설 지원 제도는 있으나 긴급상황에서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내용은 미비함	○ 긴급 및 위기 상황에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 및 방안 마련 필요
	26-d. 위기상황 및 긴급사태 발생시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지원 체계 구축	· 위기상황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형식의 정보를 적절한 기기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보건복지부 자료 등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혹은 음성 안내 기기 도입 내용은 있으나 그 외 장애인 접근 가능 정보 지원 체계 마련되지 않음	○ 위기상황 또는 긴급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정보 습득에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기기 개발 및 보급 필요
28	28-a-1. 후견제 등 대체의사결정 제도의 의사결정지원 제도로의 전환 체계 구축	· 장애 관련 정책(계획)과 민법, 장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후견제 등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등을 참고하여 의사결정지원 제도에 관한 정책(계획)이 있는지, 민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법무부	·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 민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 장애 관련 정책 및 관련 법령 등에 의사결정지원제도에 관한 근거가 미비하고, 이를 대신하여 대체의사결정제도가 주요한 의사결정 지원 제도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음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하며 향후 절차보조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절차보조사업 등에 관한 제도를 공고히 하여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 추진 필요

■ UN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개발 발표회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30	28-a-2. 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중 성년후견인이 차지하는 비율	· 장애인에 대한 특정 후견, 한정후견 및 성년후견 중 성년후견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성년후견인의 수 ÷ 전체 장애인 후견인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법무부	· 연도별 성년 후견(감독)사건 접수 건수 추이 자료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후견인 자료만으로 조사 진행 ○ 2022년 전체 후견 사건 14,691건 중 성년후견 11,841명, 한정후견 1,231명, 특정후견 1,584명, 임의후견 35명으로 성년후견 비율이 80.6%임 → 기초선 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중 성년후견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80.6%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 대한 후견 사건별 후견인 배치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 구축 방안 마련 필요
	30-a.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실행 계획 수립	·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법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 장애 관련 법령 및 정책에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검찰청) · 행정안전부(경찰청) · 법원행정처	· 최신 장애인 복지법 및 하위법령 관련 내용(장애인 차별금지법령을 중심으로)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관련 법령에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법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당 법령 개정 추진 필요
	30-c-1.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 기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이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	·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8항, 동법시행령 17조 1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규칙 또는 지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검찰청) · 행정안전부(경찰청) · 법원행정처	·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8항, 동법시행령 17조 1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관련 법령, 행정규칙에 장애인이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규칙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8항, 동법시행령 17조 1항의 내용 등 관련 근거에 사법적 절차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규칙 또는 지침 마련 필요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의사소통 수단 마련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	처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규칙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 제시			처						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관련 지침 수립 및 이행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8항, 동법시행령 17조 1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규칙 또는 지침 마련 필요
	30-c-2. 모든 법정 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기초한 물리적 접근성 보장 계획 수립	· 모든 법정시설을 장애인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 접근성 관련 구체적인 이행계획(정책, 지침 등)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원행정처	· 최신 장애인 복지법 및 하위법령 관련 내용(장애인 차별금지법령을 중심으로) ·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	→ 장애인 관련 법령 및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법정 시설 물리적 접근성 관련 시행 계획 수립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기초한 모든 법정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보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당 법령 개정 추진 필요
	30-d-1. 법관 및 사법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 실시 근거 마련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법관과 사법 종사자(경찰, 검찰, 국선변호사(인), 교정직 공무원)에게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 실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	·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관련 내용 ·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	→ 장애인 관련 법령 및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법관 및 사법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법관 및 사법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 추진 필요
	30-d-2. 법관 및 사법 종사자의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 법관과 사법 종사자(경찰, 검찰, 국선변호사(인), 교정직 공무원) 중 장애인 사법접근권에 관한 교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1회 이상 장애인 사법접근권 교육을 받은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	·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 관련 자료(추가 조사)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법관 및 사법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교육 관련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장애인 관련 법령에 법관 및 사법 종사자에 대	○ 법관 및 사법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 추진 및 교육 실시 필요

■ UN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개발 발표회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관련 교육 이수율	육을 실제 이수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법관과 사법 종사자의 수 ÷ 법관과 사법 종사자의 수) × 100									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교육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법관과 사법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 교육 통계 필요
	30-e.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율	·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는 개별화된 지원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제도를 실행(관련 지침/규정 마련)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수 ÷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의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법무부	· 각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제도 관련 조사 또는 통계 자료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 제도 실행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개별화된 지원제도 실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준 마련 필요 ○ 법학전문대학원이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개별화된 지원제도 실행)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선 필요 ○ 관련 통계 자료 구축 방안 마련 필요
32	32-a-1. 장애인의 비자의적 자유를 박탈하는 관련 법률 조항 폐지	· 장애인 비자의적 자유 박탈을 가능하게 하는 민법의 성년후견 관련 조항 및 정신건강복지법 등 모든 관련 법률 조항 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폐지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거주시설 관련 사업지침 등				∨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중 장애인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시설이용을 신청하면 시설이용적격심사 후 이용할 수 있고, 이용계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등 시설 입소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항 존재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본인의 선택에 따른 '자의입원' 이외에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지는 '동의입원', '보호자에 의한 입원', '행정기관의 장에 의한 입원'이 시행 중. 특히, 보호의무자 2명 이상 또는 경찰관이 입원을 신청할 경우, 서로 다른 병원의 의사 2명 이상의 동기가 있다면 정신장애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강제 입원과 입원 기간 연장 가능	○ 하위 법령을 포함한 법률 내 비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조항 삭제 필요 ○ 신청주의에 기반한 당사자의 자의적 탈시설 의사표현, 전문가 심사위원회 등을 형식적 입·퇴소절차 이외에 실질적 의사결정지원 근거법령 마련 필요 ○ 장애인, 아동, 노인, 노숙인 등 대상자별 법률 외에 상위 법률(사회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탈시설권리 및 비자의적 자유를 박탈 금지 조항 명시. 동시에 대상자별 법률 조항에 시설을 복지시설 유형으로 기술한 조항 개정 필요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32-a-2. 장애인 심문 및 구금 시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편의 제공 사항이 반영된 법률 마련	· 장애인 심문 및 구금 시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편의 제공 사항이 반영된 법률 마련 · 해당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 마련 여부 확인	· 해당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	· 형집행법, 인권침해사건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집행법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제57조(처우)에 장애의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배려 또는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편의 시설은 최소한의 의무사항 외에는 권고사항이며, '전담교정시설'도 운영하나 예외가능 조항 임 ·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여성,외국인,청소년외에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규칙 없음 · 형사소송법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은 모두 임의조항임 → 형집행법, 형사소송법, 인권침해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등에 장애인 심문 및 구금 시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편의제공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장애관련 전문가 연계 및 실질적 지원 규칙 마련 필요 · 해당 사항은 조사·검증 또는 심문 전에 당사자에게 고지할 뿐, 체포 과정에서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된 상황까지 절차적 편의제공 사항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형사소송법 등 관련 조항이 임의조항이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고 있어 예외조항 삭제 및 의무조항으로 개정 필요
	32-a-3. 장애인의 비자의 시설 입소 및 병원 입원 비율	· 비자의적으로 시설 또는 병원에 입소·입원한 장애인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비자의적으로 시설 또는 병원에 입소·입원한 장애인 수 ÷ 전체 시설 또는 병원 입소·입원 장애인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감호소 피치료수감자 중 조현병이 575명(56.6%), 정신지체 84명(8.3%) 순임 · 비자의적 입원인 중 정신지체, 정신발달장애가 1,056건으로 전체 비자의입원의 3.5%를 차지함. 정신지체인의 경우 입원기간 중앙값이 입원기간이 가장 긴 82일임(전체 중앙값 56일) → 기초선 조사 결과(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활용),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중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비율이 67.9%,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중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비율은 62.2%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량과 별개의 추가 구금상대(심신장애인의 경우, 최장 15년)에 대한 중단 조치 및 통원치료 및 지원체계 연계 시스템 필요 · 대형 치료감호소 축소 및 보호감호환경 개선 정책 마련 필요 · 법원 판결시 치료감호 기간에 대한 명시 및 경미한 범죄나 사회적 지원체계 부재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사회 내 적절한 지원을 연계하고 관리하는 체계 도입(미국_정신건강법정, 영

■ UN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개발 발표회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국 지역사회 명령 등 참조 필요
	32-b-1. 심리사회적 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이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심리사회적 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 등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	· 법무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 심리사회적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이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 관련 체계 부재	○ 관련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32-b-2. 격리치료시설 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격리치료자 비율	· 격리치료시설 내 장애인의 수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격리치료시설 내 장애인 수 ÷ 격리치료시설 수용자 수) ÷ (격리치료시설 내 비장애인 수 ÷ 격리치료시설 수용자 수)}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법무부	· 법무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격리치료시설 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격리치료자 비율 관련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2023년 3/4분기 기준 격리병실 2,829실, 병상수 6,099개로 전체 병실 196,982실 중 1.4%, 전체 병상 712,713개 중 0.8% 차지	○ 격리치료시설 내 장애인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자료 구축 방안 마련 필요
34	34-b-1. 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진정 절차 마련	· 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진정 절차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시설 인권침해 중 거주인 진정 비율 및 후속조치 이행 비율제시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 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진정 절차가 관련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피치료감호자 처우관리준칙 내 제13조(전문가의 감정등), 제26조(면회 등) 외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 및 장애를 고려한 프로그램 및 메뉴얼이 부재하며 제25조의3(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서도 신체를 묶는 등 직접적인 제한을 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정함 ○ 치료감호소 의사 충원율은 57.5%로 전문의 인당 환자 87명(전공의 포함)을 담당함 ¹⁾	○ 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진정 절차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인권침해 신고 및 대응 체계 구축 필요
	34-b-2. 시설 내 인권침해	· 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	· 가해자 조사 및 제재와 그 행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추			√		→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장애인학대 사건에 해당되며, 학대 유형에 따른 가해자 처벌	○ 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에 관한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현황	및 처벌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위에 대한 처벌 사례(미처벌 사례) 확인				가 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가해자를 강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구체적인 정책 및 법령 마련 필요
	34-b-3. 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거주인이 진정한 사건의 비율	· 시설 내 장애인이 인권침해 사건을 직접 진정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거주인 진정 사건 수 ÷ 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거주인이 진정한 사건 관련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거주인이 진정한 사건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자료 구축 방안 마련 필요
36	36-a. 장애인 학대피해 생존자의 재활 및 배보상을 포함한 포괄적 학대 예방 전략 수립	· 장애인 학대 등에 대한 예방과 배보상 구제방안을 포괄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021) ·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2023) · 장애인 복지 시설 사업안내(2023) ·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2022)				√	→ 보건복지부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021)의 학대예방 전략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발생 시설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one strike-out'제도 도입, 즉각적 개입을 위한 '시정명령 실시',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 '매년 인권실태 조사'를 제시하고 있으나, 학대 피해생존자의 재활 및 배보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정부의 장애인학대피해생존자에 대한 구제조치 시, 시설 입소·전원조치 삭제 및 즉각적 개입 조치 마련 필요 ○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에 대한 정기적 인권실태 조사 및 학대 발생 시, one strike-out 제도 도입 (미신고 시설 법정시설 전환 조치 및 거주인 전원조치 삭제, 사안의 정도에 따른 조치 삭제) ○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시, 시설관련 단체 등의 개입 방지 및 시설수용피해생존자의 참여 강화 ○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범죄피해 등 포괄적 인권침해 예방 정책 마련 ○ 정부의 학대피해생존자에 대한 배·보상 계획 및 관

■ UN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개발 발표회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주 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36-b-1. 시설 내외 장애아동 폭력 및 학대 근절 행동계획 수립	· 시설 내외 장애아동 폭력 및 학대근절 계획을 채택하고 효과적인 시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 시설 내외 장애아동 폭력 및 학대 근절 행동계획 수립 관련 계획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 기구 설치 ○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간 정보연계 및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지적·자폐성 장애 아동 학대예방 및 조기개입 근거 마련 ○ 가정 및 교육기관 내 장애 아동 학대 예방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적극적 학대근절 행동계획 수립 ○ 장애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의견표현 및 권리실현 지원 및 절차 보장 ○ 장애아동의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및 지역사회 대안적 가정보호 우선 보장조치
	36-b-2.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분리 통계 체계 마련	·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분리 통계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분리 통계가 일부 제공되어 있으나, 변인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자료 수집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학대 현황 내 장애아동 학대 현황 통계 -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내 장애아동 현황 : 외출불가 사유 혼자 나가기 어려워서 (59.7%), 시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해서 (17.1%), 돈이 없어서(21.7%) /원하는 종교생활을 할 수 없다(15세 미만 11.6%, 15-17세 5.7%)/ 추행경험(15세 미만 3.6%, 15-17세 3.4%)/ 권리교육 없음(15세 미만 17.1%, 15-17세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현황과 연계한 등록·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 통계 체계 마련 ○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세부 분리통계 및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법령 마련 ○ 장애아동의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로의 전환에 대한 정보축적 및 분석
	36-c-1. 젠더 기반 폭력피해 여성 및	·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고려한 지원센터 및 센터를 포함하여 별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 젠더 기반 폭력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련 서비스 지원 체계 미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고려한 지원센터 및 센터를 포함하여 별도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필요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소녀를 위한 접근 가능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도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인										요
	36-c-2.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지원 센터 수	·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고려한 지원센터 또는 쉼터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젠더기반 폭력 피해 생존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지원센터 수 합계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지원 센터 관련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지원 센터 관련 통계 자료 구축 방안 마련 필요
	36-d.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의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이수 비율	·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학대를 인식하고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이수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 수 ÷ 전체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등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의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이수 관련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장애인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하는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원, 지원인력, 지원기관장과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119구급대원, 정신의료, 요양, 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아교육 교직원 및 강사,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와 직원,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관련 시설의 장과 종사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아동보장원 및 가정위탁, 등의 지원센터장과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 보호 및 재활단체의 장과 종사자, 장기요양원, 장기요양신청 조사 등의 종사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이들의 교육 이수 현황에 관한 구체적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으며, 의무교육 대상자에서 당사자의 가족과 사법종사자는 제외되어 있음.	○ 장애인학대피해예방교육의 이수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누리집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함

■ UNCRPD 최종건해 이행지표개발 발표회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38	38.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 및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 근절 조치 및 보상 계획 수립	·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과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매커니즘과 보상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 및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 근절 조치 및 보상 계획 수립 관련 내용을 반영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음	·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과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매커니즘과 보상 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법령 및 정책 마련 필요
40	40. 장애이주민의 입국 및 장애 관련 서비스 접근을 막는 차별 법령 또는 정책 폐지	· 장애가 있는 이주민의 입국과 장애서비스 접근을 막는 차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 관련 법령 또는 정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폐지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	· 최신 출입국관리법,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내용				√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장애인에 차별적 입국금지 가능 내용이 폐지되지 않았고 모든 장애 외국인에 대한 장애인 등록,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음	· 장애이주민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개정 및 폐지 필요 · 장애이주민이 장애 관련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도록 장애인복지법 관련 내용 개정
42	42-a. 협약 제19조, 일반논평 제5호 및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정·보완	· 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협약, 일반논평 제5호 및 탈시설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정, 보완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정·보완 여부 및 수정·보완 내용의 협약, 일반논평제5호 및 탈시설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	구조지표	D(질적/주관적평가)	보건복지부	· 최신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관련 내용 ·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 현 정부는 2023년 상반기 발표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이에 근거한 “탈시설 시범사업”의 명칭에서 ‘탈시설’ 용어를 공식적으로 삭제하는 등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보다 강화된 로드맵을 마련하기보다 기존 로드맵 내용조차도 후퇴시키는 등 기존 로드맵을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음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시설 수용의 정당성 부여를 위해 ‘주거 결정권’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으며, 일반논평 5호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제19조를 왜곡하고 있음. ·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4년도 예산계획안에 따르면, 거주시설 운영 보조를 위한 예산은, 663,280백만원인 반면에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예산은 5.982백만원으로 무려 110배에 달함.	· 탈시설 권리와 탈시설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시될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시설 수용 정책의 종식 및 국가의 책임 인정 등 UN탈시설가이드라인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독립적 법률안의 제정 필요. · 시설 소규모화 정책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전면 수정하여, 충분한 예산의 선제적 반영을 통해 ‘탈시설 시범사업’의 집행을 향상할 도모 필요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 지난 1년간 탈시설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탈시설' 용어에 강력히 반대 함으로써 입법 논의에 제동을 걸어왔음.	
	42-b. 거주시설 예산 대비 아동 포함 탈시설 전략 이행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의 비율	·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탈시설 전략 이행 강화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가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어느 정도 증액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탈시설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아동 포함) 탈시설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 ÷ 거주시설 지원 예산}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거주시설 예산 대비 아동 포함 탈시설 전략 이행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 관련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관련 통계 자료 확보 방안 마련 필요
	44-a-1. 공중파 텔레비전 수어통역, 화면해설 의무 비율 증가율	· 공중파 텔레비전의 수어통역 및 화면해설 의무 비율 증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당해연도 고시 의무 비율 - 전년도 고시 의무 비율) ÷ 전년도 고시 의무 비율}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관련 자료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공중파 텔레비전 수어통역, 화면해설 의무 비율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관련 통계 자료 확보 방안 마련 필요
44	44-a-2.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준수율	·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준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웹접근성 준수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수 ÷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준수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관련 통계 자료 확보 방안 마련 필요
	44-a-3. 정부 및 공공기관 출판물 중 읽기쉬운	· 정부 및 공공기관 출판물 중 읽기쉬운	※ 다음 측정산식 활용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관련 자료(추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정부 및 공공기관 출판물(ISBN 부과 대상)	○ 관련 통계 자료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UNCRPD 최종건해 이행지표개발 발표회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 주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출판물(ISBN 부과 대상)의 접근가능한 형식(읽기쉬운 버전, 점자, 보이스오버) 제공 비율	자료, 점자, 보이스 오버 등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출판물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작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출판물 수 ÷ 전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출판물 수) × 100				가 조사)					의 접근가능한 형식(읽기쉬운 버전, 점자, 보이스오버) 제공 관련 통계 자료 부재	
	44-a-4.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인터넷 이용 장애인 수 ÷ 전체 장애인 수} ÷ (인터넷 이용 국민 수 ÷ 전체 국민 수)} × 100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일반국민(100) 대비 장애인의 요소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정보접근 95.6, 정보역량 74.9, 정보 활용 81.5	○ 관련 통계 자료 확보 방안 마련 필요
	44-a-5.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률	·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스마트폰 이용 장애인 수 ÷ 전체 장애인 수} ÷ (스마트폰 이용 국민 수 ÷ 전체 국민 수)} × 100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률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일반국민(100) 대비 장애인의 요소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정보접근 95.6, 정보역량 74.9, 정보 활용 81.5	○ 관련 통계 자료 확보 방안 마련 필요
	44-a-6.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비율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율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수 ÷ 전체 키오스크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비율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한국장애인개발원(2022)의 디지털 시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연구 결과 중, 일반국민과 장애인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에 대해 비교하여 본 결과 일반국민의 평균이 설치능력 3.09, 활용능력 2.89, 관리능력 2.59로, 장애인의 평균 설치능력 2.60, 활용능	○ 관련 통계 자료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력 2.37, 관리능력 2.18보다 높았음	
	44-b.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지침이 반영된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	· 장애인이 방송 콘텐츠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관련 자료				√	→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계획에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지침이 반영된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타 장애 유형의 지원만큼 반영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46	46-a. 실종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GPS 추적장치 설치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당사자 동의 절차 준수	· 실종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GPS 추적장치 설치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당사자 동의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 정부의 현행 실종 예방 관련 대책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GPS 추적장치 설치 시 당사자 동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절차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종 예방 대책에 GPS 추적장치 설치 시 당사자 동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 반영 필요
48	48-a. 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리기, 출산(임신) 및 양육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	· 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리기, 출산(임신) 및 양육 등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802조, 제804조(약혼), 동법 제808조, 제804조(혼인), 동법 제873조, 제887조, 제894조, 제898조, 제902조, 제906조(입양) 등의 법률 개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개정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	→ 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리기, 출산(임신) 및 양육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리기, 출산(임신) 및 양육 등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802조, 제804조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필요

■ UN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개발 발표회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주 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48-b.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지원 정책 마련	·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지원 정책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			→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법령이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부족함	·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구체적 내용을 담은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추진 필요
	48-o.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비율	·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장애인에 대한 돌봄 제공 시간과 외부 돌봄 지원 인력의 돌봄 제공 시간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장애인 돌봄 제공 시간 ÷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장애인 돌봄 제공시간 + 외부 인력을 통한 돌봄 제공 시간)} × 100	결과지표	B(양적/주관적평가)	보건복지부	· 별도 추가 조사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공적 돌봄 지원 체계 구축 필요
50	50-a-1.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교육 정책 내 통합교육 관련 사항 반영	·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교육 정책 내 통합교육 관련 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D(질적/주관적평가)	교육부	·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 : 통합교육 협력모델인 '정다운학교' 운영('18. 40교 → '22. 104교) 등을 통해 ○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과정 조정, 정기상담 등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지원 확대('18. 479명 → '22. 1,627명) ○ 협력적 교육환경 조성과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이행사항 모니터링 체계 마련('2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법」 외에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내 통합교육 관련 내용 강화 ○ 일반교육교원 직무연수·자격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편성 및 일반학교 관리자와 담임(교과)교사 연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신고교육 포함)을 특수교육 관련 필수 교과(1과목)로 편성하여 매년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 안내 및 권고 	○ 일반교육 체제 내에서의 통합교육 실시를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UN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개발 발표회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52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나 의사소통 측면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50-c. 어린이집 이용 장애영유아의 동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에게도 교육부 산하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지원을 보장하여 재원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담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교육부·보건복지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9조 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법상 보장되는 의무교육에 대한 지원을 교육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아동이 유치원에 재원하는 장애아동과 동등한 수준으로 교육적 지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 및 관련 정책 마련 필요
	50-o.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지역사회로의 전환 비율	· 고교 졸업 장애학생 중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비율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취업 또는 진학 고교 졸업 장애학생 수 ÷ 전체 고교 졸업 장애학생 수) × 100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교육부	· 2023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한 고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586명 진학한 고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3,761명 전체 고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6,528명 - 특수학급, 특수학교, 일반학급 → 기초선 조사 결과,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지역사회로의 전환 비율은 66.6%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고등학생의 진학을 72.8%,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을 55.7%(잔학을 미포함) 등 비장애 학생의 비율과 동일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마련 필요
	52-a-1. 상법 제372조 완전 폐지	· 상법 제732조 완전 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 폐지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법무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활용				√	→ 상법 제732조 폐지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법 제732조 완전 폐지
	52-a-2. 가임기 장애여성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 여성장애인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률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에 접근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여성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이용자 수 ÷ 가임기 장애여성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가임기 장애여성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통계자료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52-a-3.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 정신장애인이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용 정신장애인 수 ÷ 전체 정신장애인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2021 정신건강실태조사보고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정신건강실태조사보고서 제2절 정신장애 진단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평생 해당 정신장애 진단받은 대상자에서 2020년도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비율 확인 4.4% → 기초선 조사 결과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은 4.4%임 	○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 확대 방안 마련 필요
	52-b-1. 보건 관련 종사자 대상 장애인 권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건관련 종사자(의사, 간호사, 한의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병원종사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지 확인하는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운영 중에 있음 - 사업내용: 보건의료종사자 등 관련기관 종사자에게 장애인건강권에 대한 교육 운영 - 사업대상: 의료인, 장애인관련 시설종사자 및 장애인 L 관련 보조인력, 예비의료인 등 - 세부사업: 장애인 건강권관련 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간: 1~2시간 · 교육운영: 연 4회 이상 · 교육내용: 장애인건강권 관련 법, 정책, 장애인과 의사소통 	○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결과 지표 확인 필요
	52-b-2. 국민 대상 건강 정보 중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식(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쉬운 형식 등)으로 제공되는 건강 정보 비율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관련 정보가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형식(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쉬운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건강 정보 수 ÷ 전체 건강 정보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2023년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발간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 2023년도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발간자료 중 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쉬운형식으로 함께 제공된 건강 정보 확인하였으나 30개 중 0개. 심지어 장애와 관련한 건강정보도 해당사항 없음 → 기초선 조사 결과 0%, 이를 조사하기 위한 통계 자료 확보 필요 	○ 보건복지부 제공 모든 국민 대상 건강관련 정보가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형식(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쉬운 버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필요
54	54.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 장애인의 국적과 체류 상태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른 가활과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추가 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등록을 필한 자에 한해 가활 및 재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등록제가 폐지되거나, 난민 등 무국적자도 장애인등록 신

■ UNCRPD 최종건해 이행지표개발 발표회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국적과 체류 상태에 따른 제한 규정 폐지	재활 접근 보장을 위해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마련 여부 확인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한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 외국인등록을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는데, 국적이 없는 난민 등은 외국인등록이 불가하므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접근이 제한됨 	청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신청서식을 개정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56	56-a-1. 노동 관련 법령 내 장애를 이유로 한 제한 직종 수	· 직종 관련 법률 내에 장애유형을 이유로 직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 직업 관련 법령 중 장애유형을 근거로 한 제한 조항 반영 법령 수 측정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활용(기존 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4항에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을 적용 제외 직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초선 조사 결과, 노동 관련 법령 내 장애를 이유로 한 제한 직종 수는 6종임 	· 적용 제외 직종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방안 마련 필요
	56-a-2. 국가 수준의 장애인 노동 관련 정책(계획) 내 채용 광고, 채용 절차, 합리적 편의 제공, 재훈련, 승진 등의 분야에서 장애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내용 반영	· 현행 관련 국가 정책 내 고용, 취업, 승진, 재훈련에 장애포괄적(차별 제외) 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국가 수준의 장애인 노동 관련 정책 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고용, 취업, 승진, 재훈련 관련 차별 금지 및 장애포괄적 조치 포함 여부 확인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 제6차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				√	→ 제6차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 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철폐 관련 내용 부재	· 정부 차원의 장애인 노동 관련 정책 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관련 내용 반영 필요
	56-b-1. 전체 인구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대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 장애인에 대한 동일 가치 동일 보수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의 임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전체 임금근로자의 3개월 평균 임금 ÷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 3개월 평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및 통계청 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상반기 기준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199.5만원으로 확인됨. 이는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300.7만원의 66.3% 수준으로, 전체인구 임금근로자 대비 장애인구의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격차 확인됨. → 기초선 조사 결과, 전체 인구 최근 3개월 평균 	·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구의 임금격차의 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함. 종사자의 지위(근로계약의 형태)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모,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주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평균 임금 비율		균 임금) × 100									<p>있어서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정도와 유형에 맞는 노동시장 진입 정책도 더욱이 강화되어야 함. 그리고 이에 성별에 따른 격차도 존재하여,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정책과 연구가 제시되어야 함,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급여가 낮은 것도 문제이나, 일반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안정적인 형태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실태도 고려되어야 함. 그래야만 장애인의 임금근로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최저임금적용제외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두지 않은 것도 장애인의 평균임금을 낮추는데 기인하고 있음.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56-b-2. 최저임금 배제 장애인에 대한 보상 체계 도입	·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관련 정책			√		→ 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 등에 이러한 보상 체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고용, 재활, 훈련 등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면서도, 동시에 최저임금 전면적용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을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의 강구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공공일자리 정책 등의 적극확대가 필요함.
	56-c-1.	· 탈시설 장애인이 일	* 다음 측정산식	결과지표	A(양적/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시설장애인 당사자의 노

■ UN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개발 발표회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탈시설 장애인 일반노동시장 참여 비율	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활용 · (최근 5년 간 탈시설한 장애인 중 일반 노동시장 피고용인 수 ÷ 최근 5년간 탈시설한 장애인 중 피고용인 수) × 100		사실기반)	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시설 장애인 일반노동시장 참여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전무함. 대체로 장애인구의 일반 노동시장 진입 여건도 열악하나, 탈시설 장애인 법적 지원체계 조차 없는 상태. ○ 탈시설 로드맵이 있음에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는 마땅한 탈시설 장애인의 일자리 정책과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없음. 	동시장 참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자료 확보 방안 마련 필요
	56-c-2.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 진입 장려 정책 부재.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진입 여건도 열악하나,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는 전혀 없는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시설 장애인의 일자리 진입과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정부주도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도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제시되어야 함
	56-c-3.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지적, 청각, 정신장애)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 지적, 청각, 정신장애 등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지적, 청각, 정신장애인 중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 전체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 100 *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한 피고용인 수 ÷ 전체 피고용인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 참여 비율은 97%에 달하지만,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 참여 비율은 73% 정도로 전체 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 기초선 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대비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은 75% 정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자폐성, 청각, 뇌병변, 정신장애 등 고용 취약 유형의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함. 장애의 정도나 유형으로 인해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울 경우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체계 확대 필요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56-c-4. 일반노동시장 내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지적, 청각, 정신장애) 지원체계 구축	· 일반노동시장 내 지적, 청각, 정신장애 등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의 지원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고용노동부	·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기본계획 등			√		→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일부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지적, 자폐성, 청각, 뇌병변, 정신장애 등 고용 취약 유형의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함. 장애의 정도나 유형으로 인해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울 경우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를 확대할 필요 있음.
	56-d-1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 비율	·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보호작업장 내 근로 장애인 수(근로자+훈련생) ÷ 전체 장애인 노동자 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기준 자료)			√		→ 기초조사 결과, 2021년 장애인고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고용된 장애인의 보호작업장 등 종사 비율은 3%임	○ 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을 일반 고용시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 대책 마련이 필요
	56-d-2.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중 일반 일자리로 전환한 장애인의 비율	· 보호작업장으로부터 개방되고 통합적이며 접근가능한 일반 일자리로 전환한 장애인의 비율	· 다음 측정산식 활용 (보호작업장 근무 중 일반 일자리로 전환한 장애인 수 ÷ 보호작업장 근무 장애인 수) × 100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별도 조사 실시			√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중 일반 일자리로 전환한 장애인의 비율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장애인직업재활정책에 따라 보호작업장에서 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많고,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전환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비중이 적음. 대부분 직업재활시설을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추세임	○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중 일반 일자리로 전환한 장애인의 비율 관련 통계 자료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최저임금적용제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온전한 분리 통계 필요. 보호작업장에서 일반노동시장으로 전환하는 비율에서 나아가 다시 보호작업장으로 재전환 되는 비율 점검 필요
	56-d-3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에 장애여성 의무고용	· 장애인, 특히 장애 여성의 개방노동시장 내 참여 증대를 위한 특별 보호 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 현행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내용 반영하지 않고 있음 ○ 경제활동상태 추정 지표를 통해 성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47.1%, 여성 24.2% 실업률은 남성 3.6% 여성 4.1%	○ 장애인고용장려금 정책을 통해 장애정도과 성별에 따라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을 달리하고 있음. 사업주가 채용하는 근로자가 중

■ UNCRPD 최종건해 이행지표개발 발표회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주 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할당 비율 도입	인하기 위한 지표										<p>증 일수록 여성 일수록 더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국 장애인고용장려금 정책 또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일뿐 여성장애인의 고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아님. 오히려 여성 장애인을 채용하는 정책으로 일자리의 진입 자체를 공공부문 주도로 확대해야 함 	
58	58-a-1. 국가 수준의 장애 정책 내 장애인의 빈곤경감계획 강화 조치 마련	·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 및 빈곤경감계획을 강화했는지 확인하는 지표	· 국가 장애인종합계획상 장애인빈곤경감계획 비교, 장애인 빈곤율 통계 확인하여 제시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제5-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2023 장애통계연보_장애인개발원				V	<p>→ 국가 수준의 장애 정책 내 장애인의 빈곤경감계획 강화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모두 장애인빈곤경감계획 강화를 내세우고 있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의하면 복지부 소관 장애인정책 예산 '17년 2조 7억원' > 22년 4조 854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 주로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돌봄 등 돌봄제도 확대 및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인상 등 소득보장 강화의 결과로 본다고 기재하였으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3 장애통계연보'에서는 ① 한국의 장애인 복지지출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꼴찌에서 5번째 수준이고, ②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 비율 역시 0.39%에 그쳐 뒤에서 4번째, OECD 평균 1.56%의 4분의 1수준인 점, ③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2021년 기준)은 42.2%로 국가의 개입이 없는 근로소득 등만 따지면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상태이며, 이러한 시장소득 빈곤율은 2017년 38.9%에서 2021년 42.2%로 4년 새 오히려 3.3% 올랐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 수치를 통해 국가 수준의 장애 정책 내 ○ 장애인빈곤경감, 소득보장과 관련된 장애인연금법 등을 개정하여 해당 사항 실현 필요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상 목표(23년 장애인 빈곤율 39% > 27년 장애인 빈곤율 37%) 실현을 통한 빈곤 정책 실효성 입증 필요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장애인의 빈곤경감계획 강화 조치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58-a-2.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빈곤율	· 장애인의 빈곤 수준을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는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의 빈곤율 ÷ 전체 국민의 빈곤율	결과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원자료(2020) ·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빈곤통계연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빈곤율(39.7%) ÷ 전체인구 빈곤율(15.3%) X 100 = 259% → 기초선 조사 결과, 2022년도 장애인 빈곤율은 전체인구 빈곤율 대비 2.6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곤율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장애인 복지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급여 등을 대폭 확대할 필요 장애정도가 아닌 '근로능력 평가' 등을 적용하여 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소득보장체계에 편입되는 방안 도입 필요 더불어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 고용 현황 개선 필요
	58-a-3.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금액에 대한 정부와 장애인단체 간 협의체계 구축	· 장애인단체들과 장애인의 소득 보장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장애수당 등 관련 민관 협의체(장애인단체 포함) 확인하여 제시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회의 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관련 협의체계의 실질을 파악할만한 자료 확인이 어려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의하면, 5차계획 평가 및 6차계획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 과제 발굴, 조율 등 논의를 위해 실무추진단 구성-운영('22.5~11)을 기재하고 있으나 실무추진단을 통해 장애인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어떤 장애인 단체가 얼마나 결합하였는지 등 실질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협의체계 구축 확인 필요 관련 협의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공개, 열람 필요
	58-b-1.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 폐지	·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특히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폐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시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2024년 보건복지부 정부 예산안 보도 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용 자료에 의하면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에 한해 의료급여 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제외된다고 발표함(+3.5만명). →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요건은 완전 폐지되지 않았으며 완전 폐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폐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 수립 및 시행 필요
	58-b-2.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 다음 측정산식 활용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기준 장애인 연금 수급자 수(368,716명) ÷ 등록 장애인 수(2,618,000) X 100 = 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대상 확대, 연금 수급 위한 장애기준 및 자산조사

■ UN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개발 발표회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주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60	수급 비율	모든 장애인 대비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장애인연금 수급 비율: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 등록 장애인 수) × 100				스별 사회보장통계					→ 기초선 조사 결과, 장애인연금 수급 비율은 14.1%임(2019년도 자료 기준)	방식 개선, 급여수준 인상 등
	58-b-3. 관계법령 및 정책 상 기초생활수급, 장애수당 등 수급 대상에 장애인, 장애인 포함	· 장애인, 장애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등과 같은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는 즉각적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고(여전히 등록대상 체류자격을 협소하게 열거하고,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상 이주민, 외국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음	○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장애인복지 확대, 장애인복지대상 편입위한 등록조건 개선, 장애인 이주민 대상 사업 내용 및 기준 구체화, 현금성 사업 배제 지침 개정 등
	60-a. 선거과정과 정치적, 공적 생활에서 장애인의 완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	· 선거과정과 정치적, 공적 생활에서 장애인의 완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직선거법			√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행사의 보장, 피선거권에서의 혜택 등이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적극적 참여 보장 제도라고 볼 수 없음	○ 장애인의 정치·공적 생활에서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60-c. 선거자료 및 투표시설에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강화 조치 마련	· 선거자료 및 투표시설에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강화 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자료(추가 조사)			√		→ 선거자료 및 투표시설에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강화 조치가 관련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선거자료 및 투표시설에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필요	
60-d. 전체 국민 투표율 대비 장애인의 투표율	· 전체 국민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대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모니터링 직전에 실시된 전국 규모의 동시 선거 결과	결과지표	B(양적/주관적평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회통합실태조사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		○ 장애인 별도 투표율 집계되지 않음. 전체 국민 2022년 투표에 참여했다 응답한 비율은 86.9%임.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지난 1년간 문화·사회활동 경험 비율상 장애인 투표참여 추정수는 2022년 기준 1,543,464명(80.3%) 참여한 것으로 나	○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을 전체 투표율 조사에서 별도로 조사가 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하지 않은 투표율임. 이로 보완하기 위한 통계 자료 구축 방안이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중)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 ÷ 전체 국민의 투표 참여율) × 100									타남. ○ 전체 국민의 투표 참여율(2022년 대통령 선거 기준) 77.1%이고,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사회통합실태조사) 86.9%이므로 (86.9/77.1) * 100 = 112.7%로 기초선 조사 결과값을 제시할 수 있음 → 기초선 조사 결과, 전체 국민 투표를 대비 장애인의 투표율은 112.7%임	마련될 필요
62	62-1. 어문출판물 발행 대비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디지털도서 제작 비율	· 어문출판물 중 점자, 녹음, 디지털도서로 제작되는 출판물의 비율을 통해 마라케시조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텍스트데이터, 전자점자도서, 전자책 제작 수 ÷ 어문출판물 발행수)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				→ 기타 - 조사 실시 어려움 ∵ 어문출판물 발행 대비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디지털도서 제작 비율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장자료 현황(대체자료제작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전자점자도서는 215책, 디지털음성도서(DAISY)는 4,644책 제작되었음.	○ 연도 기준 마련 필요, 어문출판물에 대한 정의 필요 ○ 출판물 관련 통계 발행 기준에 관련 통계 산출 근거 마련 필요	
	62-2. 장애인의 문화생활 프로그램 이용률	· 장애인의 문화생활 향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실제 이용률을 통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문화생활 참여 장애인 수 ÷ 전체 등록장애인 수) × 100 * 문화생활 범주 개발 필요	결과지표	B(양적/주관적평가)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실태조사 자료 활용				→ 기초선 조사 결과,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비율 6.1%(서울시 거주 장애인 기준, 2022년 현재)임	○ 문화예술 향유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64	64-a. 기존 장애 관련 통계 내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이주 지위, 교육 수준, 고용 상황 및 거주지 분리	· 장애 관련 통계 내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이주 지위, 교육 수준, 고용 상황 및 거주지 분리 등 분리 통계 수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통계청	· 보건복지부, 통계청 자료 등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상(120면)에도 “(장애분리통계) 장애인 정책 수립 및 효과 검증 강화를 위해 장애분리통계 구축을 위한 통계청 협의 및 관련 법안 개정 추진”이라는 언급만 되어있으며, 현재 위 지표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규정한 법령 또는 정책은 마련되지 않음	○ 장애분리통계 구축을 위한 근거 법률과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 UN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개발 발표회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통계 수집													
	64-b.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연구 예산 비율	·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연구 예산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중앙정부 각 부처의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예산 합계 ÷ 중앙정부 각 부처의 연구 개발 예산 합계) × 100 * 연구 개발 예산 범주 개발 필요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자료 (추가 조사)				▽	○ 연구개발비 예산 개요 - [2023년 대한민국 정부 연구개발 총예산] = 31조 778억원 - [2023년 각 부처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예산 합계] = 1. 산업통상자원부 (1) 사회적약자자립지원로봇기술개발 = 20억 2. 보건복지부 (1) 노인장애인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 = 109억 (2)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개발사업 = 44억 3. 국토교통부 (1) 자동차전용도로주행이가능한상좌석버스표준모델개발 = 40억 ∴ 1+2+3 = 213억 → 기초선 조사 결과,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연구 예산 비율은 0.0685% [각 부처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예산 합계 (=213억)/2023년 대한민국 정부 연구개발 (R&D) 총예산(=31조 778억원) × 100 = 0.0685%	○ 연구 개발 예산 범주 개발 필요	
66	66-1. ODA 총 예산 중 장애 관련 분야 예산 비율	· KOICA에서 집행하는 ODA 총 예산 중 장애특정, 포괄 프로그램 예산 비율 확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다음 측정산식 활용 전년도 · (장애 관련 분야 예산 합계 ÷ ODA 총 예산) × 100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외교부	· 제52회 RI Korea 재할대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논하다] 자료집. [국제개발특별위원회] KOICA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현황과 방향				▽	→ 기초선 조사 결과, 2022년도 기준 ODA 총 예산 중 장애 관련 분야 예산 비율은 0.325% - 지난 5년간(2018-2022) 약 800억원 규모, 2022년 기준 약 260억원 규모 장애분야 개발협력 지원	○ 장애포괄적 국제협력 예산 확대 방안 마련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66-2. KOICA와 장애인단체 간 협력 프로그램 수	· KOICA의 지원 프로그램 중 장애인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의 개수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지원 프로그램 중 장애인단체와의 협력하는 프로그램 수의 합계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외교부	· 제52회 RI Korea 재할대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논하다] [국제개발특별위원회]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ODA), 베트남 광찌성 장애인종합재활센터 설립사업, 프로젝트, 총 135.6억, 2023년 12.5억, 사업기간 2022-2026. (서울장애인복지관, 메디피스) 글로벌연수(ODA), 방글라데시 신경발달장애아 진단 및 치료역량 강화, 연수사업 총 4.07억, 2023년 1.6억, 사업기간 2021-2023. (인제대학교) 글로벌연수(ODA), 볼리비아 장애여성 성 및 재생산권리 보장프로그램, 연수사업, 총4.72억, 2023년 1.96억, 사업기간 2022-2024.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글로벌연수(ODA), 베트남 장애인 고용정책 역량 강화, 연수사업, 총 2.4억, 2023년 1.6억, 사업기간 2022-202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아프리카사업, 가나 장애아동 재활치료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총 55억, 2023년 11억, 신규, 사업기간 2023-202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서울시, 개발도상국 국제장애인자립지원 공모사업, 민관협력, 2억, 사업기간 2023. → 기초선 조사 결과, KOICA와 장애인단체 간 협력 프로그램 수는 6건임	·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에 기반한 프로그램 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66-3.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운영 횟수	· KOICA에서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운영하는 민관협의체의 회의 개최 횟수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민관협의체의 회의 개최 횟수 합계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외교부	· KOICA 개발협력연대(DAK) 웹사이트 분과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관련 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협력연대 분과 DiDAK은 운영되지 않고 있음. 분과(SDG 3, 4, 5, 13, 16) 중 장애인단체 참여 없음 KOICA 개발협력연대 운영위원회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참여 중_2023년 운영위원회의 2회 개최 → 기초선 조사 결과,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운영 횟수는 2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회의 정례화 및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측정 대상 민관협의체 특정 필요 및 해당 민관협의체 회의 실시 횟수 확인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68	68.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연도별 개최 횟수를 비교하기 위한	· 연도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기존 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 8. 2. 1회 개최 (제23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022. 미개최 2023. 3. 9. 1회 개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분과위원회 횟수 확대가 권고 사항인데, 22년도 0회에서 23년도 1회 개최하여 횟수는 확대되었으나 의미

■ UN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개발 발표회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연도별 개최 횟수	지표	횟수 집계									위원회) → 기초선 조사 결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연도별 개최 횟수는 1회임	있나 ○ 횟수 확대와 함께 장애인정책 조정이 효과적으로 되는지 확인하는 지표 추가 필요
69	69. 장애여성 및 탈시설 관련 최종견해에 따른 1년 이내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 장애여성 및 탈시설 관련 최종견해에 따른 1년 이내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과정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에 장애여성 및 탈시설 관련 '긴급한' 사항(예: 긴급 탈시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관련 사항을 반영한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통과 및 개정) 제·개정 필요
70	70. 장애 관련 분야 공직자들의 CRPD 최종견해 인지를 위한 노력	· 정부, 국회 구성원, 관련 부처 공무원,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자, 의료 종사자, 법조인, 언론인 등에게 관련 직군 각 구성원에게 정부의 최종견해 전달 및 이에 대한 조치 마련 요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결과지표	B(양적/주관적평가)	보건복지부	· 별도 조사 실시				√	→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련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정부와 국회 구성원, 관련 부처 공무원,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자, 의료 종사자, 사법관, 언론인 등 관련 직군의 그룹 구성원에게 본 최종견해를 전달하는 내용의 관련 정책 및 법령 개정 추진 필요
71	71. 정부 보고서 작성 시 장애인단체를 포함하여 협의하는 체계 구축	· 정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장애인단체 포함 협의체 운영에 관한 법령 등 규정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C(질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련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정기보고서 준비에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72	72.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방식으로	· 최종견해를 다양하고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제작 및 배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	·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행한 최종견해 관련 콘텐츠 수 합	과정지표	A(양적/사실기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추가 조사)				√	→ 최종견해 발표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된 최종견해 관련 콘텐츠를 발행하지 않았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읽기 쉬운 자료, 수어, 큰 글자, 점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된 최종견해 관련 콘텐츠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s of indicators)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기타		
	제작된 최종견해 관련 콘텐츠 발행 종수	한 지표	계									츠를 개발, 보급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지표개발연대 활동 및 향후 계획

정혜란 한국장애포럼 활동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지표개발연대 활동 및 향후 계획

한국장애포럼 정혜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 비준 및 심의 현황

- **협약 및 선택의정서 비준 과정**
 - 협약: 2007년 3월 서명 -> 2008년 12월 비준 -> 2009년 1월 발효
 - 선택의정서: 2022년 12월 비준 -> 2023년 1월 발효
- **심의 진행 과정**
 - 1차 정부 보고서 제출(2011년) → 2014년 심의 → 1차 최종견해
 - 2, 3차 병합 정부보고서 제출(2019년) → 2022년 심의 → **'2, 3차 최종견해'**
 - 4, 5, 6차 병합 정부 보고서 제출(2031년) 예정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지표 개발의 필요성



2022. 12.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 3차 최종견해 이행 지표 개발 연대

참여 단체

(14개 장애인단체, 3개 법률가 단체)

한국장애포럼(KDF),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사단법인두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권리중심증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피플퍼스트

유엔 최종견해, 한국 정부에 적용할 이행지표 개발됐다

A 허민지 기자 | © 입력 2023.04.28 11:56 | 댓글 0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등 18명이 '지표개발연대' 결성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지표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발
위원회 최종견해 국내 적용 기준 초안 마련

탈시설가이드라인 국내 적용 이행지표 개발에 이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지표도 개발됐다.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운동단체 활동가, 인권 변호사, 교수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아래 협약)을 알리기 위해 애써온 사람들 18명이 '지표개발연대'를 결성해 거둔 성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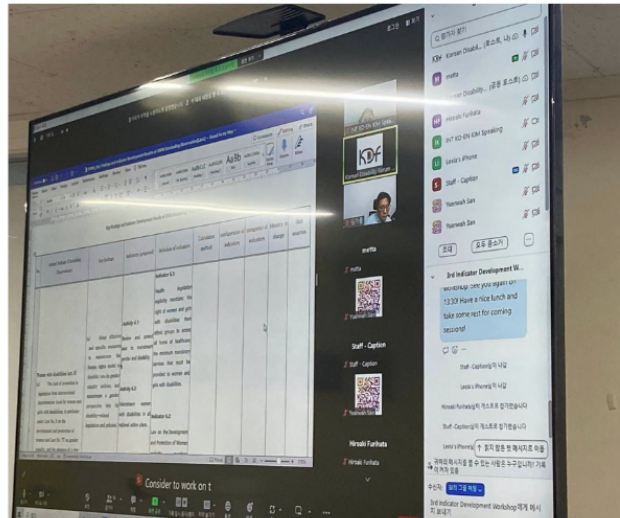
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포럼이 14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토론회'에서 공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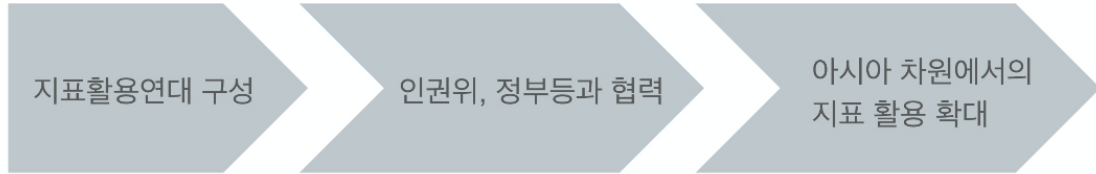
아시아국가 최종견해 이행지표개발 워크숍

- 목적: 정례적이고 체계적인 아시아 각국의 CRPD 최종견해 이행 점검 프로세스 마련
- 기간: 9-10월(2개월), 총 3회 진행
- 방식: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 참여: 총 6개 국가, 15인 참여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몽골, 태국 등)

아시아국가 최종견해 이행지표개발 워크숍



지표활용 계획



감사합니다

분야별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기초선 조사 결과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결과 발표회

분야별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기초선 조사 결과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

내 용 table of contents

- 1 발표대상지표
- 2 기초선조사결과¹
- 3 기초선조사결과²
- 4 기초선조사결과³



Part 1

발표대상지표

총 28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담당

Part 1

발표대상지표_모니터링예시

항목		내용			
지표명		6-a. 장애 범주 확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지표 특성	지표 유형	구조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	
	측정 방식	양적		질적	
		사실 기반		주관적 평가	
지표 소개	지표 산출방법	o 사회적 장애 개념을 고려하여 장애 범주 확대를 위한 장애 인복지법 개정 여부			
	활용 자료	o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최신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관련 내용 o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모니터링 결과	지표 이행 여부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기타 _____
	측정 결과 및 판단 근거	o 최근 1년간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장애 범주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o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요와 맞춤형 통합지원 및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주요과제 내용으로 '장애 인정이 어려운 희귀·난치질환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유형 인정기준 개선연구(23-24)를 거쳐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25-)라고 발표하였으나 희귀·난치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개선법외와 현실적 기준 연구 진행 단계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여부에 대한 이행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			
	향후 과제 (개선 사항)	o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 따라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이 반영된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필요			
	비고	o 장애인복지법 등에 장애 범주와 관련된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 정책에 구체적인 개정 계획 및 이행현황을 확인하였음			
항목		내용			
지표명		6e-4-2.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빈곤율			
지표 특성	지표 유형	구조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	
	측정 방식	양적		질적	
		사실 기반		주관적 평가	
지표 소개	지표 산출방법	o o 보 다음 측정산식 활용 · (장애인의 빈곤율 + 전체 국민의 빈곤율) × 100			
	활용 자료	o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2020) o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o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빈곤동태연보'(참고하지X)			
모니터링 결과	지표 이행 여부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기타 _____
	측정 결과 및 판단 근거	o 장애인 빈곤율(39.7%) + 전체인구 빈곤율(15.3%) × 100 = 259% 장애인 빈곤율은 전체인구 빈곤율 대비 2.6배 수준임			
	향후 과제 (개선 사항)	o 빈곤율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장애인 복지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금의 등을 대폭 확대할 필요 o 장애정도가 아닌 '근로능력평가'등을 적용하여 공적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소득보장제도에 편입되는 방안 도입 필요 o 더불어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 고용 현황 개선 필요			
	비고	o 자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심의까지 지속적인 통계 확인 및 비교 분석 필요			

2

기초선 조사 결과¹

Part 2 기초선 조사 결과¹ _공익인권법재단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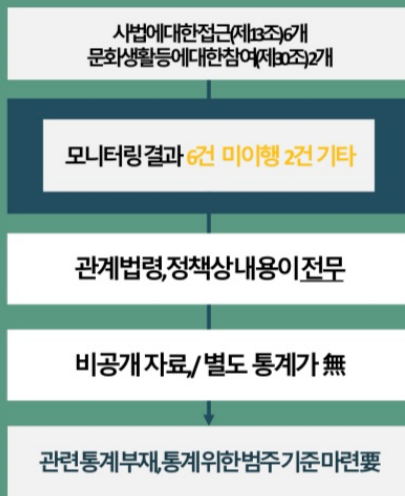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 및 비차별(제5조) 4개 ▪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제28조) 6개 <p style="text-align: right;">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결과: 8건 미이행, 2건 기타 (기타_정보 확인이 어렵거나 기초선 조사 이후 평가 기준 마련 계획) <p style="text-align: right;">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범주 확장, 교차적 차별 해소 전략, 패소비용 보완제도, 정당한 편의제공 조사지침 ▪ 관계법령 내용 확인x,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상 일반적인 계획에 조차 내용이 포섭되지x <p style="text-align: right;">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경감계획강화, 빈곤율, 소득보장금액에 대한 협의체계, 부양의무자요건폐지, 장애인연금 수급비율, 복지급여 대상에 이주민 포함 ▪ 계획강화여부 판단은 계획내용의 실질에 비추어 확인, 비교 필요(모니터링불완전) ▪ 협의체계 구축확인을 위한 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회의 자료 수집 및 확인의 어려움 ▪ 전혀 관계법령 개정 또는 기준 마련 계획이 전무 ▪ 최신 자료 미반영(장애인연금) <p style="text-align: right;">4</p>

3

기초선 조사 결과²

Part 3

기초선 조사 결과² _ 민변소수자인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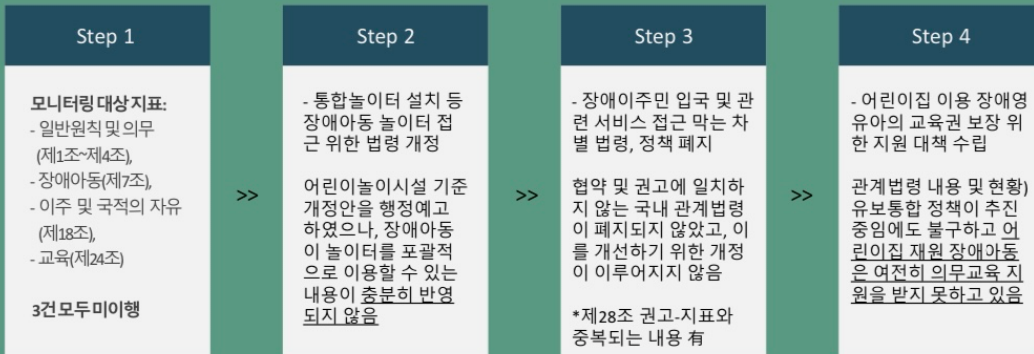
모니터링 대상 지표

-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시행 계획 수립
- 사법적 절차 전반에 사용 가능한 의사소통 수단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
- 모든 법정 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기초한 물리적 접근성 보장 계획 수립
- 사법 종사자 대상 장애인 사법 접근권 교육 근거 마련
- 사법 종사자 관련 교육 이수율
- 장애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지원 하는 로스쿨 비율
- 어문 출판물 발행 대비 점자 도서 등 제작 비율
- 장애인의 문화생활 프로그램 이용률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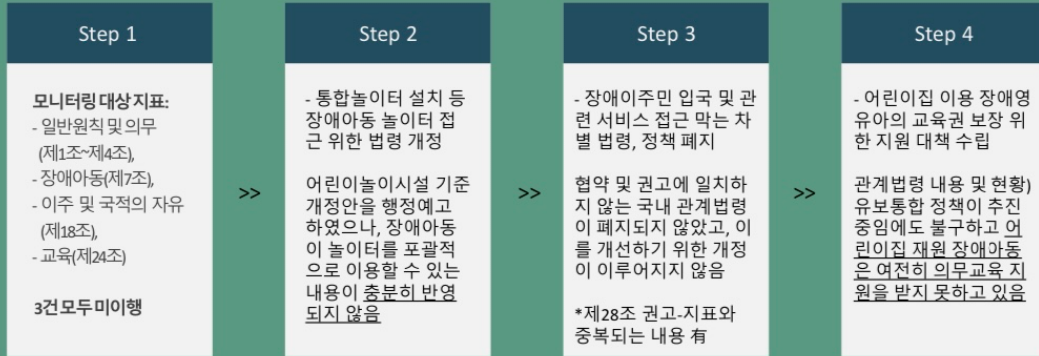
기초선 조사 결과³

Part 4 기초선 조사 결과³ 사단법인 두루x사단법인장애인법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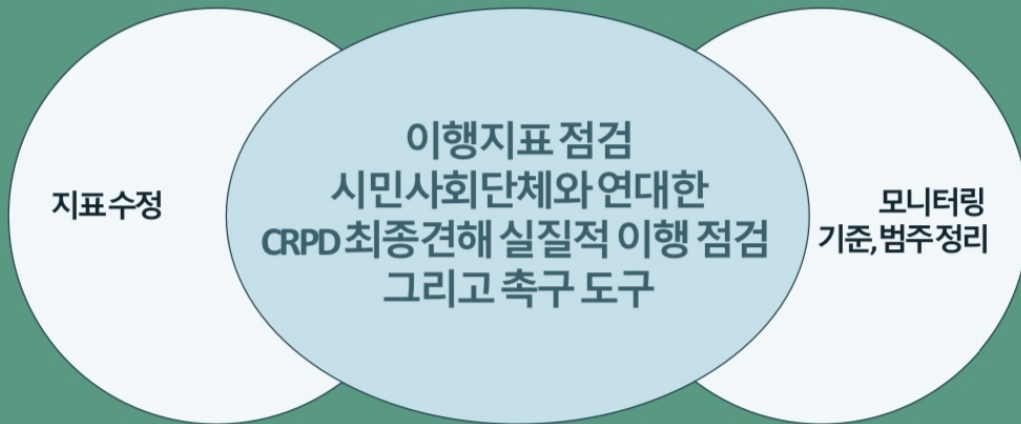
Part 4

기초선 조사 결과³ 사단법인 두루x사단법인장애인법연구회



Part 5

마치며



분야별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기초선 조사 결과

김소영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선임

UN 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 기초선 조사 결과

#제1~4조 일반원칙 및 의무 #제25조 건강 #제32조 국제협력 #제33조 이행 및 모니터링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소영

□ 2/32

6-b-1. 장애정도판정기준문항 중 ICF에 근거한 환경요인을 반영한 문항의 비율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CRPD 관련 조항

- ✓ 제1~4조 일반원칙 및 의무

• 최종견해 내용 전문

- ✓ 장애 의학적 모델의 요소를 장애 인권적 모델의 원칙으로 대체하고, 장애인에 대한 법적 환경적 장벽을 파악하는 것과 자립생활 및 완전한 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장애판정제도를 다시 설정할 것

6-b-1. 장애정도판정기준문항 중 ICF에 근거한 환경요인을 반영한 문항의 비율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지표 산출 방법

-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 (장애정도 판정 질문 항목 중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질문 항목 수/장애정도판정 전체 질문 항목 수)×100

• 활용자료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장애정도판정기준

6-b-1. 장애정도판정기준문항 중 ICF에 근거한 환경요인을 반영한 문항의 비율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지표이행 여부 : 미이행

• 측정결과 및 판단 근거

- ✓ 장애정도판정기준상의 문항 중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질문 항목 없음

② 하지기능장애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 정도	장애 상태	장애 정도	장애 상태	장애 정도	장애 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다리를 완전히 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한 다리를 완전히 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6.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악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2.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악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히 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5.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6.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6.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52-a-1

6-b-1. 장애정도판정기준문항 중 ICF에 근거한 환경요인을 반영한 문항의 비율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향후 과제(개선 사항)

- ✓ ICF의 '환경요인' 을 반영하여 장애를 판정하는 장애판정제도 마련

신체 기능	신체 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요인
제 1 장 정신기능	제 1 장 신경계의 구조	제 1 장 학습과 지식적용	제 1 장 제품과 기술
제 2 장 감각기능과 통증	제 2 장 눈, 귀 및 관련구조	제 2 장 일반적 과제와 요구	제 2 장 자연환경 및 인공환경 변화
제 3 장 음성과 말하기기능	제 3 장 음성과 말하기에 관련된 구조	제 3 장 의사소통	제 3 장 지원과 관계
제 4 장 심장혈관계, 혈액계, 면역계 및 호흡계 기능	제 4 장 심장혈관계, 면역계 및 호흡계의 구조	제 4 장 이동	제 4 장 태도
제 5 장 소화계, 대사계 및 내분비계 기능	제 5 장 소화계, 대사계 및 내분비계와 관련된 구조	제 5 장 자기관리	제 5 장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제 6 장 비노생식기능과 생식기능	제 6 장 비노계 및 생식계와 관련된 구조	제 6 장 가정생활	
제 7 장 신경근백대와 움직임에 관련된 기능	제 7 장 움직임과 관련된 구조	제 7 장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제 8 장 피부 및 관련구조의 기능	제 8 장 피부 및 관련구조	제 8 장 주요 생활영역	
		제 9 장 지역사회생활, 사회생활 및 시민생활	

출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WHO,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52-a-1. 상법 제372조 완전 폐지

#구조지표 #질적지표 #사실기반

• CRPD 관련 조항

- ✓ 제25조 건강

• 최종견해 내용 전문

- ✓ 52(a) **상법 제732를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에 대한 권리에서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와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52-a-1. 상법 제372조 완전 폐지

#구조지표 #질적지표 #사실기반

- 지표 산출 방법

- ✓ 해당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 폐지

- 활용 자료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2-a-1. 상법 제372조 완전 폐지

#구조지표 #질적지표 #사실기반

- 지표이행 여부 : **미이행**

- 측정결과 및 판단 근거

- ✓ 상법 제732조 폐지하지 않음

- 향후 과제(개선 사항)

- ✓ 상법 제732조 완전 폐지

9/32

52-a-2. 가임기 장애여성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CRPD 관련 조항

- ✓ 제25조 건강

- 최종견해 내용 전문

- ✓ 52(a) 상법 제732를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에 대한 권리에서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와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10/32

52-a-2. 가임기 장애여성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지표 산출 방법

-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 (여성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이용자수/가임기장애여성수)×100

- 지표이행 여부: 기타 (측정불가)

11/32

52-a-3.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CRPD 관련 조항

- ✓ 제25조 건강

• 최종견해 내용 전문

- ✓ 52(a) 상법 제732를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에 대한 권리에서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와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12/32

52-a-3.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지표 산출 방법

-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용 정신장애인의 수 / 전체 정신장애인의 수) × 100

• 활용자료

- ✓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보고서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

13/32

52-a-3.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지표이행 여부 : 기타 (기초선조사 이후 평가기준 마련 예정)

• 측정결과 및 판단 근거

✓ 2021 정신건강실태조사보고서 제2절 정신장애진단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 4.4%



출처: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국립정신건강센터, 2022)

14/32

52-b-1. 보건관련 종사자 대상 장애인 권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구조지표 #질적지표 #사실기반

• CRPD 관련 조항

✓ 제25조 건강

• 최종견해 내용 전문

✓ 52(b) 보건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 조치, 정보, 의사소통 수단과 방법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개발하고,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과 심리사회장애인, 장애여성과 여아를 위해 점자, 수어, 읽기 쉬운 버전을 포함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15/32

52-b-1. 보건관련 종사자 대상 장애인 권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구조지표 #질적지표 #사실기반

• 지표 산출 방법

- ✓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 활용자료

- ✓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

16/32

52-b-1. 보건관련 종사자 대상 장애인 권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구조지표 #질적지표 #사실기반

• 지표이행 여부: **이행**

• 측정결과 및 판단 근거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 운영
 - 사업내용: 보건의료종사자 등 관련기관 종사자에게 장애인건강권에 대한 교육 운영
 - 사업대상: 의료인, 장애인관련 시설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예비의료인 등
 - 세부사업: 장애인 건강권 관련 교육 운영
 - 교육 시간: 1~2시간
 - 교육 운영: 연 4회 이상
 - 교육 내용: 장애인건강권 관련 법, 정책 장애인과 의사소통

출처: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3)

• 향후 과제(개선 사항)

- ✓ 이와 같은 교육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과지표 개발 필요

17/32

52-b-2. 국민대상 건강정보 중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방식(점자, 보이스어보, 수어, 읽기 쉬운 형식 등)으로 제공되는 건강 정보 비율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CRPD 관련 조항

- ✓ 제25조 건강

• 최종견해 내용 전문

- ✓ 52(b) 보건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 조치, 정보, 의사소통 수단과 방법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개발하고,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과 심리사회장애인, 장애여성과 여아를 위해 점자, 수어, 읽기 쉬운 버전을 포함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18/32

52-b-2. 국민대상 건강정보 중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방식(점자, 보이스어보, 수어, 읽기 쉬운 형식 등)으로 제공되는 건강 정보 비율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지표 산출 방법

-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건강 정보 수 / 전체 건강 정보 수) × 100

• 활용자료

- ✓ 2023년도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발간자료

19/32

52-b-2. 국민대상 건강정보 중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방식(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 쉬운 형식 등)으로 제공되는 건강 정보 비율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지표이행 여부 : **기타 (기초선조사 이후 평가기준 마련 예정)**
- 측정결과 및 판단 근거
 - ✓ 2023년도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발간자료 중 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쉬운 형식으로 함께 제공된 건강정보 확인하였으나 약30개 중 0개. 장애와 관련한 건강정보 역시 해당사항 없음
- 향후 과제(개선 사항)
 - ✓ 보건복지부 제공 모든 국민 대상 건강관련 정보가 장애인이 접근 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필요

20/32

66-2. ODA 총 예산 중 장애관련 분야 예산 비율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CRPD 관련 조항
 - ✓ 제32조 국제협력
- 최종견해 내용 전문
 - ✓ 66. 위원회는 협약 이행을 다루는 지방, 지역 체계에서 인천전략을 포함하여 **국제협력 계획,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젝트를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단체가 효과적으로 협의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한다.

21/32

66-2. ODA 총 예산 중 장애관련 분야 예산 비율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지표 산출 방법

- ✓ 다음 측정 산식 활용
- ✓ (장애 관련 분야 예산 합계 / ODA 총 예산) × 100

• 활용자료

- ✓ 관련 행사 자료 (한국장애인재활협회(2023). 제52회 RI Korea 재활대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논하다] 자료집. [국제개발특별위원회] KOICA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현황과 방향)

22/32

66-2. ODA 총 예산 중 장애관련 분야 예산 비율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지표이행 여부: **기타 (기초선조사 이후 평가기준 마련 예정)**

• 측정결과 및 판단 근거

- ✓ 2022년도 기준 0.325%(지난 5년간(2018-2022) 약 800억원 규모, 2022년 기준 약 260억원 규모 장애분야개발협력 지원)

• 향후 과제(개선 사항)

- ✓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예산 확대 방안 마련 필요

23/32

66-3. KOICA와 장애인단체 간 협력 프로그램 수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CRPD 관련 조항

- ✓ 제32조 국제협력

- 최종견해 내용 전문

- ✓ 66. 위원회는 협약 이행을 다루는 지방, 지역 체계에서 인천전략을 포함하여 국제협력 계획,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젝트를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단체가 효과적으로 협의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24/32

66-3. KOICA와 장애인단체 간 협력 프로그램 수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지표 산출 방법

- ✓ 지원 프로그램 중 장애인단체와 협력하는 프로그램 수의 합계

- 활용자료

- ✓ 관련 행사 자료 (한국장애인재활협회(2023). 제52회 RI Korea 재활대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논하다] 자료집. [국제개발특별위원회]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과제) 기반, 해당 사업 홍보 자료

25/32

66-3. KOICA와 장애인단체 간 협력 프로그램 수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지표이행 여부 : **기타 (기초선조사 이후 평가기준 마련 예정)**
- 측정결과 및 판단 근거
 - ✓ 활용 자료 상 나열된 장애관련 사업의 주관단체 및 기관 파악 결과 장애인단체 없음
- 향후 과제(개선 사항)
 - ✓ 장애인단체와의 협력에 기반한 프로그램 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6/32

66-4.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운영 횟수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CRPD 관련 조항
 - ✓ 제32조 국제협력
- 최종견해 내용 전문
 - ✓ 66. 위원회는 협약 이행을 다루는 지방, 지역 체계에서 인천전략을 포함하여 **국제협력 계획,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젝트를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단체가 효과적으로 협의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한다.

27/32

66-4.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운영 횟수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지표 산출 방법

- ✓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횟수

- 활용자료

- ✓ KOICA 개발협력연대(DAK) 웹사이트 분과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관련 자료

28/32

66-4.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운영 횟수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지표이행 여부 : **기타 (기초선조사 이후 평가기준 마련 예정)**

- 측정결과 및 판단 근거

- ✓ KOICA에서 운영하던 개발협력연대 분과 DiDAK은 운영되지 않고 있음. 현재는 이 분과 SDGs 3, 4, 5, 13, 16에 따라 나뉘져 있으나 이 분과에 장애인단체 참여 없음

- ✓ KOICA 개발협력연대 운영위원회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참여 중_2023년 운영위원회 2회 개최

- 향후 과제(개선 사항)

- ✓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회의 정례화 및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장애인단체관계자 참여 보장

29/32

68-a-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연도별 개최 횟수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CRPD 관련 조항

- ✓ 제33조 국내 이행 및 모니터링

- 최종견해 내용 전문

- ✓ 68(a)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횟수를 늘려 장애인 정책의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할 것

30/32

68-a-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연도별 개최 횟수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지표 산출 방법

- ✓ 연도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활용자료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68-a-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연도별 개최 횟수

#과정지표 #양적지표 #사실기반

- 지표이행 여부 : **기타 (기초선조사 이후 평가기준 마련 예정)**
- 측정결과 및 판단 근거
 - ✓ 2021. 8. 2. 1회 개최 (제23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 2022. 0회 개최
 - ✓ 2023. 3. 9. 1회 개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향후 과제(개선 사항)
 - ✓ 횟수 확대와 함께 장애인정책 조정이 효과적으로 되는지 확인하는 지표 추가 필요

참고자료

- 국가정신건강센터(2022). 2021 정신건강실태조사보고서.
- 국립재활원(2022). 2023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안내.
- 법제처
- 보건복지부(2023). 고시 제2023-42호 장애정도판정기준.
-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발간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2023). 제52회 RI Korea 재활대회. 대한민국으로서의 기본권을 논하다. 자료집[국제개발특별위원회]
- KOICA 개발협력연대 웹사이트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자료

분야별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기초선 조사 결과

이정하 장애외인권발비덕행동 활동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탈시설' 기초선 조사 결과

2023.12.15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정하 활동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탈시설과 관련한 지표를 개발하여 점검한 결과를 아래 3가지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근본적으로 차별적인 법률을 폐지하고, 시설화금지 및 절차적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비차별적인 법률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시민과 동등하게 보장하는가?

두번째로 치료나 보호 등을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 등에 종속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는가?

세번째로 장애인을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식개선, 예방, 정보접근성, 독립적인 진정절차, 재활을 포함한 보상 및 배상 등 포괄적인 학대예방 전략을 수립했는가?

결론은 근본적인 법률과 관련한 첫번째 지표, 모니터링 체계와 관련한 두번째 지표 모두 미이행되었고, 세번째 지표 중 아동학대 대응 계획 외에 학대 근절 및 피해생존자의 충분한 배상을 포함한 포괄적인 학대예방 전략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8개의 지표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지표 모니터링 결과를 참조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 근거는 관련 법률, 주무부처의 정책계획과 사업 지침, 보고서, 관련 공식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첫번째로 근본적으로 차별적인 법률을 폐지하고, 시설화금지 및 절차적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비차별적인 법률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시민과 동등하게 보장하는가? 와 관련한 지표의 기초선 확인 결과, 두 지표 모두 미이행되었습니다.

32-a-1. 장애인의 비자의적 자유를 박탈하는 관련 법률 조항폐지(구조/질적/사실기반)

/ 미이행

32-a-2.(장애인 심문 및 구금 시)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편의 제공 사항이 반영된 법률 마련(구조/질적/사실기반)

/ 미이행

민법상 성년후견제가 유지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등에서는 오히려 장애인의 시설입소, 구금을 복지나 치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비자의적 입소를 가능하게 하는 예외조항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심문이나 구금시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편의제공은 명시되어 있더라도 임의조항이며, 위반 시에도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애인의 비자의적 시설수용도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장애를 고려하

지 않는 폭력적 강제연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비자의적 자유를 박탈하는 법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당사자 신청주의나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한 심의구조의 절차보다는 의사결정지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으로 다양한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실질적인 편의제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등 탈시설이 명시된 비차별적인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기반이 되는 과제입니다.

OHCHR 지표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보다 폭 넓은 개념으로 바라보고, 교도소를 비롯한 격리수용형태 기관의 실태를 성별, 연령, 장애유형, 기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해당 법령들이 장애인의 소송이나 판결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의 유죄비율, 항소 후 형량이 감량되거나 유죄판결이 취소된 사례 등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들은 온라인 상에 제공되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치료나 보호 등을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 등에 종속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는가? 와 관련한 지표의 기초선 확인 결과, 두 지표 모두 미이행되었습니다.

34-b-1. 심리사회적 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이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구조/질적/사실기반)/ 미이행

34-b-2. 격리치료시설 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격리치료자 비율(과정/양적/사실기반)/ 미이행

34-b-3. 격리치료시설 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격리치료 기간 비율(과정/양적/사실기반)/ 미이행

대한민국 치료감호소 피치료수감자 중 조현병이 575명(56.6%), 정신지체 84명(8.3%)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법무부 관련 자료 : 국립법무병원(법무부 범죄예방정책 통계, 2021) 정신의료기관 등에 비자의적 입원인 중 정신지체, 정신발달장애인의 입원은 1,056건으로 전체 비자의입원의 3.5%를 차지하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입원기간 중앙값이 입원기간이 가장 긴 82일에 이릅니다.(전체 중앙값 56일)(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2022)

특히 치료감호소에서 신체를 묶는 등 등 강압적인 제한의 경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장애 및 의사소통 조력 등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비강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와 같이 마련되어 있긴하나 형량과 별개의 추가 구금상태에 대한 긴급한 중단조치 및 치료, 자립지원 체계 연계시스템이 없으면 치료감호가 종료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가가 격리나 집단수용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이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는 지역의 병원, 기숙형 학교,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폭넓은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OHCHR 지표를 살펴보면, 제19조(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 와 관련한 지표는 전체 가구주 중 장애인의 비율과 국가의 지원이 있는 지역사회 사회주택에 살고 있는 장애인 비율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또한 시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역사회 자립생활 삶의 질에 만족한다고 말한 장애인의 비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14조(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지표를 포함하여 모든 지표가 장애 등을 이유로 자유를 박탈하는지 추적하고 시설수용을 예방하고 종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장애인을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식개선, 예방, 정보접근성, 독립적인 진정절차, 재활을 포함한 보상 및 배상 등 포괄적인 학대예방 전략을 수립했는가? 와 관련한 지표의 기초선 확인 결과, 부분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36-a. 장애인 학대피해생존자의 재활 및 배보상을 포함한 포괄적 학대 예방 전략 수립(구조/질적/사실기반) / 부분이행

36-b-1. 시설 내외 장애아동 폭력 및 학대 근절 행동계획 수립(구조/질적/사실기반) / 부분이행

36-b-2.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분리 통계 체계 마련(구조/질적/사실기반) / 이행

우리나라는 학대예방 전략이 있기 때문에 부분이행으로 평가했으나, 재활 및 배보상을 포함한 포괄적 예방 전략은 미비합니다. 장애인 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제적 범죄피해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대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낮아지고, 재학대율은 19%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74%에 이르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경우, 지역사회 주거권 및 종교생활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보장 조치가 부재합니다.

장애인 학대피해생존자의 배보상에 대한 지원은 일부 지자체 조례로 시행 중이나, 진상규명부터 배보상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이 또한 국가의 자동보상 시스템이 아니라, 피해생존자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진정과 투쟁을 통한 일부 지자체의 정책 수준에 그칩니다.

OHCHR 지표에서는 불가리아처럼 감각장애나 발달장애가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주택, 훈련기관, 병동, 학교를 포함한 데이터, 치매가 있는 성인의 주택까지 포함한 지표를 제시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매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데,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주 정부가 탈시설한 사람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중요한 예산의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대 발생 시 one strike-out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인권침해시설이나 학대피해에 대한 정보공개는 언론 외에 부족하고, 지역사회로의 사후 조치는 부재합니다. 미신고시설이 발견되어도 법정 시설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거나 거주인을 우선적으로 다른 시설로 전원시키기 때문에 재학대 발생우려가 높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를 독립적으로 시행하여 아동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학대 발생시 one strike-out 실행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아동의 경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대안적인 가정보호 우선 보장조치를 포함하거나 장애인의 지역사회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의 포괄적 인권침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입니다.

최종적으로 탈시설과 관련한 최종견해 이행지표의 기초선을 평가한다면 미이행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부가 시설화 법률을 폐지하지 않고, 탈시설을 포함한 비차별적 법률을 마련하지 못한 것, 실질적인 편의지원 절차보장 및 모니터링 데이터조차 세 부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비자의적 시설입소 및 입원이 유지되어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장애인의 격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의견을 덧붙인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최종견해 지표 뿐 아니라, CRPD 일반논평 및 탈시설가이드라인과 함께 이행수준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긴급한 탈시설에 대한 지원, 개인별 지역사회 주거 및 지원서비스 확대, 재활을 포함한 배보상지원 등의 지표를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표를 통한 CRPD 최종견해 이행도 점검이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예방하고 탈시설을 이끌어내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개인의 장애나 생활방식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방식을 지양하고, 보편적인 지역사회 기반 지원에 접근하는 장애인의 수와 비율 및 제공된 지원 서비스 파악하는 지표를 다루면서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질문으로의 방향 전환이 중요합니다.

분야별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기초선 조사 결과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 견해 이행 지표 기초선 조 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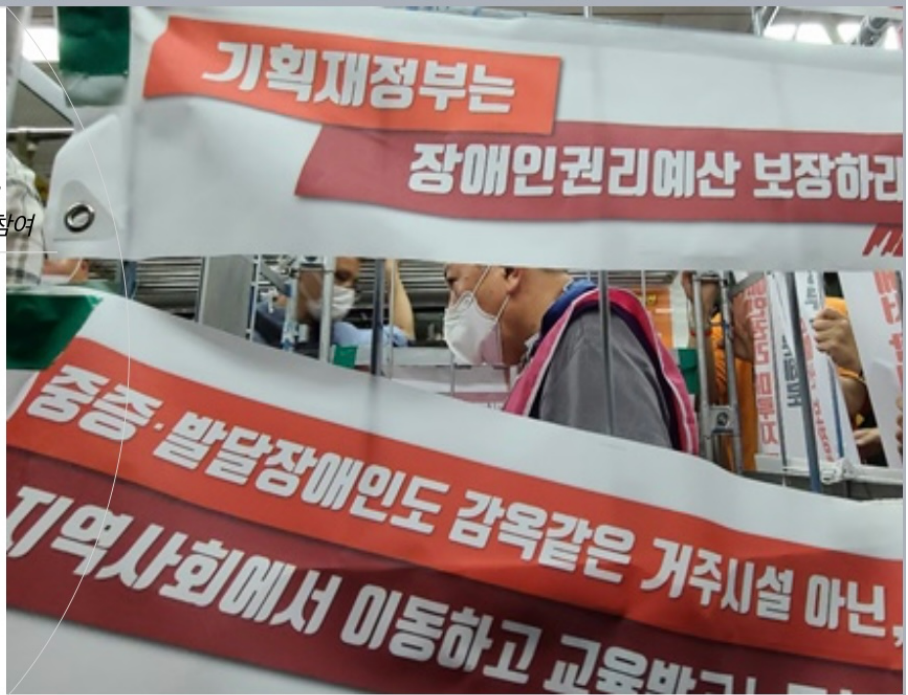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엔장애인권 리협약 제3조 일반원칙

-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나. 비차별
-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라.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 마. 기회의 균등
- 바. 접근성
- 사. 남녀의 평등
-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

- 장애인도
- 이동하고
- 교육받고
- 노동하고
- 지역사회에서
- 함께 살고 싶다!



[최종견해 원문]

특히 채용 광고, 채용 절차, 합리적 편의 제공, 재훈련, 승진에 관한 차별을 철폐하기위한 조치 도입할 것 (b) 최저임금법을 검토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보장하고, 최저임금법에서 배제된 장애인에게 보상을 제공할 것

항목	내용
지표명	56-b-1. 전체 인구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대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비율
지표특성	결과지표 양적/사실기반 측정
산출방법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 3개월 평균 임금 ÷ 전체 임금근로자의 3개월 평균 임금) × 100
활용자료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및 통계청 자료
측정결과	66.3% [199.5만원 ÷ 300.7만원 × 100]

미이행

[최종견해 원문]
 특히 채용 광고, 채용 절차, 합리적 편의 제공, 재훈련, 승진에 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 도입할 것
 (b) 최저임금법을 검토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보장하고, 최저임금법에서 배제된 장애인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것

항목	내용
지표명	56-b-2. 최저임금 배제 장애인에 대한 보상 체계 도입
지표특성	구조지표 질적/사실기반 측정
산출방법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활용자료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및 통계청 자료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재활시설 운영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측정결과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적용제외 될 경우 별도의 보상체계나 지원체계 없음
개선과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공공일자리 확대 필요



[최종견해 원문]
 (c) 장애인, 특히 탈시설 과정에 있는 장애인,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장애인이 개방노동시장에서의 노동 및 고용 및 통합적 노동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항목	내용
지표명	56-c-1. 탈시설 장애인 일반노동시장 참여 비율
지표특성	결과지표 양적/사실기반 측정
산출방법	(최근 5년 간 탈시설한 장애인 중 일반 노동시장 피고용인 수 ÷ 전체 장애인 중 일반 노동시장 피고용인 수) × 100
활용자료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관련 자료
측정결과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전무함
개선과제	탈시설장애인 분리 통계 필요



[최종견해 원문]

(c) 장애인, 특히 탈시설 과정에 있는 장애인,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장애인이 개방노동시장에서의 노동 및 고용 및 통합적 노동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항목	내용
지표명	56-c-2.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지표특성	구조지표 질적/사실기반 측정
산출방법	해당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인
활용자료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
측정결과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전무함
개선과제	탈시설장애인 분리 통계 필요



[최종견해 원문]

(a) 건축물의 규모, 수용가능 범위,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과 구조물의 접근성 보장 의무규정을 포함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한다.

항목	내용
지표명	20-a-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못하는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
지표특성	구조지표 질적/사실기반 측정
산출방법	해당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제·개정 여부로 확인
활용자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측정결과	최근 1년간 개정, 시행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건축물 규모, 수용가능 범위,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접근성 보장 관련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최종견해 원문]
 (b) 협약에 명시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접근성 전략을 채택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스템을 확립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접근성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항목	내용
지표명	20-b-1. 국가 접근성(기존의 구축 및 법적 강제 수단 마련 등) 전략 수립
지표특성	구조지표 질적/사실기반 측정
산출방법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협약에 명시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접근성 전략을 채택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스템을 확립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접근성 모니터링 메커니즘 반영 여부
활용자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측정결과	제4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내에는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고 모니터링 관련 내용은 부제 제6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역시 관망에 국한되어 추상적인 접근성 목표만 제시(무장애관광도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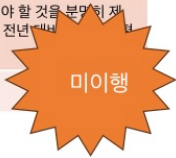
[최종견해 원문]
 (c) 특히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에서의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휠체어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의 수를 늘리고, 버스 번호, 노선을 포함한 정보와 탑승 안내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되도록 보장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접근가능하도록 공공장소와 환경을 개선한다.

항목	내용
지표명	20-c-1.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의 저상버스 확보 비율
지표특성	과정지표 양적/사실기반 측정
산출방법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중 저상버스 수 ÷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수) × 100
활용자료	국토교통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
측정결과	시외버스, 고속버스 중 휠체어 접근 가능한 버스 전무한 상황 광역버스 역시 2층형 좌석버스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나 283개 광역 노선 중 10%에 불과한 22개 노선에서만 2층형 저상버스 운행 중



[최종견해 원문]
 (b)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도록 한다.

항목	내용
지표명	42-b. 거주시설 예산 대비 아동 포함 탈시설 전략 이행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의 비율
지표특성	과정지표 양적/사실기반 측정
산출방법	탈시설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아동 포함) 탈시설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 ÷ 거주시설 지원 예산} × 100
활용자료	2022년~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제6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서울시 예산
측정결과	거주시설 예산 대비 지역사회 예산은 2022년부터 전년대비 20.4%, 38.6%, 40%로 소폭 상승세 그간 부재했던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개발 및 시범사업 예산 반영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은 시설에 대한 투자가 중단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설에 대한 예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
개선과제	아동 분리통계 필요



결론

- 한국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현황 차기 점검은 4, 5, 6차 병합 ... 2031년 이후에나 심의 예정
- 기초선 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표가 미이행으로 나타남
- 미이행 지표가 다수인 원인은 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 발표 (2022. 9.)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22년 간 이동권의 문제 조차 해결되지 않았음
- 정부의 이행 의지 담보하여, 4, 5, 6차 최종 견해에서 똑같은 권고가 되풀이 되는 일 없어야 할 것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점검 협력안

조은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 이행 계획

이승엽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참고자료] OHCHR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지표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장애인 권리 협약(CRPD)의 목적, 정의, 원칙 및 일반적 의무에 대한 예시 지표 목록			
속성/ 지표	CRPD와 그 선택의정서(OP)의 지위 및 법적 조화	제도적 프레임워크 및 정책 개발	장애인의 참여
	<p>1/4.1 다음 사항의 부재 또는 실효적 철회 - CRPD 비준 또는 가입 시의 모든 유보 조항 및/또는 - 협약의 목적 및 취지와 양립할 수 없는 CRPD 조항에 대한 해석선언(interpretive declaration)</p> <p>1/4.2 CRPD 선택의정서 비준.</p> <p>1/4.3 국내 법질서에 CRPD를 통합하거나 법원에 의한 직접적인 적용 및 집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채택.¹</p> <p>1/4.4 CRPD의 목적, 정의, 원칙 및 일반 의무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²</p>	<p>1/4.6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전략의 채택(기간, 구체적인 지표 및 척도, 장애별 데이터 수집 및 세분화, 자원 할당 등이 포함됨)⁴</p> <p>1/4.7 협약 이행을 위해 장애인의 권리를 주류화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진 정부 내 (정부 내 모든 부문과 수준, 부처와 부서에 걸쳐) 하나 이상의 중심점에 대한 법에 따른 임명(동 협약 33.1)</p> <p>1/4.8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해, 협약의 주류화와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구조, 임무, 리더십, 충분한 권한을 갖추고 다양한 부문과 수준에서 관련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내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법에 따른 임명 (동 협약 33.2).</p>	<p>1/4.9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정책의 개발과 시행에 있어,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그들의 대표 단체가 모든 장애 유형에 걸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절차 및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법률 또는 규제 조항(33.8과 유사).⁵</p> <p>1/4.10 장애인 단체의 발전을 지원하고, 특히 반대 의견을 표명할 때의 협박, 괴롭힘 및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장애인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 제정 (동 협약 29.9).</p> <p>1/4.11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정책의 개발 및 이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의 발전과 강화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p>

¹ 적절한 조치는 각국의 법적 전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국제 인권법 조약을 비준하는 것만으로도 국내 법질서에 편입되어 직접 적용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국내법 통과가 필수적인 단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협약은 반드시 자국어로 공식 번역되어 접근가능해야 하며, 동시에 공식 번역은 협약의 문언과 의미를 충실히 존중해야 한다.

² 그와 같이 입법된 법률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장애에 대한 인권 모델을 완전히 정착시키고 법과 정책에서 시혜적 및 의료적 모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협약 제1조에 따른 장애인 개념을 포함하여 성별, 연령, 신앙, 인종, 젠더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 소수민족, 원주민, 이주민 또는 기타 신분과 관계없이 (실제 또는 지각된 정신 건강 상태를 가진 모든 사람, --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 백색증 환자, HIV와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 및 기타 그룹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을 권리 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

⁴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 구조지표일반 정책 전반에 걸쳐 CRPD에 명시된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을 주류화하고, 필요에 따라 장애 관련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 여성, 아동 및 고령 장애인과 관련된 조항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장애인의 다양하고 교차적인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
- 예산 및 지출을 추적하기 위해 장애 관련 마커(marker)를 채택하여 적절한 예산 배분을 보장해야 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상품, 서비스, 장비 및 시설의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고 촉진해야 한다.
- 정보통신 기술, 이동 보조 장치, 기기 및 보조 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고 촉진해야 한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일 경우 우선권 부여)
- 장애인에게 이동 보조 기구, 장치 및 (다른 형태의 보조 및 지원 서비스 및 시설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포함하는) 보조 기술에 대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하고,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정책 입안자, 전문가 및 직원을 대상으로 CRPD에서 인정하는 권리에 대한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실시해야 한다;
- 장애인의 대표 단체를 포함하여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⁵ 이러한 조항은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 협의 절차에 대한 메커니즘과 정보는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협의 메커니즘은 장애인 단체가 구성원 간의 내부 협의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의견을 준비할 수 있는 명확하고 충분한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의미 있는 참여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협의 메커니즘과 절차는 여성, 아동, 노인, 난민 및 망명 신청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심리사회적 장애인, 지적 장애인, 청각 및 시각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농촌 지역 거주자,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 구성원과 그들의 배경을 포괄해야 한다.
- 협약의 이행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모든 문제와 장애인 또는 그 유형 단위(constituency)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문제에 대해, 장애인 대표 조직을 포함하여 장애인과 협의하고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을 보장해야 하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유형 단위 또는 유형 단위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 의사 결정권자는 이러한 협의의 결과를 고려하여 채택된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장애인 권리 협약(CRPD)의 목적, 정의, 원칙 및 일반적 의무에 대한 예시 지표 목록			
속성/ 지표	CRPD와 그 선택의정서(OP)의 지위 및 법적 조화	제도적 프레임워크 및 정책 개발	장애인의 참여
	1/4.5 CRPD에 부합하는 법적 조화를 위한 국가 계획/전략의 채택. ³		위해 국가 예산상 자금을 할당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조항(들). ⁶ (33.9과 유사)
과정지표	1/4.12 모든 장애 평가 및 인증 시스템은 CRPD에 부합하여야 하며, 도시와 농촌 및 외딴 지역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⁷ 1/4.13 모든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현을 위한 전체 할당 예산(정책 분야 및 자금 출처별로 구분) 1/4.14 참여형 연구 및 장애인 공동 주도한 연구, 사용자 주도 연구를 포함한 연구 및 다음 사항의 개발을 수행 또는 촉진하기 위해 할당된 예산: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상품, 서비스, 장비 및 시설 정보 통신 기술, 이동 보조 장치, 기기 및 보조 기술을 포함한 신기술 (합리적인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일 경우 우선권 부여)		1/4.15 시민사회단체(예: 협회, 재단 등)의 등록 시스템이 간단하고, 유연하며, 신속하고, 접근 가능하고, 비부담(또는 저렴한 비용) 및/또는 무료가 되도록 보장하는 규정 및 조치(동 협약 29.23) 1/4.16 장애인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약에 따른 법/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에 할당 및 분배된 예산(국제 협력 자원 포함). (33.17와 유사)

- 협약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된 정의와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
-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 및 기타 이유로 인한 차별로부터 장애인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하고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함을 인식해야 한다;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 법률, 규정, 관습 및 관행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
- 공무원과 공공시설이 협약의 목적, 원칙 및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나 관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공 당국 및 기관이 협약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일반 대중을 위한 고용, 교육, 건강, 주택, 서비스 및 시설 등 특정 영역에서 민간 행위자에 의한 장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 국가 데이터 수집 노력(인구조사, 설문조사, 행정 데이터 시스템)에 장애인이 포함될 것과, 장애 유형별 식별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데이터의 '장애별' 분류화를 보장해야 한다(자주 묻는 질문 참조);
- 장애인을 지칭하는 경멸적인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
- 장애인 권리의 침해 또는 위반의 경우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공 및 민간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 협약 및 장애인 권리 이행의 수단으로서 주요 손상/장애의 예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 장애인 대표 단체를 포함하여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한다. (각주 v 참조.)

³ 이러한 계획/전략은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 모든 법률과 행동 계획에서 CRPD 관점에 따라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을 주류화해야 한다;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정, 관습 및 관행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 공공 당국 및 기관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나 관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협약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장애인을 지칭하는 경멸적인 용어를 폐지해야 한다;
- 장애인 대표 단체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⁶ 지적 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단체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금 지원(funding) 제도는 장애인 단체가 권이용호 의제를 결정할 때에 그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참여함에 있어 그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⁷ 이러한 시스템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관련된 개인의 필요, 의지 및 선호를 평가해야 한다.
-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장애인 권리 협약(CRPD)의 목적, 정의, 원칙 및 일반적 의무에 대한 예시 지표 목록			
속성/ 지표	CRPD와 그 선택의정서(OP)의 지위 및 법적 조화	제도적 프레임워크 및 정책 개발	장애인의 참여
			1/4.17 장애인 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 활동의 건수. (33.19와 유사) 1/4.18 상담 절차에 참여하는 공공 부문 직원 중 차별 금지,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접근 가능한 정보 및 소통 등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의 수.
	1/4.19 장애인과 그 가족, 국가 및 지역 차원 공공 기관의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CRPD와 그 선택의정서(OP) 및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의 배포를 포함하여 CRPD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활동. 1/4.20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절차 및 유니버설 디자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은 공공 부문 직원(국가 및 지자체 수준), 의회 의원 및 직원, 판사, 법 집행 공무원, 의료 전문가, 교사 등 관련 전문가의 수 및 비율. ⁸ 1/4.21 CRPD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 및 훈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 대표 단체를 포함하여 장애를 가진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협의 프로세스. ⁹ (각 주제 및 지리적 위치에 따라 구분) 1/4.22 CRPD 조항 위반 관련 민원 중 그에 관한 조사 및 판결이 이루어진 비율, 민원 제기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비율, 추후 정부 및 의무부담자(예: 사립학교)가 이를 준수한 비율(각 메커니즘 유형별 구분)		

⁸ 교육은 대상 그룹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 차별 금지 및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유니버설 디자인, 접근성(접근 가능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포함), 장애인 및 장애인 대표 단체와의 협의 및 적극적인 참여 의무를 항상 포함해야 한다.

⁹ 이 지표는 공공 당국이 협약 제4(3)조와 일반논평 제7호에 따라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 입법 및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타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포함)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협의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 정보와 조건을 제한하거나, 장애인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등록 단체와 미등록 단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 조기 참여와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참여자의 참여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장애인 권리 협약(CRPD)의 목적, 정의, 원칙 및 일반적 의무에 대한 예시 지표 목록

속성/ 지표	CRPD와 그 선택의정서(OP)의 지위 및 법적 조화	제도적 프레임워크 및 정책 개발	장애인의 참여
결과지표	<p>1/4.23 CRPD 조항에 대한 유보 및 해석선언의 잔여 건수.</p> <p>1/4.24 CRPD의 원칙과 조항에 부합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 연간 전국 고등법원 연간 판결 건수.</p> <p>1/4.25 CRPD 및 해당 조항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개정된 관련 법률의 수(각 주제에 따라 구분)</p>	<p>1/4.26 장애인 인구 통계 추정치 대비 등록 장애인의 수¹⁰.</p> <p>1/4.27 다음 사항에 관한 참여형 연구, 장애인 공동 주도 연구 또는 사용자 주도 연구를 특징으로 하는 (현재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국가 지원 연구 프로젝트의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상품, 서비스, 장비 및 시설 또는 - 정보 및 통신 기술, 이동 보조 장치, 기기 및 보조 기술을 포함한 신기술 	<p>1/4.28 CRPD 이행을 위한 협의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단체의 수와 비율 (장애인 단체의 종류¹¹, 장애 유형(constituency) 및 지리적 위치별 구분)</p> <p>1/4.29 장애인 단체가 참여한 협의 과정/활동의 수와 비율(단체의 종류 및 장애 유형별 구분).</p> <p>1/4.30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제공하는 역량 강화 활동의 혜택을 받는 장애인 및 단체의 수(성별, 연령, 장애, 지리적 위치별 구분)</p> <p>1/4.31 의사 결정이 참여적(inclusive)이며 반응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성별,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비율(SDG 지표 16.7.2) (동 협약 29.32)</p>

¹⁰ CRPD에 부합하는 장애 평가 및 인증 시스템의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¹¹ 장애 여성, 장애 아동 및 청소년, 원주민 장애인과 같은 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CRPD 제4(3)조 및 33(3)조에 대한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7호 참조

제5조 - 차별 금지에 관한 평등에 대한 예시 지표 목록			
평등 및 차별 금지에 대한 권리*			
속성/ 지표	평등 및 (장애 및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로부터의 보호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사실상의 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
구조지표	5.1 합리적 조정에 대한 권리(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실상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채택할 의무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평등권 및 차별금지를 인정하는 국가 헌법 조항의 채택 및 법률의 제정. ¹² 5.2 모든 장애인, 특히 차별의 위험이 더 큰 집단의 평등을 위한 국가 전략 및 계획의 채택. ¹³ 5.3 모든 부문(건강, 고용, 교육, 폭력, 사법접근권, 정치적 참여 등)에서 장애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등록률, 고용률, 의료 서비스 접근성, 폭력 피해자, 차별 진정 등)를 수집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요건. ¹⁴ 5.4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공공 지출에 마커를 설정하도록 하는 법적 요건.		
	5.5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법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관련 법률의 제정 ¹⁵	5.6 공공 및 민간 주체들의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기술적 지침의 가용성, ¹⁶ 재정적 인센티브 및	5.7 사실상의 평등 실현을 위하여, 특별히 장애인 중 차별의 위험이 더 큰 집단을 위한 법률 및 정책 계획에 채택된 (모니터링 및 집행 메커니즘의

¹² 법률에는 최소한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정의는 협약 제2조를 준수해야 한다;
- 실제 또는 지각된 장애를 포함하여 모든 금지된 차별 사유에 근거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정의에는, 협약에 따라, 직접/간접 차별, 괴롭힘, 연계(association)에 의한 차별, 다중/교차적 차별,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포함되어야 한다;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고용, 교육, 의료,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사법 접근, 정치 참여 등 모든 부문과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 금지되어야 한다;
-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는 모든 분야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 제공;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메커니즘의 지정;
- 차별금지법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및 억제력 있는(dissuasive) 제재의 가용성;
- 차별적 관행에 맞서 싸우는 개인 피해자, 단체 및 연합을 포함한 법적 지위에 대한 폭넓은 인정.
-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 달성을 위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포함한 특정 조치를 채택할 국가의 의무.

¹³ 예를 들어 여성과 소녀, 어린이, 노인, 청각 장애인, 지적 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성소수자 장애인,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한 장애인, 이주민, 원주민, 백색종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소수 민족에 속한 장애인, 외딴 지역 및 농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실향인 장애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¹⁴ 정보공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데이터 보호 표준을 존중해야 한다. (OHCHR, [데이터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2018\)](#)을 참조)

¹⁵ "관련 법률의 제정"이란 장애 관련 법률이든 주류 법률(예: 노동법, 교육법, 사회보장법 law on social protection, 미디어법 등)이든 권리 행사를 규제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의미한다.

¹⁶ 예를 들어,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접근성 조치와 종종 오해되고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지침은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그 광범위한 제공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CRPD 위원회 [일반논평 2번](#), 문단 25 및 26, [일반논평 6번](#) 문단 26을 참조. 예를 들어, 국가 차원의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지침은 페루 <https://www.gob.pe/institucion/mtpe/normas-legales/282560-171-2019-tr>, 뉴질랜드 https://www.hrc.co.nz/files/7814/4848/7923/imm_reasonable_accommodation_guide.pdf 등에서 개발되었다.

제5조 - 차별 금지에 관한 평등에 대한 예시 지표 목록			
평등 및 차별 금지에 대한 권리*			
속성/ 지표	평등 및 (장애 및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로부터의 보호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사실상의 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
		예산 자원을 보장하는 모든 장애인의 평등을 위한 국가/계획 내의 구체적인 주제/목표의 수립	존재/지정을 포함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¹⁷ 를 비롯한 구체적 조치들의 존재.
과정지표	5.8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포함하여 협약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을 받은 (대중에게 서비스를 설계, 실행 및 제공하는) 공공 부문 직원의 수와 비율(부서, 부처, 지리적 위치별)	5.9 공공 부문 내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할당된 예산(예: 정당한 편의에 관한 중앙 기금) 5.10 국가가 운영하는 (고용주, 서비스 제공업체 등 민간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및 관련 절차에 관한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의 수.	5.11 특별히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같은 특정 조치의 혜택을 받는 장애인의 수(조치, 성별, 연령, 장애, 지리적 위치, (가능할 시) 공공 또는 민간 부문별). ¹⁸ 5.1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포함한 특정 조치의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 할당된 예산.

¹⁷사실상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를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공공 및 민간 고용주에게 총 직원 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고용할당제(예: 20명 중 1명, 5%);
- 장애인의 대표성을 증진하고 정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인 명부 또는 의회 의석에서의 할당제 도입;
- 이동성을 위한 특정 제품(개조 자동차, 보조 장치 등) 수입에 대한 면세;
- 소득 보장(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 감소 프로그램) 또는 장애 관련 비용 충당(장애 관련 비용의 직간접적인 추가 비용을 완화하고 충당하기 위한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위해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사회보장 혜택.

¹⁸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는 수혜자에 대한 보고를 통해 그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상황에 따라 수혜자의 다양하고 교차하는 정체성을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장애인의 입학률이 증가하는 것은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예: 할당제 또는 우선 입학(preferential admission))의 효과일 수도 있으며, 장애인 지원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적격 장애인 지원자의 수 증가일 수도 있다.

제5조 - 차별 금지에 관한 평등에 대한 예시 지표 목록			
평등 및 차별 금지에 대한 권리*			
속성/ 지표	평등 및 (장애 및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로부터의 보호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사실상의 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
	5.13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차별금지 프레임워크,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의무 및 사실상의 평등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함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보급 활동 및 인식 제고 캠페인. 5.14 장애인 권리의 평등 및 비차별과 관련하여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의 대표 조직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협의 프로세스. ¹⁹ 5.15 장애 및 기타 이유로 인한 장애인 차별 관련 민원 중 조사 및 판결이 이루어진 비율, 민원 제기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비율, 정부 및 의무 부담자가 이를 이행한 비율(각 절차 유형별). ²⁰		
결과지표	5.16 지난 12개월 동안 국제인권법에서 금하는 차별사유를 근거로 개인적으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된 인구의 (성별, 연령, 장애별) 비율(SDG 지표 10.3.1/16.b.1).	5.17 공공 부문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 승인 건수 및 비율(성별, 연령 및 장애별).	
	5.18 국제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성별, 연령, 고용 상태, 지리적 위치(도시/농촌), (SDG 지표 1.1.1) 및 장애별) 5.19 국가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성별, 연령(SDG 지표 1.2.1) 장애별) 5.20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SDG 지표 1.4.1) (성별, 연령, 장애별)		

¹⁹ 이 지표는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 입법 및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타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포함)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협의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 정보와 조건을 제한하거나, 장애인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등록 단체와 미등록 단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 조기 참여와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참여자의 참여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²⁰ 이 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 고소인의 성별, 나이, 장애, 인종적 배경, 원주민 배경, 소수자 배경, 언어, 국적, 이주 지위, 난민 신분, 망명 신청자 신분, 무국적자 신분, 사회 경제적 신분, 지리적 위치 또는 거주지(도시/농촌 지역), 종교, 결혼 및 가족 상태,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 메커니즘(예: 법원/심판소, 국가 인권 기관, 인권 옴부즈퍼슨 또는 기타 메커니즘);
- 차별 사유.
- 피고인(민간 행위자 또는 공공 기관)
- 주장된 차별의 종류(직접, 간접 등, 특히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및 특정 조치의 미준수 사례 명시).
- 사건 처리 결과(예: 인정, 기각 등)
- 정부의 이행 여부(예: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보상 및 평균 보상액)

제5조 - 차별 금지에 관한 평등에 대한 예시 지표 목록			
평등 및 차별 금지에 대한 권리*			
속성/ 지표	평등 및 (장애 및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로부터의 보호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사실상의 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
	5.21 토지에 대한 안전한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전체 성인 인구의 비율(성별, 임차권 유형별)(SDG 지표 1.4.2), 장애별) 5.22 여성 및 남성 직원의 평균 시간당 수입(SDG 지표 8.5.1) (직종, 연령, 장애별) 5.23 실업률(SDG 8.5.2) (성별, 연령, 장애별) 5.24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SDG 지표 10.2.1) (연령, 성별, 장애별) 5.25 필수 보건 서비스별 보장성(생식, 산모, 신생아 및 아동 건강, 전염병, 비전염성 질병, 일반 및 가장 취약한 인구의 서비스 역량 및 접근성을 포함하는 추적 개입(tracer intervention)을 기반으로 한 필수 서비스의 평균 보장성으로 정의)(SDG 지표 3.8.1) (성별, 연령, 장애별) 5.26 국가별 분포 대비 공공기관(국회 및 지방 의회, 공공서비스, 사법부)내 직위의 비율(성별,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SDG 16.7.1)		

* CRPD 제5조는 협약의 모든 권리를 포괄하므로 각 조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CRPD는 평등과 차별 금지에 대한 별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차별 위반은 협약의 다른 대부분의 조항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은행 계좌 개설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CRPD 제12조와 제5조를 모두 위반하는 것에 해당한다.

제6조 - 장애 여성에 대한 예시 지표*

장애 여성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행사하고 누릴 권리		
속성/ 지표	차별금지 및 평등	여성의 완전한 개발, 발전 및 역량강화(empowerment)
	6.1 성별(SDG 지표 5.1.1에 근거) 및 장애에 따른 평등과 비차별을 촉진, 집행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마련 ²¹ (CRPD 제5조 참조). 6.2 장애 여성을 포함하여 여성의 토지 소유 및 통제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의 채택(SDG 지표 5.a.2에 근거). 6.3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를 완전히 포괄하며, 대표 조직의 개발 지원 및 이중 트랙 접근법(twin track approach) 채택을 통해 모든 여성과 장애 소녀의 발전과 역량강화 ²² 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국가 젠더평등 계획, 정책 및 법률. ²³ 6.4 젠더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 할당을 추적하고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 (SDG 지표 5.c.1에 기반)의 채택 ²⁴ (대상 인구별 세분화) ²⁵ .	
	6.5 여성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국가 행동 계획 및 전략에서 여성과 장애 소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비율. ²⁶ 6.6 모든 부문에서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에게 할당되고 지출된 공공 자원의 비율 ²⁷	6.7 전체 여성과 전체 장애인 중 리더십 및 인권 교육에 참여한 장애 여성 및 장애 소녀의 비율. 6.8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장애 여성 및 장애 소녀를 위한 권리 교육 및 인식 개선 활동(연령, 장애, 지리적 위치별 참가자 수와 참여자 수 세분화) ²⁸ 6.9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를 대표하는 단체의 수(지리적 위치별).

²¹ 이 법안은 다음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하여 장애와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CEDAW/C/GC/35, 14항 참조), 다양하고 교차하는 형태의 차별을 인정해야 한다.
-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해당함을 인정해야 한다.
- 법 위반에 비례하는 효과적인 제재 및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

²² 특히 입안된 정책, 입법, 규제, 예산, 투자 또는 기타 정부 조치가 시골 지역 거주자, 고령 여성, 원주민 또는 소수 집단에 속한 장애 여성 및 장애 소녀의 평등과 포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영향을 결정하고 예측하기 위한 젠더 및 장애 영향 평가의 수행.

²³ 이중 트랙 접근법은 포괄적인 주류 프로그램과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를 위한 타겟화된(targeted) 개입을 결합하는 것으로서, 여성, 아동, 장애인에 관한 모든 주류 국가 행동 계획/전략/정책과 각 부문별 계획에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의 권리에 대한 명시적인 조치와 언급이 있어야 하며, 특히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타겟화된(targeted) 그리도 감시되는(monitored)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가 있어야 한다.

²⁴ 각 부문에 할당된 예산과 발생된 예산을 추적하기 위해 채택된 성별 및 장애 마커.

²⁵ 또한 연령, 장애 및 기타 기준별 세분화.

²⁶ 예를 들어, 국가 젠더평등 입법 및 정책, 장애에 관한 국가 행동 계획, 장애인의 성적 및 재생산권리에 관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²⁷ 여성 및 소녀, 장애인, 아동, 건강, 고용, 교육, 정의, 사회 보호, 폭력 예방, 참여 등을 위한 정책 및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내용 포함.

²⁸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은 원주민 장애 여성과 같이 소외된 집단의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을 포함해야 한다. CRPD 위원회, [일반논평 7호](#), 문단 60.

제6조 - 장애 여성에 대한 예시 지표*

장애 여성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행사하고 누릴 권리

속성/ 지표	차별금지 및 평등	여성의 완전한 개발, 발전 및 역량강화(empowerment)
	<p>6.10 장애 인식 및 포함(inclusion), 젠더평등, 복합적/교차적 형태의 차별에 대한 교육을 받은 각 부문별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직원 수와 비율.²⁹</p> <p>6.11 젠더평등에 관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활동은 장애 여성과 소녀를 포함하며,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에 관한 여러 형태의 차별,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에 맞서 싸울 것.</p> <p>6.12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의 권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및 모니터링에 이들의 대표 단체를 포함하여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협의 절차.³⁰</p> <p>6.13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에 대한 차별 관련 민원 중 조사 및 판결이 이루어진 비율, 민원 제기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비율, 정부 및 의무 이행자가 이를 준수한 비율(각 메커니즘 유형별)</p>	

구조지표
과정지표

교육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법;
-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를 포함한 젠더 및 장애 영향 평가;
-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 접근 가능한 대체 소통 형식;
- 장애 및 연령에 적합한 지원 제공;
- 교육 설계, 실행 및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장애여성과 장애 소녀의 참여.

³⁰ 이 지표는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 입법 및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타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포함)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협의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 정보와 조건을 제한하거나, 장애인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등록 단체와 미등록 단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 조기 참여와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참여자의 참여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6조 - 장애 여성에 대한 예시 지표*		
장애 여성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행사하고 누릴 권리		
속성/ 지표	차별금지 및 평등	여성의 완전한 개발, 발전 및 역량강화(empowerment)
결과지표	6.14 국회 및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SDG 지표 5.5.1) (장애별). 6.15 공공 부문 의사 결정 직책 ³¹ 에서의 대표성 비율(성별, 연령, 장애별) 6.16 관리자 직책에 있는 여성의 비율(SDG 지표 5.5.2) (연령 및 장애별) 6.17 장애인 및 여성 인권 단체를 포함하여 시민 사회 내 리더십 직책을 맡고 있는 장애여성의 비율(성별 및 장애별) 6.18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정신적 또는 성적 폭력을 당한 인구의 비율) (SDG 지표 16.1.3) (성별, 연령, 장애별) 6.19 성관계, 피임사용 및 재생산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정보에 입각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여성과 소녀의 비율(SDG 지표 5.6.1에 근거). (연령, 장애, 지리적 위치별) 6.20 토지에 대한 안전한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전체 성인 인구의 비율(성별, 임차권 유형(SDG 지표 1.4.2) 및 장애별) 6.21 농지에 대한 소유권 및 안전한 권리를 확보한 전체 농업 인구(성별(SDG 지표 5.a.1(a)), 장애별); 농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중 여성의 비율(임차 유형별(SDG 지표 5.a.1(b)) 및 장애별)	

*장애여성에 대한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3호](#) 참조.

³¹ 예를 들어, 정부 부처 내 국장급 직위, 국회의원, 마을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제7조 - 장애 아동에 대한 지표 예시

장애 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것

속성*/ 지표	평등 및 차별금지	생존, 발달 및 정체성 보존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진화하는 역량에 대한 존중	아동의 의사 존중
구조지표	7.1 아동과 관련된 모든 법률은 어떤 이유에 의한 차별이든 금지하며 ³² 장애 아동의 권리를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존중, 보호 및 이행하도록 보장한다. ³³ 7.2 아동 또는 장애인에 관한 모든 법률, 정책 및 국가 행동 계획/전략 ³⁴ 은 장애 아동을 포함해야 하며 ³⁵ , 장애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 연령 및 문화적으로 적합한 지원의 제공과 가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7.3 모든 부문의 예산 할당 및 지출에 장애 마커를 채택하고 의무적으로 보고한다. ³⁶			

³²*장애 아동에 관한 제7조에서 선택된 속성은 장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아동권리협약(CRC)의 기본 원칙인 차별금지, 생명권, 생존 및 발달권, 아동의 최선의 이익, 아동의 의사 존중을 반영한다. CRC의 기본 원칙인 "생명,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는 장애 아동의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 존중을 위해 제3조 (h)항에 명시된 CRPD 원칙을 반영하여 "생존, 발달 및 정체성 보존"으로 수정되었다. 생존과 발달의 맥락에서 본 CRPD 원칙을 언급하는 것은 장애 아동의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를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생존과 발달에 근거한 결정에 대한 우려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장애를 교정하거나 고치기 위한 치료 결정은 장애 아동의 정체성의 한 측면을 부정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관한 속성은 아동의 진화하는 역량에 대한 존중과 함께 제시되는데, 이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아동의 진화하는 역량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과 아동이 성숙함에 따라 아동의 견해가 최선의 이익 평가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CRC와 CRPD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CRC [위원회 일반논평 14호](#), CRC/C/GC/14 참조). 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 집단 내에서 자신의 진화하는 역량을 인정받고 존중받는 데 더 큰 장벽에 직면할 수 있는 집단이다.

장애, 성별, 나이, 이주 지위, 소수 또는 원주민 배경 등을 포함하며, 복합적이고 교차하는 형태의 차별과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를 장애 기반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³³ 이는 무엇보다도 다음을 포함한다.

- 장애 및 연령에 적합한 지원의 제공 및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 청문권;
-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
-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삶과 성장에 대한 권리;
-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
- 유해한 관행 및 비합리적 정신과적 개입의 효과적인 예방을 포함하여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
- 장애아동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들과 긴밀히 협의할 의무;
-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적용하고 아동의 진화하는 역량에 대한 존중의 최우선 고려;
-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 훈련 및 교육을 받을 권리;
- 적합한 놀이, 스포츠 및 교육을 받을 권리.

³⁴ 젠더 평등, 보건, 사회적 보호, 폭력 퇴치, 교육, 정보접근, 표현의 자유, 공공 및 정치 생활 참여, 이주민 통합, 사법접근성,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등과 연관된 분야와도 관련이 있다.

³⁵ 여기에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입안된 정책, 입법, 규정, 예산 또는 기타 행정 결정의 영향을 결정하고 예측하는 아동권리 영향 평가의 개발 및 전달 과정에서 장애 아동을 체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포함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4호](#), 문단 99 참조).

³⁶ 의무 보고는 프로그램이 다음 사항의 정도를 문서화해야 한다:

- 주요 목표로서 장애인의 통합과 관한 강화 정도;
- 장애인의 통합과 관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 활동 및 메커니즘의 비율;
- 장애인 통합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정도;
- 성별, 연령, 지리적 위치 및 소수 또는 원주민 배경 또는 이주 지위와 같은 다양한 정체성 계층과 관련된 기타 근거별 분류된 정도.

제7조 - 장애 아동에 대한 지표 예시

장애 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것

속성*/ 지표	평등 및 차별금지	생존, 발달 및 정체성 보존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진화하는 역량에 대한 존중	아동의 의사 존중
	<p>7.4 장애 아동의 시설 신규 입소에 대한 유예 조치 채택.</p> <p>7.5 장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과 의료 및 관련 개입 및 치료와 관련하여 장애 아동의 진화하는 역량과 아동의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를 고려하는 법적 요건의 채택.³⁷(지표 15/17.12)</p> <p>7.6 아동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서 수집된 통계 및 데이터는 적절하게 세분화되고³⁸,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공개 및 이용가능해야 한다.</p> <p>7.7 장애 아동이 고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메커니즘의 가용성.</p>		<p>7.8 법률 및 정책의 설계,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장애 아동을 포함하는 최선의 이익 평가의 통합에 대한 당국의 규정, 프로토콜 및 지침 채택.³⁹</p>	<p>7.9 다음 두 사항을 모두 촉진하기 위한 규정, 프로토콜 및 기타 조치의 채택:</p> <p>a) 아동이 주도하는 조직 및 이니셔티브에 장애 아동을 포함시키는 것.</p> <p>b) 장애 아동 및 장애 청소년이 주도하는 조직 및 이니셔티브의 개발 및 지원.</p> <p>7.10 아동의 의견을 구하고, 아동과 협의하며, 아동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데 있어 연령, 장애 및 문화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당국의 규정, 프로토콜 및 지침 채택.</p>

³⁷ 특히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고 침습적이거나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치료 및 개입과 관련하여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신경 이완제를 포함한 항정신성 약의 투여, 실험적인 수은 해독 치료, 성장 둔화 치료, 살균, 자폐아에 대한 전기 충격 및 패킹과 같은 행동 수정 요법, 뇌병변 아동에 대한 유도 교육, 저신장 아동에 대한 팔다리 연장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³⁸ 연령, 성별, 장애, 이주 지위, 소수 민족 또는 원주민 배경 및 기타 금지된 차별 사유에 따른 차별.

³⁹ 다음을 인식하고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및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비중을 두고 아동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특히 성별, 젠더, 손상/장애,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 및 이들의 교차점과 관련된 아동의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를 포함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존중;
- 결정의 특정 시점에 신체적, 정서적, 교육적 및 기타 요구 사항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미래와 잠재적 발달도 고려해야 하는 아동의 진화하는 역량;
- 불평등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같은 효과적이고 평등한 기회의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

제7조 - 장애 아동에 대한 지표 예시

장애 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것

속성*/ 지표	평등 및 차별금지	생존, 발달 및 정체성 보존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진화하는 역량에 대한 존중	아동의 의사 존중
과정지표	7.11 장애 소녀와 소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법률, 국가 행동 계획 및 전략의 수와 비율. 7.12 교육, 보건 및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가 있는 망명 신청인 및 난민 아동의 비율(성별, 연령, 장애, 이주 지위, 서비스 분야별).	7.13 행정당국(civil authority)에 출생 등록을 한 5세 미만 아동의 비율(연령(SDG 지표 16.9.1), 성별, 장애별).	7.14 장애 아동과 관련된 모든 장애 관련 및 주류 법률,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국가 정책 개발,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 아동의 대리인을 포함한 장애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협의 프로세스. ⁴⁰	
	7.15 장애 아동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맞서고 이들에 대해 행해지는 유해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활동.			

⁴⁰ 이 지표는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 입법 및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타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포함)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협의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 정보와 조건을 제한하거나, 장애인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등록 단체와 미등록 단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 조기 참여와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참여자의 참여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7조 - 장애 아동에 대한 지표 예시

장애 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것

속성*/ 지표	평등 및 차별금지	생존, 발달 및 정체성 보존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진화하는 역량에 대한 존중	아동의 의사 존중
	7.16 모든 부문에서 장애 소녀와 소년을 위한 공공 지출의 비율 ⁴¹ 7.17 아동 관련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제고 및 정보 캠페인 중 장애 아동이 완전히 접근 가능하고 포함될 수 있는 캠페인의 비율. 7.18 장애 아동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직원 중 장애 아동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의 비율. ⁴² 7.19 장애 소녀 및 소년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추가 사유를 포함하는 장애 차별 민원 중 수사 및 판결이 내려진 비율, 민원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비율, 정부 및 의무 부담자가 이를 준수한 비율(각 메커니즘 유형별).			7.20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장애 아동의 대표성을 포함하여 장애 아동의 권리 및 참여에 관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활동. ⁴³
결과지표	7.21 5세 미만 사망률(SDG 지표 3.2.1) (성별, 장애별). 7.22 아동의 영양결핍 유병률 (SDG 지표 2.1.1) ⁴⁴ (성별, 연령, 장애별) 7.23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 유형별(저체중 및 과체중)(SDG 지표 2.2.2) 유병률 (성별, 연령, 장애별) ⁴⁵ 7.24 아동 노동에 종사하는 5~17세 아동의 비율 및 수 (성별, 연령(SDG 지표 8.7.1) 및 장애별) 7.25 (a) 초등학교 2/3학년, (b) 초등학교 말기, (c) 중등 저학년 말기에 (i) 읽기 및 (ii) 수학에서 최소한의 숙련도 수준을 달성한 아동 및 청소년의 비율 (성별(SDG 지표 4.1.1), 장애, 및 소수민족 또는 원주민 배경별) (지표 24.28) 7.26 대안 보호(가족 환경/소규모 그룹홈 또는 기타 거주 돌봄 시설)에 있는 모든 아동 대비 해당 대안 보호에 있는 장애 아동의 수와 비율 (연령, 성별, 장애 및 환경 유형별) (지표 23.26)			7.27 학교, 지방, 지역 및 국가 거버넌스 수준에서 자체 조직을 포함하여 의사결정/협의기구에 참여하는 장애 아동의 비율 ⁴⁶ (성별, 연령 및 장애별) 7.28 당사국 내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이 이끄는 단체의 수 (대표된 장애 유형, 지역 또는 지구별)

⁴¹ 교육, 참여, 보건, 사회적 보호,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⁴²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
- 장애 아동을 포함한 아동 권리 영향 평가;
-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 아동의 최선의 이익;
- 장애 아동의 진화하는 역량과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
- 접근 가능하고 대안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 장애 및 연령에 적합한 지원 제공;
- 교육의 설계, 실행 및 모니터링에 대한 장애 아동의 참여.

⁴³ 여기에는 부모와 친척, 아동을 위해 일하는 직원(예: 교사 등), 지역사회 전체(예: 또래, 급우 등)가 포함되며, 인식 개선 및 정보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 소녀 및 소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⁴⁴ 영양결핍 유병률(PoU)은 자신의 습관적인 음식 섭취가 정상적인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이 에너지 수준을 제공함에 있어 불충분한 인구의 비율을 추정하는 수치이다.

⁴⁵ https://www.unicef.org/disabilities/files/Stronger-Together_Nutrition_Disability_Groce_Challenger_Kerac.pdf

⁴⁶ 유럽평의회, 아동 참여 평가 도구(<https://rm.coe.int/16806482d9>)를 참조.

제8조 - 인식 제고에 대한 지표 예시			
장애인 권리 존중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			
속성/지표	고정관념, 편견, 유해한 관행 근절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심 고취	장애인의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
구조지표	<p>8.1 법률 및 정책에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영속화하는 조항이 없어야 함.⁴⁷</p> <p>8.2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장애인 인식 개선 전략 및 계획의 존재 여부.⁴⁸</p> <p>8.3 미디어 규제 당국 차원의 대중매체 및 미디어 매체의 장애인 인식개선 가이드라인 채택을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직장 및 인사 절차에 대한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가이드라인; - 언론인을 위한 장애인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⁴⁹ - 정책 및 관행의 설계, 개발, 모니터링에 있어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해 장애인과 협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 		

⁴⁷ 이를 위해서는 우생학을 포함한 능력주의에 기반한 경멸적 언어, 개념, 전제, 또는 인간 다양성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동등한 존엄성과 삶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불평등, 배제 및 차별적 관행의 정당화를 지속하는 기타 담론(예: 장애인에 대한 강제 치료, 강제 불임, 시설화 및 의료 실험을 허용하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의료 및 과학적 관행에서 능력주의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43/41](#)) 및 OHCHR의 인식 제고에 관한 보고서([A/HRC/43/27](#))를 참조할 것.

⁴⁸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관습적, 종교적 또는 의학적 세계관에 기반한 것을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나 태도에 기반한 낙인찍기와 배제의 근절을 위한 조항;
-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전문가 대상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조항;
- 통합적인(**inclusive**) 환경에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역량을 키워 사회에서 장애인의 가시성(**visibility**)을 높이기 위한 미디어 보도에 관한 조항;
- 장애인에 대한 조작적이고 만연한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미디어 보도에 관한 조항;
- 장애에 대한 시혜적 또는 의료적 모델에 기반한 공공 또는 민간 캠페인에 대한 지지 및 펀딩 캠페인을 줄이는 것을 포함하여, 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부합하는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에 관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함한 공직자의 지지를 확고히 하는 조항
- 수화, 토착/소수 언어, 읽기 쉬운 버전 및 아동 친화적 버전 등 다양한 형식을 포함하는 각국의 언어로써 장애인권리협약이 제공 및 이용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⁴⁹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영속화 방지, 장애에 관한 부정적 신화화 해소, 장애인에 대한 불관용적 태도와 차별 철폐, 인간 다양성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동등한 존엄성과 삶의 가치 존중, 장애인의 자원과 목소리의 다양성 추구의 목적을 반영할 것.

제8조 - 인식 제고에 대한 지표 예시			
장애인 권리 존중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			
속성/지표	고정관념, 편견, 유해한 관행 근절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심 고취	장애인의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
	<p>8.4 장애인에 대한 혐오 범죄, 혐오 발언 및 유해한 관행⁵⁰에 대응하는 법적 조치의 제정(형사 집행 가능한 제재를 포함).⁵¹</p> <p>8.5 경멸적인 언어와 행동에 대해 비례적인 제재를 가하는 법적 조치의 제정.</p>	8.6 인권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는 장애인의 권리가 포함되며 다양한 구성원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들이 참여한다. ⁵²	
과정지표	<p>8.7 장애인의 권리 및 장애인의 기여에 대한 멀티미디어 인식 제고 활동의 수와 유형(유형, 기간 및 타겟 집단별로 구분)</p> <p>8.8 장애인을 대상으로⁵³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및 국가 법률 체계에 따른 권리를 알리는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아웃리치 활동의 수와 유형(활동의 유형 및 지리적 범위별로 구분)</p> <p>8.9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⁵⁴를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인식 제고 프로그램에 따라 훈련받은 사람의 수.</p> <p>8.10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통합과 인권 존중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콘텐츠의 존재 여부, 그리고 언론/커뮤니케이션 산업과 관련된 학교 및 대학교의 커리큘럼에서 성 주류화⁵⁵에 관한 내용이 다뤄지는지 여부.</p> <p>8.11 장애인을 다루는 보도 윤리 강령과 같은 서면 정책을 채택한 공공 및 민간 미디어 기업의 수와 비율.</p>		

⁵⁰ 유해한 관행이란 " 다중적 교차적 형태의 차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 젠더, 나이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근거한 지속적인 관행과 행위의 형태로서, 많은 경우 폭력을 수반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및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31호) 및 아동권리위원회(18호) 공동 일반논평을 참조([Joint General Recommendation No. 31 by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General Comment No. 18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harmful practices](#)). 장애인에 대한 유해한 관행은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근거할 수 있다. 유해한 관행의 예와 관련하여, 강제 정신과적 개입에 대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2009년 중간 보고서를 참조([A/63/175](#)).

⁵¹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적 또는 사적 행위자에 의한 장애 기반 폭력, 적대행위, 괴롭힘 및 유해한 관행을 포함한 장애혐오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규정한 조항.
- 유해한 관행을 조장 및 선동하는 등 미디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
-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유해한 관행, 특히 침습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비자의 치료 및 주술적 비난과 관련된 관행을 폐지하는 조항.
- 법률, 정책 및 정부 담론 상 장애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폐지 및 제거하는 조항

⁵² 인권 교육 및 훈련과 구체적인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hre2020.org/indicator-framework>에서 확인할 것.

⁵³ 장애 여성, 장애 아동 및 청소년, 소외되고 배제된 지역사회의 장애인,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포함.

⁵⁴ 일반 대중, 공무원, 미디어 모니터링 기관의 구성원, 언론사, 언론인, 민간 부문, 지역사회 및 종교 지도자, 장애 여성 및 소녀, 소외된 장애인 그룹 등을 포함.

⁵⁵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정보는 미디어의 성인지 감수성 지표(<http://www.media-diversity.org/en/additional-files/Gender-Sensitive Indicators for Media EN.pdf>)에서 확인할 것.

제8조 - 인식 제고에 대한 지표 예시			
장애인 권리 존중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			
속성/지표	고정관념, 편견, 유해한 관행 근절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심 고취	장애인의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
	<p>8.12 장애인의 권리 존중을 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와 관련하여 법률, 규칙,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 대표 단체를 포함한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협의 프로세스.⁵⁶</p> <p>8.13 장애인 묘사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중 조사 및 판결이 내려진 비율, 민원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비율, 정부 및 의무 이행자가 민원사항을 개선조치한 비율 (각 메커니즘 유형별 구분)</p>		
	<p>8.14 사법, 행정, 법집행 영역의 직원들의 장애혐오범죄, 유해한 관행 및 장애 고정관념 근절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비율.</p> <p>8.15 신고, 수사 및 유죄 선고를 받은 혐오범죄 및 혐오발언 사건의 수와 비율(해당할 경우 피해자의 성별, 연령, 장애별 구분).</p> <p>8.16 신고, 수사, 기소된 유해 행위 사건의 비율과 유죄 선고로 이어진 사건의 비율(피해자의 성별, 연령, 장애별로 구분).</p>	8.17 장애인의 권리가 포함된 인권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비율(일반 프로그램 또는 장애특정프로그램 별로 구분)	
결과지표	<p>8.18 지난 12개월 동안 국제인권법(SDG 10.3.1)에서 금지하는 차별 사유로 인해 개인적으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받았다고 응답한 인구의 비율(성별, 연령, 장애별로 구분)</p> <p>8.19 적대행위(bullying), 체벌, 괴롭힘(harrassment), 폭력, 성차별 및 학대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성별, 연령, 장애, (유네스코 지표에 따른) 교육기관 유형별(공립/사립, 초등/중등/고등/직업학교))</p>		
	8.20 일반 인구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장애 유형별로 구분). ⁵⁷	8.21 뉴스 및 시사 콘텐츠에서 뉴스 앵커, 대변인, 전문가, '일반' 시민(인터뷰)로 등장하는 미디어 속 장애인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 장애 유형별로 구분).	

⁵⁶ 이 지표는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 입법 및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타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포함)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협의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 정보와 조건을 제한하거나, 장애인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등록 단체와 미등록 단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 조기 참여와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참여자의 참여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⁵⁷ 해당 사항은 '사회적 거리 척도("Social Distance Scale")'에 기반한 설문조사와 같은 특정 인식 조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몰도바의 차별 예방 및 철폐와 평등 보장에 관한 위원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및 유엔개발계획(UNDP)의 "몰도바 공화국의 평등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2015)를 참조할 것.

제9조 – 접근성에 관한 지표 예시 *			
물리적 환경, 교통, 서비스, 정보 및 통신, 시스템 및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접근권을 갖는다.			
속성/지표	도로 및 교통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건물, 실내외 시설 및 서비스	ICT, 전자 서비스 및 긴급 서비스를 포함한 정보 통신 및 기타 서비스
구조지표	9.1 도시와 농촌 모두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물리적 환경, 교통, 서비스, ICT를 포함한 정보 및 통신,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의 제정. ⁵⁸		
	9.2 항공, 철도, 도로 및 수상 여객 운송에 관한 법률에는 의무적인 접근성 표준이 포함되어 있을 것	9.3 허가 요건을 포함한 건축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대중에게 공개되는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에 대한 의무적인 접근성 표준이 포함되어 있을 것. (지표 20.7)	9.4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대중 매체와 인터넷 등 일반 대중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 행위자 모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접근성에 대한 의무 표준을 수립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⁵⁹ (지표 21.1.2) 9.5 대피 계획 및 대피소 등 긴급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률에 의무적인 접근성 표준이 포함되어 있을 것. 9.6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보 및 통신을 규제하는 법률은 공공 부문 웹사이트 및 앱에 대한 완전한 접근과 대안 형식의 정부 정보 제공을 보장할 것.
	9.7 접근성에 대한 기존의 모든 장벽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가 접근성 전략 및 계획의 존재 여부. ⁶⁰		

⁵⁸ 최소한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접근성 표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 시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의 적용;
- 분야별 기술 표준 준수 의무;
- 접근성 표준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력 있는 제재 조치의 가용성;
- 접근성 표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독립 기관의 설립;
- 접근성 정의 상 보조기술 및 장치, 사람 또는 동물의 보조 포함;
- 모든 공공 조달, 보조금 및 기타 자금 지원에서 접근성 표준의 준수;
- 모든 접근성 관련 이니셔티브에서 장애인 대표 단체와 긴밀히 협의할 의무;
- 기기의 접근성 개조, 적절한 보조 기술·기기 및 차량의 수출입에 대한 세금 면제, 보조 기기, 통신 기기의 구매 또는 주택 개조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접근성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 직업 관련 교육 커리큘럼 상 접근성 및 유니버설 디자인 모듈의 포함.

⁵⁹ 이 지표는 예를 들어 통신법, 방송법, 관련 규정, 인터넷, 디지털 기술, (통신 중계 서비스 및 이동 전화를 포함한) 전화에 대한 접근성 관련 조항을 참조한다. "소셜 미디어"에는 웹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ITU-T H Series Supplement 17](#) | ISO/IEC 가이드 71: 표준에서 접근성을 다루기 위한 가이드 및 [ITU-T F.790: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통신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볼 것.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tu.int/en/ITU-T/accessibility/Pages/default.aspx> 참조.

⁶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장애인 대표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고려하여 교통 수단, 건물 및 ICT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모든 설계의 승인을 관리하는 장애물 없는(배리어프리) 접근을 위한 의무 기술 표준의 채택;
- 물리적 환경 및 교통수단, 건물 및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과 서비스, ICT 기술의 접근성 장벽을 파악하기 위해 초기 및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대표 단체의 긴밀하고 일관된 참여 하에 공공 자금이 장벽 형성에 기여했는지 또는 장벽 제거에 사용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 - 접근성에 관한 지표 예시 *

물리적 환경, 교통, 서비스, 정보 및 통신, 시스템 및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접근권을 갖는다.

속성/지표	도로 및 교통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건물, 실내외 시설 및 서비스	ICT, 전자 서비스 및 긴급 서비스를 포함한 정보 통신 및 기타 서비스
과정지표	<p>9.8 교통수단 종류(예: 버스, 기차, 전차, 지하철, 택시 등) 및 서비스 종류(예: 공공 서비스/민간 서비스)별로 분리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 단위의 수와 비율.⁶¹</p> <p>9.9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장애인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 및 보장하기 위한 조치.⁶²</p>	<p>9.10 접근성 표준을 충족하는 기존 공공/정부 건물 및 시설의 수와 비율.</p> <p>9.11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는 신축 건물의 수와 비율.</p>	<p>9.12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는 정부 웹사이트 및 앱의 비율(지표 21.15)</p> <p>9.13 수어 통역, 오디오 설명, 자막, 기타 접근성 관련 기능 및 수단이 포함된 TV 방송 송출 비율 및 송출 시간의 비율 (미디어 소유권(민간/공공), 콘텐츠 유형(뉴스/기타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포함), 제공된 접근성 기능별 구분).⁶³</p> <p>9.14 '주문형' 또는 비선형 서비스(예: VOD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중 수어 통역, 음성 설명, 자막 및 기타 접근성 관련 기능 및 수단을 포함하는 콘텐츠의 비율 (미디어 소유권(민간/공공) 및 제공되는 접근성 기능별 구분).</p> <p>9.15 공공 기관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발행한 보고서의 수 (형식 유형별로 집계하고, 공공 기관이 발행한 전체 보고서 중 해당 보고서의 비율 집계). (지표 21.16).</p>

⁶¹ 교통 서비스 시스템을 규제하는 법률에 따라 다른 분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⁶² 보조 교통수단 서비스(준대중교통수단, paratransit), 장애인의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보조금 또는 수당 등 다양한 조치가 제공될 수 있다.

⁶³ 자막, 수어 및 오디오 설명과 같은 접근성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을 설명하는 ITU-T 권고안 H.702를 참조할 것.

제9조 - 접근성에 관한 지표 예시 *			
물리적 환경, 교통, 서비스, 정보 및 통신, 시스템 및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접근권을 갖는다.			
속성/지표	도로 및 교통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건물, 실내외 시설 및 서비스	ICT, 전자 서비스 및 긴급 서비스를 포함한 정보 통신 및 기타 서비스
	<p>9.16 긴급 프로토콜, 절차, 서비스 및 시설과 관련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 대표 단체의 참여를 요구하는 정부 시설,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감사의 실시.</p> <p>9.17 유니버설 디자인 및 접근성 표준을 제시하고, 재화 및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기능과 디자인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공공 조달 지침의 채택.⁶⁴</p> <p>9.18 엔지니어, 건축가, 도시 계획가, 운송 사업자, 웹 디자이너, 공공 서비스 제공자, 미디어 사업자, 공공 조달 담당자 등 유니버설 디자인 및 접근성 표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의 수와 비율.</p> <p>9.19 대중에게 공개되는 모든 서비스에 관해 접근성을 증진하고, 관련 전문가, 제조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의 유니버설 디자인 및 접근성 표준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며, 접근성과 관련된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알리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활동.</p> <p>9.20 건축 환경, 교통, 정보 및 통신의 접근성과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및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 대표 단체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협의 프로세스.⁶⁵</p> <p>9.21 장애인 접근성 관련 민원 중 조사 및 판결이 내려진 비율, 민원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비율, 정부 및 의무 이행자가 이를 이행한 비율(각 메커니즘 유형별로 구분).</p>		
결과지표	9.22 성별, 연령별, 장애인별 세분화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구 비율(SDG 11.2.1).	9.23 성별, 연령별, 장애인별로 세분화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도시 건축 면적의 평균 비율(SDG 11.7.1). 9.24 국가 및 지역 수도의 정부 건물을 포함하여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공공 건물에 대한 접근을 보고한 장애인의 비율.	9.25 연령, 성별, 장애별로 세분화된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SDG 지표 17.8.1). 9.26 대체 의사소통 수단을 통한 긴급 서비스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한 장애인의 비율(성별, 연령, 장애 유형별 구분). 9.27 공식적인 상호작용에서 대체 의사소통 수단 ⁶⁶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애인의 비율(사용된 공공 서비스 유형, 성별, 연령 및 장애 유형별 구분)

* 접근성에 관한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호 (CRPD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2) 참조.

⁶⁴ 가이드라인은 다음을 요구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접근성 명세 사항이 포함된 입찰 공고 및 입찰 조달 계획 수립.
- 평가 기준 상의 접근성 관련 명세 사항.
- 제품 및 서비스에 접근성 기능 여부를 명시하는 공급 계약서.

장애인은 조달 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법인 또는 공급업체의 조달 담당자로서 조달 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⁶⁵ 이 지표는 CRPD 제4조 제3항 및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7호(General Comment no. 7)에 의거하여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 입법 및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타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포함)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협의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 정보와 조건을 제한하거나, 장애인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등록 단체와 미등록 단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 조기 참여와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참여자의 참여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⁶⁶ 수어, 점자, 음성-텍스트 변환, 읽기 쉬운 문서(Easy-to-Read), 실시간 자막 등이 있다.

제10조 - 장애인의 생명권에 관한 지표 예시

생명권

속성/지표

자의적인 생명 박탈 금지

조기사망 및 외인사 방지
(열악한 건강 관리 및 영양, 생활 환경, 긴급 상황, 자살, '조력 사망'과
관련)

사형

구조지표	<p>10.1 장애와 관련된 살인 사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제재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⁶⁷</p> <p>10.2 장애인에 대한 살인 및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계획 채택.⁶⁸</p> <p>10.3 모든 구금 장소와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는 장소(예: 교도소, 정신병원, 거주시설 등)에서 장애인 사망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하며 가해자를 제재하기 위한 국가 정책/계획 채택.</p>	<p>10.4 장애인, 그중 특히 여성, 아동, 고령 장애인이 보편적 의료 보장에 대한 접근성⁶⁹, 응급 치료 접근성 등 양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⁷⁰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 정책/계획의 존재 여부(지표 25.3)</p> <p>10.5 연명 치료와 관련된 의사 결정 시 관련 지원의 알림 및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요건.⁷¹</p> <p>10.6 포괄적인 국가 재난 대비책 채택⁷² (지표 11.6)</p> <p>10.7 자살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 채택(다음 조치들을 포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유지 지원 보장; - 동료 지원 및 상담을 포함하여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을 식별하고 지원하며, 장애를 이유로 하는 직간접적 차별 또는 강압적인 개입을 초래하는 위험 평가를 금지할 것; 	<p>10.10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선택의정서 국가 비준.</p> <p>10.11 국가 내 (장애인을 포함하여) 사형제를 폐지하는 입법 조치.</p>
------	--	--	--

⁶⁷ 특히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범죄는 장애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박탈하는 행위로서 명시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⁶⁸ 이러한 정책/계획은 장애 여성과 소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폭력, 특히 장애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영아 살해, 마녀사냥과 관련된 공격을 포함하여 '자비로운 살인', '명예살인'을 다뤄야 한다.

⁶⁹ 필수 의료 서비스 패키지부터 의료 재정 개혁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의료 보장의 구현에는 건강 관련 재활 및 치료, 보조 기기 및 기술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필요로 할 수 있는 모든 의료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⁷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
-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의 장애인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의 인정;
-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의 주류 보건 및 예방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 일반 의료 서비스 내의 특정 서비스: 조기 식별 및 적절한 조기 개입 (유아 장애 선별 검사 및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언어 치료, 수어 의사소통, 유아기 자극 등 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 보조 기구 및 이동 장치 제공 등 포함).
- 추가 손상(impairments)을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서비스;
- 성 및 재생산 건강, HIV/AIDS, 청소년 및 노인 건강,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건강 영역을 포함함. 정신 건강 서비스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서비스와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위한 장애 특정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당사자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동료 지원, 위기 지원, 심리 치료 및 상담(트라우마 상담 포함) 등 기존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대안을 포함해야 한다.

⁷¹ 연명치료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 대리 의사 결정 금지는 계속되어야 하며, 지원 의사 결정이 선호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고 관련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당사자가 의사와 선호도를 표현하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후,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도에 대한 최선의 해석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CRPD 위원회 일반논평 제1호([General Comment no 1](#))(CRPD/C/GC/1)).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기준은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대신, 당사자가 무엇을 원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이전에 드러낸 선호도, 가치, 태도, 말과 행동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A/HRC/37/56](#), 문단 31).

⁷² 이러한 계획은 다음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경고 시스템 및 대피 프로토콜;
-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쉼터, 위생, 식량 배급, 물에 대한 접근, 의복, 보건 및 재활 서비스, 교육, 생계 창출, 가족 재결합;
-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폭력예방을 위한 구체적 조치;
- 실시간 지원 및 보조 기기 및 기술 지원;
- 특히 장애를 가진 여성, 아동, 노인과 관련된 구체적 조치.

		- 강압적 개입으로부터의 자유 보장. 10.8 해당되는 경우, 자발적 연명치료중단("조력 사망")은 장애인을 포괄하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보장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의료 전문가가 당사자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명시적이고 명확한 결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⁷³	
	10.9 사망을 적시에 신고하고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의무화하는 사망 등록 제도의 시행		
과정지표	10.12 장애인과 그 가족, 일반 대중, 경찰, 공무원, 사회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살인이나 폭력, 장애인에 대한 연명치료의 제한, 거부 또는 철회를 유발하거나 장애인의 삶이 질이 낮거나 가치가 낮다는 태도를 강화하는 부정적인 고정관념, 신념 및 신화의 근절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생명권과 존엄한 삶을 위한 기본 조건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활동. 10.13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법, 절차적 편의 보장(합리적 조정) 의무, 대체 의사소통 수단 및 방식을 포함한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등 CRPD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법부 구성원, 법조계 구성원 및 법 집행 공무원의 수와 비율. (지표 13.14) 10.14 접근성 관련 조치를 포함한 구금 환경 개선을 위해 할당된 예산 (지표 14.21). 10.15 효과적인 조사 수행 의무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생명권과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 대표 단체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협의 절차. ⁷⁴ 10.16 장애 차별과 관련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생명권에 대한 민원 중 조사 및 판결이 내려진 비율, 민원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비율, 정부 및 의무 이행자(예: 민간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결정을 준수한 비율 (각 메커니즘 유형별로 세분화)	10.17 성별, 연령(임신 및 출산 여부 포함), 장애별로 구분한 사형수의 수. 10.18 사형에 직면한 피고인 중 변호인 또는 법적 조력에 접근할 수 있는 비율(연령, 성별, 장애별로 세분화) 10.19 성별,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된, 사형 선고를 받은 기결수 중 상급 법원을 통해 형을 다시 심사할 권리를 행사한 사람의 비율	
결과지표	10.20 인구 10만 명당 고의 살인의 피해자 수 (성별, 연령별(SDG 지표 16.1.1), 장애별 세분화). 10.21 피해자의 성별, 연령, 장애 여부에 따라 세분화된 자의적 생명 박탈 및 사망 위협 관련 보고된 사례 10.22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노동조합원, 인권 옹호자에 대해 발생한 살해, 납치, 강제	10.23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실종자 및 이재민의 수(SDGs 지표 1.5.1) (연령, 성별 및 장애별로 세분화) 10.24 분쟁 상황, 분쟁 이후 및 긴급 상황에서의 보고된 사망 사례(성별, 연령, 장애별 세분화) 10.25 성별,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된 자살률 .	10.2 사형 선고가 감형된 비율(기결수의 연령, 성별, 장애별로 세분화) 10.29 사형집행건수(성별, 연령, 장애별 세분화).

⁷³ 이를 위해 다음이 보장되어야 한다:

- 장애를 이유로 하는 신청의 승인을 금지하는 등 장애인의 생명권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장애인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확보, 모든 형태의 대리 의사 결정 금지, 모든 형태의 압력과 부당한 영향력 방지, CRPD 제12조에 따른 지원 의사 결정에 대한 접근성 보장;
-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 지원 및 서비스(완화 치료, 재택 간호, 동료 지원 포함)의 제공;
- 각 신청을 기록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임종 의료 지원 개입, 관련 절차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등의 책임 메커니즘.

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43/41](#), 문단 68-70 참조.

⁷⁴ 이 지표는 CRPD 제4조 제3항 및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7호([General Comment no. 7](#))에 의거하여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 입법 및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타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포함)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협의의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 정보와 조건을 제한하거나, 장애인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등록 단체와 미등록 단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 조기 참여와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참여자의 참여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실종, 자의적 구금, 고문의 확인된 사례 수(SDG 지표 16.10.1) (성별, 연령, 장애별 세분화).	10.26 해당되는 경우, 자발적 연명치료중단("조력 사망")으로 인한 사망자 수(성별, 연령 및 장애별 세분화)	
	10.27 구금 및 수용시설에서 보고된 장애인 사망 건수, 장애 관련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보고된 장애인의 사망 건수 및 이들 사건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 비율 (연령, 성별, 장애, 장소 및 조사 결과 확인된 사망 원인별로 세분화) ⁷⁵		

⁷⁵ 조사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 서비스 제공 거부, 의료 과실, 강압적이고 제한적인 관행, CRPD 제15조 및 제17조의 지표에 정의된 고문 또는 기타 학대에 해당하는 기타 관행 등이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

제11조 - 위험 상황 및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에 대한 지표 예시			
무력 충돌,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 및 자연재해 발생 등 위험 상황에서의 보호 및 안전 확보			
속성/ 지표	예방 및 대비	구조 및 대응	복구, 재건 및 화해
구조지표	<p>11.1 위험 및 긴급 상황에서의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국제 인권, 인도주의, 난민법 및 환경 조약의 비준과 국제적 약속⁷⁶의 채택/지지.</p> <p>11.2 기후 관련 위험을 포함한 위험 상황 및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에서의 서비스 계획 및 제공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예방 및 대비, 구조, 복구, 재건 및 화해의 모든 단계에서 환경, 통신,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p> <p>11.3 해당되는 경우, 국내 또는 국제 분쟁과 관련된 협약, 법률 및 정책은 피해자, 난민, 국내 실향민 또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분쟁 대응, 복구, 재건 및 화해에 관한 조항 및 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있어 변화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p> <p>11.4 인도주의적 필요 평가, 관련 모니터링 프로세스, 위험 및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 기후 관련 위험 및 재난 위험 감소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⁷⁷에 장애인의 포함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요건의 채택.</p> <p>11.5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수집된 모든 개인 마이크로데이터⁷⁸는 성별,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⁷⁹</p>	<p>11.6(지표10.6) 다음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국가 재난 대비 계획의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경고 시스템 및 대피 프로토콜;⁸⁰ -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쉼터, 식량 및 의복 분배, 위생, 식수 접근성, 보건 및 재활 서비스, 교육, 생계 대책, 가족 재결합; - 폭력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 실시간 지원, 보조 장치 및 기술 지원; -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여성, 어린이, 노인, 기타 장애인 및 특히 원주민 장애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 	<p>11.7 인도주의적 위기 이후와 재난 이후 복구 및 재건을 위한 포괄적인 국가 계획의 채택하고, 포괄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하며 접근 가능한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및 환경을 위한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 접근법을 이행할 것.⁸¹</p>
과정지표	<p>11.8 기본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 중 대피 계획을 포함한 비상 대비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한 기관의 비율.</p> <p>11.9 모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비상사태 인식 및 대비 캠페인 및 자료의 비율.</p> <p>11.10 포괄적 대피 및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시민 보호·구조·구급 요원, 인도주의 활동가, 치안유지군 구성원의 비율.</p>	<p>11.12 정책 및 프로그램(예: 식량 지원, 가족 추적 및 재결합, 생계, WASH 프로그램 및 개입, 심리사회적 지원)의 혜택을 받은 장애인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 장애 및 조치의 종류(주류 또는 장애별)에 따라 세분화).</p>	

⁷⁶ 예를 들어, [인도주의 활동에 장애인을 포함하기 위한 헌장\(2016\)](#), [인류애를 위한 의제, 2015~2030년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2015\)](#),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기반한 [파리협정\(2015\)](#), [2018년 글로벌 장애 서밋에서](#) 약속한 사항 등의 국제적 약속이 있다.

⁷⁷ 국제 협력 기관, 양자 간 원조 기관 및 민간 단체와 함께 수행한 활동을 포함한다.

⁷⁸ 위기 시 사상자 수,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 착취, 학대, 인신매매의 피해자/생존자, 지원, 서비스, 시설, 이들에 대한 접근상의 장벽에 관해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과 장애인 가구의 수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젠더 기반 폭력 정보 관리 시스템, 아동 보호 관리 시스템, 국가 보고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모든 정보 관리 시스템상의 세분화가 필요하다(정보 관리는 인도주의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을 말함.)

⁷⁹ [인도주의 활동에 장애인을 포함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회 가이드라인](#), 5장 데이터 및 정보 관리를 참조.

⁸⁰ 여기에는 현재 장애 아동과 성인이 구금되어 있거나 거주하는 시설 및 기관의 경고 시스템과 대피 프로토콜이 포함되어야 한다.

⁸¹ 교육, 건강, 주택, 식수 및 위생, 사회 보호, 근로 및 고용, 정치 참여, 사법 접근성 및 폭력의 예방 및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임.

제11조 - 위험 상황 및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에 대한 지표 예시			
무력 충돌,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 및 자연재해 발생 등 위험 상황에서의 보호 및 안전 확보			
속성/ 지표	예방 및 대비	구조 및 대응	복구, 재건 및 화해
	11.11 장애인을 포함한 예방 및 대비 조치의 설계와 실행에 할당된 예산 비율 및 발생액 ⁸²	11.13 대피공간에서 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 수와 전체 수혜자 대비 이들의 비율(성별, 연령,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 11.14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할당된 구조 및 긴급 지원 지출 비율. 11.15 성폭력 및 기타 형태의 폭력 생존자 중 적절한 의료적, 심리사회적, 법률적 서비스를 받은 이들의 비율(성별, 연령, 장애별 세분화). 11.16 장기적인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역량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⁸³ 의 혜택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	11.17 접근 가능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며 장애인들을 포괄하는 분쟁/비상사태/재난 이후의 해결 및 복구와 관련된 책임 메커니즘의 수와 비율 ⁸⁴ . 11.18 포괄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하며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복구, 재건 및 화해의 맥락에서 프로그램,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지출의 비율.
	11.19 긴급 상황에서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 그리고 계획, 대비, 대응, 복구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포함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개입하는 인도주의적 서비스 담당하는 조직, 기관,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횟수 ⁸⁵ 11.20 모든 인도주의 및 비상 계획, 대응 및 복구 관련 이니셔티브 및 조정과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이행, 모니터링에 장애인, 특히 난민 및 국내 실향민 캠프 내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대표 집단을 통한 참여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협의 절차. ⁸⁶ 11.21 조정 메커니즘 내에서 인도주의적 대비,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 11.22 분쟁, 분쟁 이후, 또는 긴급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력,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기타 장애 아동 및 성인에 대한 차별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중 조사 및 판결이 내려진 비율, 민원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비율, 정부 및 의무 이행자가 이를 준수한 비율(각각 메커니즘 유형별 세분화).		
결과지표	11.23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실종자 및 이재민 수(SDG 지표 1.5.1), 성별,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 11.24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율과 비교한 장애인 원조 수혜자 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별 비율. 11.25 난민 및 국내 실향민 인구 중 장애인 비율과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율을 성별, 연령별, 장애별로 비교한 수치입니다.		

⁸² 이는 예를 들어 협의의 프로세스 개최, 시설, 장비, 서비스 및 통신이 보편적으로 설계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자원이 포함되며, 국제 개발 및 협력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와 같은 외부 자원을 포함한 모든 자금 출처를 고려해야 한다.

⁸³ 여기에는 속성 교육 프로그램, 직업 훈련, 기타 공식 및 비공식 학습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⁸⁴ 사법적 메커니즘 또는 관습적/비공식적 메커니즘

⁸⁵ 군 및 민간 평화 유지 요원, 비상 관리자, 응급 구조대원, 조정 메커니즘 인력 및 기타 현장 근무자를 모두 포함.

⁸⁶ 이 지표는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 입법 및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타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포함)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협의의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 정보와 조건을 제한하거나, 장애인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등록 단체와 미등록 단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 조기 참여와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참여자의 참여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11조 - 위험 상황 및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에 대한 지표 예시			
무력 충돌,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 및 자연재해 발생 등 위험 상황에서의 보호 및 안전 확보			
속성/ 지표	예방 및 대비	구조 및 대응	복구, 재건 및 화해
	11.26 자연재해 또는 인도주의적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품위 있는 주택 ⁸⁷)을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의 비율과 이들이 전체 수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성별, 연령, 장애, 지리적 위치, 비상사태의 성격에 따라 구분).		

⁸⁷ 유엔난민기구 난민 수용소 웹사이트(<https://www.unhcr.org/refugee-housing-unit.html>)를 참조.

제12조 -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에 관한 지표 예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권리			
속성/지표	보편적 법적 능력*	지원 의사 결정**	지원 제공에 대한 안전장치
구조지표	<p>12.1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의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관계를 창설, 변경 및 종료할 수 있는 능력의 인정; -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의 법적 능력과 권리 행사를 간섭으로부터 보호; - 모든 형태의 대리 의사 결정의 폐지;⁸⁸ - 공공 및 민간 행위자가 개인의 법적 능력 행사를 항상 존중할 것에 대한 요구;⁸⁹ - 실제 또는 지각된 장애를 이유로 개인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거나 의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법률 또는 관행에 대해 이를 철회 및 시정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의 제공. <p>12.2 법률 또는 규정 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없어야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또는 지각된 장애를 근거로 하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제한하는 조항;⁹⁰ - 모든 권리와 관련하여, 실제 또는 지각된 장애를 근거로 하는 법적 능력 향유 및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⁹¹ 	<p>12.3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의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의사 결정 방식의 인정 및 지원 의사 결정이 개인의 자율성, 의지, 선호도를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 - 공식 및 비공식적 지원 제도가 이용 및 접근 가능하며, 적절하고, 다양한 지원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지원을 요청하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 담당자 및 지원 방식의 인정; - 공식 절차에 있어, 지원 담당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만일 개인의 의사 및 선호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담당자의 행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수립;⁹² - 사전지시서(advance directive)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중단되는 시점에 대한 당사자의 정의를 포함하여 지원 및 의사 결정에 대한 사전 계획;⁹³ - 지원 관계를 거부/변경할 권리의 보장; - 이해 충돌, 부당한 영향력, 지원 약정의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한 지원 약정 위반에 대한 구제책 제공,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정기적 보고 및 평가를 통해 개인의 권리, 자율성, 의지,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 지원 보장; -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지원의 유형과 범위를 결정할 시의 '최선의 이익' 개념 폐지; - 법적 능력 행사가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접근성 및 합리적 조정 의무 이행의 보장;⁹⁴ -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도에 대한 해석 허용⁹⁵ 	

⁸⁸ 정신 능력 평가와 관련해 이루어진 대리 의사 결정을 포함함.

⁸⁹ 정신적 고통이 있는 상황을 포함함.

⁹⁰ 완전 또는 한정 후견, 금치산, 그외 후견 관련 제도(curatorship, conservatorship) 및 기타 대리 의사 결정 제도를 포함함.

⁹¹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권리에는 결혼할 권리, 가족에 대한 권리, 부모의 권리, 성적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 투표권, 선거권 및 공직에 입후보할 권리, 의료 및 재활 서비스에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하거나 철회할 권리, 사법에 접근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소유하거나 상속할 권리, 은행 대출, 모기지 및 기타 형태의 금융 신용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포함하여 자신의 재정 문제를 통제할 권리 등이 포함됨. 예컨대 다음을 통해 그러한 제한이 이루어짐:

- 장애인을 위한 법적 능력 또는 특정 권리의 완전한 향유 및 행사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는 경우 및/또는

- 장애인의 법적 능력 또는 특정 권리 행사에 불균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애 중립적인 대응을 만드는 행위.

⁹² 개인이 공식적으로 선택한 지원인에 대한 법적 인정이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해야 하며, 국가는 특히 고립되는 경우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원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창출을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제삼자가 지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지원인이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제삼자가 지원인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한다. CRPD 위원회 [일반논평 제1호](#), 문단29 참조.

⁹³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1호](#) 문단 17 참조.

⁹⁴ 예컨대 법적 절차, 건강 관리 및 금융 거래의 경우;

⁹⁵ 비언어적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함.

제12조 -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에 관한 지표 예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권리			
속성/지표	보편적 법적 능력*	지원 의사 결정**	지원 제공에 대한 안전장치
	- 법적 능력 회복을 위한다는 목적 등을 이유로 장애인의 사법 접근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조항.		
	12.4 성별, 연령, 장애, 거주지 ⁹⁶ , 지리적 위치, 이주 지위, 소수민족/원주민 배경 등에 따라 세분화된 방식으로 법적 능력 제한자 및 회복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 요건. 12.5 장애인의 법적 능력과 의사 결정 지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대학 및 기타 교육 기관의) 법 교육 상의 필수 과목.		
과정지표	12.6 법적 능력 회복을 위한 절차에 있어 절차적 및 연령에 적합한 합리적 조정(편의제공) 요청 건수 및 이를 승인하고 제공한 비율. 12.7 법적 능력이 제한되는 장애인 ⁹⁷ 중 공공 기관으로부터 법적 능력이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장애인의 수 및 비율.	12.8 공식 및 비공식 지원 약정, 개인의 의사와 선호도에 따른 지원의 변경/종료, 지원을 거부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지원 의사 결정에 대한 품질 표준의 채택. ⁹⁸ 12.9 장애인의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지원 의사 결정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 및 지출. ⁹⁹ 12.10 다양한 장애 집단 및 구성원의 요구를 탐색, 정의, 충족하기 위한 연구 및 개발 ¹⁰⁰ 을 수행하며,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해당 인구 및 대표 단체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할 것. 12.11 광범위한 개인 중심 지원을 제공하는 기능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수(지원의 유형과 강도에 따라 세분화)와 그 수혜자의 수 ¹⁰¹ (성별, 연령, 장애, 거주지 ¹⁰² 및 지리적 위치별로 세분화) 12.12 사전 계획을 포함하여 개인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는 장애인 지원 의사 결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의 수. 12.13 본인의 의사와 선호에 따라 사전 계획을 세운 사람의 수(성별, 연령, 장애 및 사전 계획에 포함된 사항별로 세분화) ¹⁰³ 12.14 모니터링 과정에서 장애인 대표 집단을 포함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지원 조치의 모니터링을 위한 메커니즘 및 절차의 존재.	
	12.15 장애인, 공증인, 판사 및 법원 직원, 의료 서비스 제공자, 금융 서비스 제공자, 기타 법적 능력 행사에 관여하는 주체(지지자, 가족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권리 및 지원 의사 결정을 요청할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활동 ¹⁰⁴ .		

⁹⁶ 시설, 지역사회, 가정 내에 거주하는 경우 등.

⁹⁷ 완전 또는 한정 후견, 사법적 금지, 후견 관련 제도(curatorship, conservatorship) 및 기타 대리 의사 결정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⁹⁸ 품질 표준은 지원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됨.

⁹⁹ 다양한 장애 집단과 구성원의 요구를 당사자의 관점에서 적절하고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다양한 지원 의사 결정 체계를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단체에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함.

¹⁰⁰ 의사 결정 및 동료 지원 네트워크에서의 공식적, 비공식적 형태의 지원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장애인 연구자 및 장애인 단체 포함)를 포함함.

¹⁰¹ 지원의 유형과 강도, 연령, 성별, 장애 유형, 시설 내를 포함한 수혜자의 지리적 위치 등을 기준으로 함.

¹⁰² 시설, 지역사회, 가정 내에 거주하는 경우 등.

¹⁰³ 예를 들어, 사전지시서에는 미래의 정서적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그러한 특정 상황에서 자신을 지원할 사람을 지정하는 방법, 개인적 문제나 유산 또는 재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지침이 포함될 수 있다(CRPD 위원회 [일반논평 제1호](#), 문단17, [A/HRC/37/56](#), 문단 32참조

¹⁰⁴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활동에는 ▲고난의 상황을 포함하여 언제나 의사 결정을 존중받을 권리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 지원 의사 결정 전략, 학대에 대한 안전장치,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보장을 포함한 법적 능력에 대한 차별 금지 ▲가족 및 지역사회 환경에서의 비공식적 대리 의사 결정 또는 강압적 개입의 예방 및 제거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에 관한 지표 예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권리			
속성/지표	보편적 법적 능력*	지원 의사 결정**	지원 제공에 대한 안전장치
	12.16 장애인의 법적 능력과 지원 의사결정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판사, 공증인 및 기타 법률 전문가의 수와 비율(직업별로 세분화). 12.17 법 앞에서의 동등한 인정과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지원 의사 결정 및 보호장치와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의 대표 단체를 포함한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협의 프로세스. ¹⁰⁵ 12.18 법률상 또는 실무상 법적 능력 행사에 대한 제한 또는 기타 CRPD 제12조 위반과 관련된 민원 중 조사 및 판결이 이루어진 비율, 민원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비율, 정부 및 의무 부담자(예: 사립학교)가 결정을 준수한 비율(각각 메커니즘 유형별로 세분화).		
결과지표	12.19 성별,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된, 공식적으로 법적 능력을 박탈당한 장애인 수(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¹⁰⁶ 12.20 성별,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된, 완전한 법적 능력을 회복한 장애인의 수. 12.21 성별, 연령, 장애별, 지원 유형 및 기간별로 세분화된, 의사결정을 위해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사람의 수와 그중 지원을 받은 비율 12.22 성별,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된, 지원 의사 결정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고된 장애인의 수와 비율.		

*보편적 법적 능력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누리고 또한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CRPD 위원회 일반논평 제1호](#),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37/56](#), 문단13-22 참조.

**'지원'은 다양한 유형과 강도의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 조치를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이다. 이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개인의 선택에 대응하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한 개인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여러 가지 지원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지원 조치는 특정 유형의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능력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지원인 선정 (예: 동료 지원, 자기 옹호 지원), 장애인이 법적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및 접근성과 관련된 조치, 사전 계획(예: 사전지시서), 비언어적 형태 및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비관습적 의사소통 방법의 개발 및 인정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 및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A/HRC/34/58](#) 참조

¹⁰⁵ 이 지표는 CRPD 제4조 제3항 및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7호([General Comment no. 7](#))에 의거하여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 입법 및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타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포함)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협의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 정보와 조건을 제한하거나, 장애인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등록 단체와 미등록 단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 조기 참여와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참여자의 참여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¹⁰⁶ 완전후견, 한정후견, 금치산, 그외 후견 관련 제도(curatorship, conservatorship) 및 기타 대리 의사 결정 제도를 포함함

제13조 - 장애인의 사법 접근에 관한 지표 예시		
사법에 접근할 권리*		
속성/ 지표	사법 제도에 있어서 동등한 접근과 평등	장애인의 사법 시스템 참여
구조지표	13.1 사법 시스템의 구조/조직/행정 및 절차, 민사 및 형사 부문에 걸쳐 장애인을 포함하는 사법 시스템에 관한 법률의 제정. ¹⁰⁷ 13.2 헌법, 법률 또는 규칙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사법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사법 시스템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것. ¹⁰⁸ 13.3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실질적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지적 장애인과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사법절차에서 이탈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실질적 및 절차적 형사법의 제정. ¹⁰⁹	

¹⁰⁷* 자세한 지침은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의 주도로 개발된 [장애인의 사법 접근에 관한 국제 원칙 및 가이드라인](#) 참조.

이러한 법률에는 다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적, 성별, 연령에 적합한 조정(편의)의 제공.
- 장애인이 지원 의사 결정 제공 등을 통해 법적 능력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CRPD 제12조).
-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지표 5.1 및 5.6)에 따라 다양한 근거에 의한 복합적, 교차적 차별을 주장하는 청구서면 제출을 허용하는 조항과 장애 여성, 장애 아동, 원주민 장애인 등 소외될 위험이 높은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는 조항.
- 적절하고 비례적이며 효과적인 구제책과 제재를 보장하는 조항.
-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 절차에 참여하고 사법부 내에서 일할 수 있기 위한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과 지원의 제공.

¹⁰⁸ 법률 내 장애 등을 이유로 사법에 접근하거나 사법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가령 다음과 같은 거부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 CRPD 제12조에 위배되는 장애를 이유로 한 법적 지위 거부(법적 능력의 공식적 박탈 또는 제한 포함).
- 장애 및 관련 낙인(예: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적 능력의 상태 등)을 이유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으로 증언할 기회를 거부하는 행위.
- 현재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및 제19조에 위배되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보호자 또는 시설의 후견인이 의무적으로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요건들.
- 장애인이 법학부 또는 사법연수기관에 지원하거나 입학할 수 없고, 법조인이 되거나 판사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요건들.

¹⁰⁹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 "심신미약 항변", "귀책사유없음" 및 "형사 책임 없음"과 같은 법적 전제에 근거한 형사 절차의 회피는 협약 제13조에 위배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실질적 및 절차적 보장에서 배제하고,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이어진다(CRPD 제14조).

제13조 - 장애인의 사법 접근에 관한 지표 예시		
사법에 접근할 권리*		
속성/ 지표	사법 제도에 있어서 동등한 접근과 평등	장애인의 사법 시스템 참여
과정지표	<p>13.4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의 무료 법률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¹¹⁰</p> <p>13.5 연간 장애인의 법률 지원 및 무료 통역사 신청이 충족되는 비율(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p> <p>13.6 절차적, 그리고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조정(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¹¹¹</p> <p>13.7 체포된 사람이 혐의 통지를 (법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법적 또는 의무적 한도를 초과한 사례의 비율(장애별 세분화)</p> <p>13.8 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법원 시설, 법률 지원 센터, 경찰서 등의 수와 비율(지리적 위치별로 세분화).</p>	<p>13.9 사법 시스템 및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판사, 검사, 경찰, 직원 등의 직무에 장애인을 포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채택.</p> <p>13.10 사법 부문(사법부, 법 집행기관, 국가 법률 서비스 등)의 채용 과정에서, 그리고 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된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의 건수 및 그 제공 비율.</p>

¹¹⁰ 이와 관련하여 장애 여성, 장애 아동, 청각 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원주민 또는 소수 민족에 속하는 장애인에게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어 및 원주민/소수 민족 언어 통역 제공을 포함하여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¹¹¹ 요청이 있을 시, 절차적 조정은 "모든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선호에 근거해야 한다. 절차적 조정의 예로는 수어 통역 제공, 접근 가능한 형식의 법률 및 사법 정보 제공,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읽기 쉬운 문서 버전, 점자 및 원격 참여, 비디오 링크 증언, 보조 기술 제공, 활동 지원, 법정 장소 변경, 수어 통역사의 비공개 배심원 토론 참여 허용, 절차 마감일 및 기타 절차적 형식과 기간의 연장 또는 조정 등 참여를 위한 특정 요건을 수용하는 절차적 유연성이 있다(OHCHR, [A/HRC/37/25](#), 문단 24 참조).

제13조 - 장애인의 사법 접근에 관한 지표 예시		
사법에 접근할 권리*		
속성/ 지표	사법 제도에 있어서 동등한 접근과 평등	장애인의 사법 시스템 참여
	<p>13.11 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건축 환경, 교통 및 정보 통신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표준 채택 및 적용.¹¹²</p> <p>13.12 장애인의 법적 절차 참여를 위한 절차적, 그리고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조정(편의 제공) 요청의 건수 및 그 제공 비율(성별, 연령, 장애, 법분야/절차 유형(민사, 형사 등) 및 관련 당사자의 역할(원고, 피고, 증인, 배심원 등)별로 세분화).</p> <p>13.13 장애인¹¹³ 및 장애인의 친인척, 공무원, 일반 대중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지원, 피해자 지원, 이용 가능하고 효과적인 구제책 및 배상을 포함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활동.</p> <p>13.14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법, 모든 장애인의 보편적 법적 능력, 유해한 젠더 및 장애 고정관념과 편견의 근절, 절차적 조정(편의 제공) 의무, 대체 의사소통 수단 및 방식을 포함한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등 CRPD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법부 구성원, 법조계 구성원 및 법 집행 공무원의 수와 비율.</p> <p>13.15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과 관련된 법률, 규칙,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의 대표 단체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협의 프로세스.¹¹⁴</p> <p>13.16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 및 사법 시스템 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에 할당 및 지출된 예산 (해당 예산은 다음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 a) 장애인을 위한 법률 지원, b) 판사, 검사 등에 대한 교육, c) 장애인을 위한 법적 절차에 관한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p>	
결과지표	<p>13.17 수어를 포함하여 자신의 언어와 관련해 법원의 서비스와 법정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평가한 일반인 참석자의 비율(법원 설문조사)</p> <p>13.18 장애인이 사법 시스템에 제출한 민원의 건수, 조사 및 판결이 내려진 건수, 민원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비율, 정부 및 의무 이행자가 결정을 따른 비율(각각 메커니즘의 종류, 법률 영역/절차 유형(민사, 형사 등), 관련된 실제적 권리 및 부여된 구제책에 따라 세분화).</p> <p>13.19 전체 범죄 건수 중 사법 당국에 접수된 장애인 대상 범죄의 비율(피해자의 성별, 연령,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p> <p>13.20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와 비율을 다른 이들과 비교한 수치(성별, 연령, 장애 및 서비스 종류별로 세분화).</p>	<p>13.22 사법 시스템 및 관련 기관에서 판사, 검사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장애인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 장애, 사법부/사법시스템의 직위 및 분야별로 세분화).</p> <p>13.23 사법 시스템 및 관련 기관에서 간접 참여자(증인, 전문가 증인, 배심원 등)로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 장애, 사법부/사법시스템의 역할 종류 및 분야별로 세분화).</p>

¹¹² 여기에는 법원 및 심판소, 경찰서, 피해자 지원 서비스 및 센터, 읽기 쉬운 문서와 점자 및 접근 가능한 디지털 형식의 무료 제공, 수어 및 원주민/소수 언어를 포함하여 당사자와 참가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통역이 포함된다. 특히, 사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원 절차의 디지털화 및 기타 신기술 사용에 대한 현재의 추세는 장애인에게 새로운 장벽을 만들거나 연령에 맞는 절차적 조정 또는 필요한 절차의 유연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지리적 위치 및 거리,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측면에서 법원의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

¹¹³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인, 시설 거주자를 포함한 지적 장애인, 장애 여성, 장애 아동, 청각 장애인, 원주민 또는 소수 민족에 속하는 장애인 등 심각한 장벽에 직면한 사람.

¹¹⁴ 이 지표는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 입법 및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타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포함)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협의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 정보와 조건을 제한하거나, 장애인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등록 단체와 미등록 단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 조기 참여와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참여자의 참여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13조 - 장애인의 사법 접근에 관한 지표 예시		
사법에 접근할 권리*		
속성/ 지표	사법 제도에 있어서 동등한 접근과 평등	장애인의 사법 시스템 참여
	13.21 전체 수감자 대비 미결수 비율(SDG 지표 16.3.2) (성별,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	

제14조 -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에 대한 지표 예시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			
속성/ 지표	장애특정적 자유의 박탈:** 실제 또는 지각된 장애/손상을 이유로 하는 자유 박탈의 절대적 금지	비장애특정적 자유의 박탈: 형사 및 행정 구금	개인의 안전과 장애인 구금의 조건
구조지표	14.1 모든 장애인의 자유와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국가 헌법 및 법률. 14.2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 수에 대한 데이터를 성별, 연령, 장애, 구금 사유 및 구금 장소(예: 공공 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 거주시설, 교도소 등)별로 세분화하여 수집하도록 하는 법적 요건. ¹¹⁵ 14.3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마커를 설정하는 법적 요건. ¹¹⁶		

¹¹⁵ 자유 박탈에는 장애인의 가정 내 감금도 포함되는데(지표 14.4, 각주 iii 참조), 이는 교도소, 정신병원 등에서의 자유 박탈과 관련된 행정 자료와 비교했을 때 데이터 수집에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한다. 국가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을 생산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¹¹⁶ 특히 지출에 대한 마커는 다음 사항에 기여해야 한다:

- 장애특정적 자유 박탈에서 벗어난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에 할당된 예산과 시설(유지, 서비스 등)에 투자된 예산을 비교하여 자원 배분을 통한 장애인의 자유권 및 안전권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추적과 검증.
- 접근성 향상 및 합리적 조정(편의 제공)을 위한 기금의 명시를 포함하여, 장애인을 포괄하는 비장애특정적 구금 시스템에 소요되는 금액의 매년 결정.

제14조 -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에 대한 지표 예시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

속성/ 지표	장애특정적 자유의 박탈:** 실제 또는 지각된 장애/손상을 이유로 하는 자유 박탈의 절대적 금지	비장애특정적 자유의 박탈: 형사 및 행정 구금	개인의 안전과 장애인 구금의 조건
	<p>14.4 헌법 및 법률상 실제 또는 지각된 장애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예: 돌봄, 치료, 자·타해 위험 등)와 결합하여, 또는 태도, 환경, 정보 및 통신 관련 장벽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직간접적 자유 박탈을 허용하는 조항이 일체 없을 것¹¹⁷.</p> <p>14.5 정신건강 입원 환경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실제 또는 지각된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의 즉각적인 퇴원(release)과 강제 치료를 포함한 제한적이고 감압적인 조치의 즉각적인 중단을 보장하기 위한 전환기적 입법, 정책 및 계획의 채택.</p>	<p>14.6 장애인을 포함하는 형사 및 교도소 시스템을 규정하는 법률(예: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구금 절차, 시설 및 서비스).</p> <p>14.7 모든 행정 구금 시스템(예: 이민 구금)이 장애인을 포함하고 성별과 연령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는 법률(예: 구금 시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절차, 시설 및 서비스)</p> <p>14.8 수감 방지를 위한 회복적 정의 메커니즘과 비구금적 조치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및 정책의 채택.</p>	<p>14.9 교도소 및 기타 구금 시설에 적용되는 필수 접근성 표준의 채택. (지표 15/17.10)</p> <p>14.10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에게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을 제공할 의무를 보장하는 법률 조항. (지표15/17.11)</p> <p>14.11 장애인을 포함하여 관련 당사자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 없는 격리, 의학적으로 명령된 모든 구속 방법(물리적, 화학적¹¹⁸ 및 기계적 등), 정신과 약물 또는 기타 개입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p>
과정지표	<p>14.12 정신과 입원 환경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의 수와 구금에서 벗어나 주택, 생계 수단 및 기타 형태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장애인의 비율¹¹⁹</p> <p>14.13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통합을 촉진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관련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관련 구금, 강제 약물 투여 및 기타 강제 개입을 포함하여 실제 또는 지각된 손상/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 박탈의</p>	<p>14.15 사법, 경찰, 교도소, 기타 유형의 구금시설 관련 직원 중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은 직원의 수와 비율(당사자의 자유 및 동의에 입각하지 않은 격리, 구속, 정신과 약물 투여 또는 기타 개입의 금지, 접근성, 장애인의 체포 심문 및 구금 시 정보 및 통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조정 의무 포함).</p> <p>14.16 교도소 및 기타 구금시설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의 수와 비율 (성별, 연령, 장애, 구금 사유¹²⁰, 구금시설 유형 및 지리적 위치별로 세분화)</p>	

¹¹⁷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제삼자의 승인을 포함하여 강제 시설화를 허용하는 민사, 행정, 사회 서비스 법률.
- 일반 건강 또는 특정 정신 건강 관련 법률에 따라 제삼자의 허가를 받아 기간과 목적에 관계없이 비자의적 입원 또는 치료를 허용하는 경우.
-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 또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유예하고 자유 박탈 및 강제 치료를 포함한 보안 조치를 적용하는 형사법 및 절차.
- 장애인의 가족에 의한 자택 감금을 허용하는 가족법 또는 관련 법률, 또는 가족이 성인 또는 아동의 시설 수용 또는 입원을 승인하거나 청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
- 지역사회 치료 명령(CTO) 또는 관찰 및 평가를 위해 개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보건, 정신 건강 또는 사회 서비스 직원 또는 공공 기관에 부여된 권한을 통해 발생하는 강제 치료와 같이 부과된 제도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임박한 개인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위협.

또한, 장애인, 즉 지적 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치매 및 자폐성 장애인에게 부정적이고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정형적 행동'을 범죄화하는 효과가 있는 조항은 차별금지 및 형법 원칙에 위배되므로 반드시 삭제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A/HRC/40/54](#), 단락 34 참조.

¹¹⁸ 화학적 구속에는 당사자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 없이 신경이완제를 투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¹¹⁹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에 관한 구제 및 절차에 관한 유엔 기본 원칙 및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20, [A/HRC/30/36](#), 단락126을 인용한 협약 제14조 단락24에 관한 장애인권리위원회 가이드라인 참조.

¹²⁰ '구금 사유'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미결 구금 상태(예: 재판 전 구금 상태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인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14조 -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에 대한 지표 예시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			
속성/ 지표	장애특정적 자유의 박탈:** 실제 또는 지각된 장애/손상을 이유로 하는 자유 박탈의 절대적 금지	비장애특정적 자유의 박탈: 형사 및 행정 구금	개인의 안전과 장애인 구금의 조건
	<p>절대적 금지에 대해 일반 대중과 보건 및 사회 서비스계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p> <p>14.14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 박탈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 중 조사 및 판결이 내려진 비율, 민원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비율, 정부 및 의무 이행자가 결정을 따른 비율(각각 메커니즘 유형별로 세분화).</p>	<p>14.17 형사 제도 또는 행정 구금 상태로 인해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이 즉각 무료 법률 지원을 받는 비율(성별, 연령, 장애, 구금 장소 및 지리적 위치별로 세분화)¹²¹.</p> <p>14.18 형사 제도 또는 행정 구금 상태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할당된 예산</p> <p>14.19 자유 박탈과 관련된 절차에서 장애인에게 절차적 및 연령에 적합한 조정(편의제공)이 요청되는 비율.</p>	<p>14.20 모든 구금 장소에서의 접근성 부족, 합리적 조정 거부, 고문 또는 모든 형태의 학대(격리, 강제 약물 투여 및 구속 포함)와 관련되어 장애인에 의해 또는 장애인을 대신하여 제기된 민원¹²² 중 조사 및 판결이 내려진 비율, 민원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비율, 정부 및 의무 이행자가 결정을 준수한 비율(각 메커니즘 유형별로 세분화).</p> <p>14.21 접근성 관련 조치를 포함한 구금 환경 개선을 위해 배정된 예산.</p>
	14.22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의 대표 단체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협의 절차. ¹²³		
결과지표	14.23 현재 실제 또는 지각된 손상/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의 수 (성별, 연령, 장애 유형, 기관/구금 장소 유형(예: 정신보건 기관, 사회적 돌봄 또는 거주시설, 지적 장애인 거주 시설 등) 및 시설화 또는 구금의 법적 근거별로 세분화). ¹²⁴	14.26 교도소 및 기타 구금시설에 수감된 (비장애특정적인) 자유 박탈자 수 및 그중 장애인의 비율(성별, 장애, 연령, 구금 사유, ¹²⁵ 구금시설 및 지역별로 세분화).	14.29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이 제공된 구금 장소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의 수와 비율(연령, 성별, 장애, 구금 사유 ¹²⁷ , 구금 시설 및 지역별로 세분화).

¹²¹ 형사 시스템에서의 법률 구조와 관련하여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의 법률 구조 접근에 관한 유엔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참조.

¹²² 여기에는 CRPD에 위배되는 장애특정적 자유 박탈하는 장소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와 기타 구금 장소(예: 교도소)가 모두 포함된다.

¹²³ 이 지표는 CRPD 제4조 제3항 및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7호([General Comment no. 7](#))에 의거하여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 입법 및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타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포함)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협의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 정보와 조건을 제한하거나, 장애인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등록 단체와 미등록 단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 조기 참여와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참여자의 참여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¹²⁴ 이러한 '구금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 손상/장애에 근거한 자유의 박탈과 전형적으로 여전히 이를 정당화하는 (따라서 CRPD 제14조에 위배되는) 조항을 내포하고 있는 법률의 각 논거들을 나타내는 위 각주 iii을 참조.

¹²⁵ '구금 사유'의 경우, 미결 구금 상태인 사람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¹²⁷ '구금 사유'의 경우, 미결 구금 상태(예: 재판 전 구금 상태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인 사람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제14조 -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에 대한 지표 예시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			
속성/ 지표	장애특정적 자유의 박탈:** 실제 또는 지각된 장애/손상을 이유로 하는 자유 박탈의 절대적 금지	비장애특정적 자유의 박탈: 형사 및 행정 구금	개인의 안전과 장애인 구금의 조건
	<p>14.24 실제 또는 지각된 손상/장애를 이유로 기소가 유예되어(예: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보안 조치 적용) <u>현재</u>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의 수(성별, 연령, 장애, 구금시설의 유형 및 장소별로 세분화).</p> <p>14.25 장애특정적 자유 박탈 상태로부터 풀려난 장애인의 수(성별, 연령, 장애, 구금 장소(예: 정신병원,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등)별로 세분화) 및 이들 중 주택, 생계 수단 및 기타 형태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은 장애인의 비율.</p>	<p>14.27 일반 유죄 판결을 대비 장애인의 유죄 판결률(연령, 성별, 장애, 범죄 유형, 법률 지원 또는 자신이 택한 변호사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¹²⁶</p> <p>14.28 항소 후 형이 감형되거나 유죄판결이 무효화된 사건의 비율(성별,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p>	

* CRPD 제14조에 대한 CRPD 위원회의 가이드라인, [2016년 격년 보고서 부속서 A/72/55](#) 참조.

** '장애특정적 자유의 박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40/54](#), 단락14-24 참조. 또한 아래 각주 iii 참조.

¹²⁶ 이 지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인구 중 장애인이 과대 대표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별의 원인(예: 법률 조력 부족, 의사소통 접근성 부족, 법적 절차 중 절차적 조정(편의 제공) 부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제15조 및 제17조 - 고문 및 부당한 대우로부터의 자유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 보호에 관한 지표 예시			
장애인이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			
속성/ 지표	비장애특정적 관행을 통한 고문, 부당한 대우 및 기타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침해 방지	비합의 치료 및 기타 장애특정적 관행을 통한 고문, 부당한 대우 및 기타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침해 방지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충족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 실험의 금지
구조지표	<p>15/17.1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OPCAT)에 대한 선택의정서 비준.</p> <p>15/17.2 고문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예방 메커니즘의 지정 또는 설립(OPCAT 제17조).</p> <p>15/17.3 고문, 부당한 대우, 비합의적 의학적, 과학적, 사회적 실험, 개입 또는 치료(비합의적 약물 투여 포함), 기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고 범죄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¹²⁸ (그러한 침해가 어디서 발생하든, 비례적인 제재와 함께 무료 법률 지원, 효과적인 구제책, 구제 및 배상(원상회복, 보상, 만족 및 재발 방지 보장 포함), 지역사회 내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재활 및 지원 서비스(요청 시 지원 의사 결정 포함)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것).</p> <p>15/17.4 가정, 학교, 탁아소 및 시설적 보호 환경 등 내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체벌, 행동 수정, 성장 둔화 치료, 화학적 또는 물리적 구속, 기타 침습적이고 불가역적 치료 및 개입을 금지하고 그로부터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법률.¹²⁹</p> <p>15/17.5 (지표25.6)¹³⁰ 다음을 반영한 법률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능력의 지위, 자유의 상태, 정신적 고통의 상황을 포함하여 모든 개인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치료에 대한 동의 및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항상 인정; -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를 포함하여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권 행사에 대한 차별의 금지; - 모든 건강 정보 및 동의서의 완전한 접근성 및 문화적으로 적절한 접근성 보장; <p>-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사전의료지시서, 위임장(powers of attorney) 및 기타 형태의 지원 의사 결정에 부합하게 의료 서비스 결정을 내릴 것 요구.¹³¹</p> <p>15/17.6 장애인¹³²을 보호하고 당사자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충족하지 않은 실험적이거나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약물 및 치료 방법의 사용을 포함한 의료 실험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¹³³.</p> <p>15/17.7 장애인의 자유 박탈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환경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를 연령, 성별, 장애 및 구금 사유별로 세분화하여 수집하고 집계하도록 하는 법적 요건.</p>		

¹²⁸ 법률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을 침해하는 일상화된 관행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다루어야 하며, 여기에는 장애 성인과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강압적 관행이 포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화학적 또는 기계적 구속, 그물 침대 사용, 고립, 격리, 독방 감금, 여성 생식기 절단, 강제 불임(화학적 및 외과적 거세 포함), 강제 낙태, 강제 피임, 전기 경련 요법, 비동의 약물 투여, 정신수술(psychosurgery), 실험적 수은 해독 치료, 자폐성 아동에 대한 가혹한 행동 수정 요법 및 감싸기(packaging) 기법, 뇌병변 아동을 위한 행동 교육, 성장이 제한된 아동을 위한 사지 연장술, 간성 장애인에 대한 교정 수술 등.

¹²⁹ 장애 아동과 관련된 이 지표의 맥락에서 "시설"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RPD 위원회, 제19조에 대한 [일반논평 5번](#), CRPD/C/GC/5, 단락 16(c) 발금형 참조. 또한, 효과성이 불확실하거나 논란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장애 아동이 그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치료 및 개입의 전체 목록이 포함된 제7조, 지표 7.4의 각주를 참조할 것.

¹³⁰ 또한 지표 25.7 참조.

¹³¹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의 건강 관리에 대해 논의하고 개별적인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구할 때 장애인이 선택한 지지자의 참여를 존중하면서 장애인을 직접 언급해야 한다. 사전의료지시서 및 위임장은 법적 능력의 행사로서 지원 조치로 인정되어야 한다.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증거(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당사자의 이전에 나타난 선호도, 가치관, 태도, 말과 행동에 대한 고려 포함)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도에 대한 최선의 해석을 결정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마련되어야 한다([A/HRC/37/56](#), 단락31). 이는 또한 이후 당사자의 의사 표현이나 의사 결정(지원 조치를 통해 얻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¹³²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과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¹³³ 여기에는 법적 후견인, 법원 또는 기타 대리 의사 결정권자가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 실험에 동의하거나(CRPD 제12조에 위배됨) 공공 심의 위원회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실험을 허용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제15조 및 제17조 - 고문 및 부당한 대우로부터의 자유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 보호에 관한 지표 예시			
장애인이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			
속성/ 지표	비장애특정적 관행을 통한 고문, 부당한 대우 및 기타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침해 방지	비합의 치료 및 기타 장애특정적 관행을 통한 고문, 부당한 대우 및 기타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침해 방지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충족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 실험의 금지
	<p>15/17.8 체포, 구금 및 수감된 사람에 대한 심문 규칙을 포함한 법 집행 공무원을 위한 행동 강령 채택 (이는 사법 접근에 대한 절차적 조정(편의 제공)의 의무와 구금 시 합리적 조정(편의 제공) 의무를 포함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 권리에 관한 지침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p> <p>15/17.9 독립 기관(예: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조사에 관한 규정 및 프로토콜 채택(여기에는 장애인의 자유 박탈 장소가 명시적으로 포함될 것).¹³⁴</p> <p>15/17.10 교도소 및 기타 구금 시설에 적용되는 의무 접근성 표준의 채택(지표 14.9)</p> <p>15/17.11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예: 장애인 수감자)에게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을 제공할 의무를 보장하는 법률 조항(지표 14.10).</p>	<p>15/17.12 장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과 의료 및 관련 개입 및 치료와 관련하여 장애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과 아동의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를 고려하는 법적 요건의 채택.¹³⁵ (지표 7.5)</p> <p>15/17.13 장애인, 특히 장애 여성과 소녀의 생식력 유지권을 포함한 성적 및 생식권 존중과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정서의 채택.</p>	<p>15/17.14 장애인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 없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실험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토콜 채택.</p>
과정지표	<p>15/17.15 절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실제 또는 지각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또는 이들에 의한 잠재적 폭력의 축소 등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비례성에 입각한 무력 사용, 체포, 구금, 심문 또는 처벌에 관한 행동 규칙 관련 교육을 받은 법 집행 공무원(경찰, 군인, 구금 관련 직원 포함)의 수와 비율.</p>	<p>15/17.16 보건진료원¹³⁶ 및 건강, 정신, 정신건강, 사회복지, 주거 서비스 종사자, 시설의 직원 중 장애인이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에 근거하여 치료를 받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에 따른 의사 결정을 위한 조정과 지원을 이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교육받은 사람의 수와 비율.</p>	
	<p>15/17.17 장애인과 그 가족, 일반 대중에게 장애인의 고문과 부당한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활동(비합의적 의료 개입이 금지된 관행이라는 인식 제고 포함).</p> <p>15/17.18 장애인의 자유 박탈이 발생하는 구금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수행 및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예방 메커니즘 또는 기타 독립 기관에 할당된 예산.</p> <p>15/17.19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이행을 포함하여 고문, 부당한 대우 및 비동의적 개입 방지와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의 대표 단체를 포함한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협의 절차¹³⁷.</p>		

¹³⁴ 여기에는 장애인의 자유가 박탈될 수 있는 정신과 입원실 또는 시설, 아동 및 성인 장애인 거주 시설(소규모 그룹홈 포함), 기도원, 고아원 및 기타 공공 또는 민간 시설 환경, 이주 구금소 등이 포함된다.

¹³⁵ 특히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고 침습적이거나 되돌릴 수 없는 치료 및 개입과 관련하여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신경 이완제를 포함한 항정신성 약물 투여, 실험적 수는 해독 치료, 성장 억제 요법, 살균, 전기 충격 투여 및 자폐아 패킹과 같은 행동 수정 요법, 뇌병변 아동을 위한 행동 교육, 성장 제한 아동을 위한 사지 연장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¹³⁶ 전통적인 치료사도 포함된다.

¹³⁷ 이 지표는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 입법 및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타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포함)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협의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제15조 및 제17조 - 고문 및 부당한 대우로부터의 자유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 보호에 관한 지표 예시			
장애인이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			
속성/ 지표	비장애특정적 관행을 통한 고문, 부당한 대우 및 기타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침해 방지	비합의 치료 및 기타 장애특정적 관행을 통한 고문, 부당한 대우 및 기타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침해 방지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충족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 실험의 금지
	15/17.20 고문, 부당한 대우, 비동의 치료, 기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 침해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 및 판결이 내려진 비율, 민원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비율, 정부 및 의무 이행자(예: 사립학교)가 그 결정을 준수한 비율 (각 메커니즘 유형별로 세분화).		
결과지표	15/17.21 구금 시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를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문 및 부당한 대우 신고 건수(성별, 연령, 장애, 위반의 맥락별로 세분화) ¹³⁸ . 15/17.22 연간 보상, 재활 및 지원을 받은 장애인 고문 또는 부당한 대우 피해자의 수와 비율. 15/17.23 지난 한 달 동안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체벌 및 심리적 공격을 경험한 1~17세 아동의 비율 (성별(SDG 지표 16.2.1) 및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	15/17.24 연간 보상, 재활 및 지원을 받은 강제 의료 실험 대상 장애인의 수와 비율.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 정보와 조건을 제한하거나, 장애인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등록 단체와 미등록 단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 조기 참여와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참여자의 참여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¹³⁸ "위반의 맥락"이란 위반이 이루어진 장소 및 시설적 맥락(예: 교도소, 정신의료기관으로의 비자의 입원, 거주시설, 민간 병원 등)을 의미한다.

제16조 - 폭력,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지표 예시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예방 및 보호, 구제 제공				
속성/지표	가정 폭력	공공 및 민간 시설 내 폭력	유해한 관행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 폭력 행위	인신매매
구조지표	<p>16.1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 학대 및 착취¹³⁹를 범죄화, 예방하며 그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을 포함하는 법률의 제정.</p> <p>16.2 법적 능력의 제한/부정, 피해자의 실제 또는 지각된 장애 및 제삼자에 의한 최선의 이익 결정에 근거한 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비동의적 행위에 대한 범죄화의 면책을 허용하는 법률 조항이 없어야 할 것.</p> <p>16.3 사적 및 공적 환경에서 여성, 아동, 노인 및 모든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별한 요구를 다루며, 장애인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과 함께 폭력, 학대 및 모든 형태의 착취를 예방, 탐지 및 근절하기 위한 국가 계획/정책의 채택¹⁴⁰.</p> <p>16.4 폭력, 학대 및 착취 피해자의 회복,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의 채택(보복으로부터의 보호와 쉼터 및 주거를 포함한 지원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장애인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함)¹⁴¹.</p> <p>16.5 장애인의 폭력, 학대 및 착취와 관련된 민원, 조사 및 유죄 판결에 대한 데이터를 성별, 연령, 장애 및 폭력, 학대 및 착취의 형태별로 세분화하여 수집하도록 하는 법적 요건.</p>			
	<p>16.6 강간과 강제결혼을 범죄화하고, 결혼을 전제로 한 비합의적 관행의 범죄화에 대한 모든 면책조항을 없애기 위한 법률의 제정.</p>	<p>16.7 시설 및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과 성인이 폭력, 학대, 착취, 방임 및 기타 위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¹⁴²</p> <p>16.8 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모든 공공 및 민간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의 수행 및 폭력 예방과 근절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의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립 기관의 임명.</p> <p>16.9 공공 및 민간 시설 내에서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대한, 이를 개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성과 존엄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장애에 근거한 차별로서의 법적 인정¹⁴³.</p>	<p>16.10 장애인에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유해한 관행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¹⁴⁴</p> <p>16.11 차별, 적대감, 폭력에 대한 선동과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과 보호 대상에 장애에 대한 명시적 포함.</p>	<p>16.12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인신매매¹⁴⁵ 및 신체 부위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조항.</p> <p>16.13 구걸을 포함한 인신매매와 착취를 예방하고 장애 아동 및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포괄하는 프로그램.</p>

¹³⁹강간, 가정 폭력,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인신매매, 아동 및 강제 결혼을 포함한 유해한 관행, 여성 생식기 절단, 마녀사냥식 비난/기소, 장애인 감금 및 은폐, 비합의적 정신과적 개입을 포함한 비동의의 치료, 기타 장애 관련 비합의적 의료 또는 사회적 개입, 강제 낙태, 강제 피임, 특정 대상 집단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및 성적 학대 등을 포함함: 장애를 가진 여성, 어린이, 노인, 모든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 문화적 소수자, 원주민, 특정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 등.

¹⁴⁰ 예: 가정, 학교, 기숙학교, 지역사회 환경, 사회 복지 시설(예: 고아원 및 거주시설), 의료시설(예: 정신 병원), 요양원, 기도원, 교도소, 작업 환경 등.

¹⁴¹ 여성, 어린이, 노인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¹⁴² '시설'에는 정신과 병동과 같은 일시적 또는 단기적 성격의 시설과 장기 시설이 모두 포함됨.

¹⁴³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을 누릴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표준 이하의 구금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도소 내 합리적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¹⁴⁴ 예를 들어, 아동 및 강제 결혼, 여성 생식기 절단, 마녀사냥식 비난/기소, 장애인 감금 및 은폐, 비합의적 정신과적 개입을 포함한 비동의의 치료, 강제 낙태, 강제 피임 등이 해당함. 유해한 관행의 [판단 기준은 유해한 관행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제31호\) 및 아동권리위원회\(제18호\) 공동 일반논평](#) (단락15~16)을 참조.

¹⁴⁵ 일반적인 지침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및 [유엔인신매매근절을위한글로벌이니셔티브](#), [인신매매근절 모델법](#)을 참조.

제16조 - 폭력,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지표 예시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예방 및 보호, 구제 제공				
속성/지표	가정 폭력	공공 및 민간 시설 내 폭력	유해한 관행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 폭력 행위	인신매매
과정지표	<p>16.14 도시/지역별 물리적 환경과 의사소통 측면에서 완전히 접근 가능한 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기타 숙박시설과 대피소의 비율.</p> <p>16.15 도시/지역별 물리적 환경과 의사소통 측면에서 접근 가능한 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 서비스 및 지원의 비율.</p> <p>16.16 폭력, 학대, 착취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핫라인과 신고 메커니즘의 운영.</p> <p>16.17 성별, 연령별, 장애 유형별 거주 지역 주변을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SDG 지표 16.1.4).</p> <p>16.18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착취, 학대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할당 및 지출된 (상당 및 서비스 모니터링을 포함한) 예산.</p> <p>16.19 법 집행 관련 및 형사 사법, 교육, 보건 서비스, 쉼터 및 기타 센터, 핫라인, 신고 메커니즘 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 서비스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 중 장애에 기반한 차별 및 비합의적, 제한적, 강압적 관행에 대한 대처를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폭력, 학대, 착취를 예방, 식별, 조사, 제재할 의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의 수와 비율.¹⁴⁶</p> <p>16.20 장애인의 폭력, 학대, 착취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활동(부정적 고정관념에 맞서고, 학교 커리큘럼 및 인권 교육 프로그램 통합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권리, 보호, 지원 및 서비스, 사법 접근 지원을 교육하기 위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제공 포함).¹⁴⁷</p> <p>16.21 장애인에 대한 학대나 폭력이 허용되거나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p> <p>16.22 폭력, 학대 및 착취와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 대표 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특히 장애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협의 절차¹⁴⁸</p> <p>16.23 성별,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된 지난 12개월 동안 폭력 피해 사실을 관할 당국이나 기타 공식적으로 인정된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신고한 폭력 피해자의 비율(SDG 지표 16.3.1).</p> <p>16.24 장애인에 대한 폭력, 학대 및 착취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 중 조사 및 판결이 내려진 비율, 민원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비율, 정부 및 의무 이행자가 결정을 준수한 비율(각각 메커니즘 유형별로 세분화).</p>			
결과지표	<p>16.25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심리적 또는 성적 폭력을 당한 인구의 성별, 연령별, 장애별 비율(SDG 지표 16.1.3).</p> <p>16.26 18세까지 성폭력을 경험한 18~29세 젊은 여성과 남성의 성별, 연령별, 장애별 비율(SDG 지표 16.2.3).</p>			

¹⁴⁶ 교육에는 다음 사항도 포함되어야 함:

- 장애에 대한 인권에 기반한 접근 방식;
- 대체적 수단 및 의사소통 방식을 포함한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

¹⁴⁷ 특히 여성, 어린이 및 노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지적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백색증 환자를 위함.

¹⁴⁸ 이 지표는 CRPD 제4조 제3항 및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7호([General Comment no. 7](#))에 의거하여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 입법 및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타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포함)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협의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 정보와 조건을 제한하거나, 장애인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등록 단체와 미등록 단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 조기 참여와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참여자의 참여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16조 - 폭력,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지표 예시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예방 및 보호, 구제 제공				
속성/지표	가정 폭력	공공 및 민간 시설 내 폭력	유해한 관행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 폭력 행위	인신매매
	16.27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또는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또는 정신적 폭력, 학대 또는 착취를 당한 적이 있는 여성과 소녀의 비율 (폭력, 학대 및 착취의 형태, 연령(SDG 지표 5.2.1. 기준) 및 장애별로 세분화).	16.28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가 아닌 사람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여성과 소녀의 비율 (연령, 발생 장소(SDG 지표 5.2.2 기준) 및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	16.32 15세와 18세 이전에 결혼했거나 결합(union) 관계에 있는 여성의 장애별 비율(SDG 지표 5.3.1 기준). 16.33 여성 생식기 절단을 경험한 소녀 및 여성의 연령별(SDG 지표 5.3.2 기준) 및 장애별 비율	16.34 인구 10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수(성별, 연령, 착취 형태(SDG 지표 16.2.2), 장애별로 세분화)
		16.29 공공 및 민간 시설 내 착취, 폭력, 학대 및 착취 신고 건수 ¹⁴⁹ (성별,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		
	16.30 지난 한 달 동안 돌봄제공자 ¹⁵⁰ 로부터 신체적 체벌 및 심리적 공격을 경험한 1~17세 아동의 성별 및 장애별 비율(SDG 지표 16.2.1).			
	16.31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또는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비율(SDG 지표 11.7.2) (성별, 연령, 장애 및 발생 장소별로)			

¹⁴⁹ 학교, 보건, 사회복지 교도소 및 기타 시설을 포함.

¹⁵⁰ 여기에는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의 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음.

제 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에 관한 예시 지표 목록

다른 이들과 동등한 이주, 거주지 선택, 국적의 자유

속성/ 지표	이주의 자유	국적의 자유	신분확인 및 등록	출생등록
구조지표	<p>18.1 다음을 보장하는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출입국 할 권리 - 출입국 기준 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국가 출입국 절차 등 관련 절차 내 합리적인 제공 	<p>18.2 다음을 보장하는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국적 박탈 금지 보장 - 장애인의 귀화 절차 접근 보장 - 모든 귀화 및 시민권 획득 절차 및 소송에서 합리적 조정 제공 	<p>18.3 다음을 보장하는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취득을 위한 접근가능하고 저렴한 절차에 대한 장애인 권리 보장¹⁵¹ - 신분증 취득을 위한 모든 절차에서 합리적 조정 제공 	<p>18.4 다음을 보장하는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직후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무료 등록 보장¹⁵² - 관할 지역 전체에서 보편적이고 시의성 있는 무료 출생등록 보장을 위한 예산 배정 - 성별, 장애 지리적 위치 및 부모의 이민 여부별 세분화 출생 등록 데이터 마련 국가 의무 명시
	<p>18.5 이동의 자유, 국적 취득 및 신분증 획득 권리를 장애를 이유로 제한하거나 이주민 서비스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 부존재</p>			

¹⁵¹ 특히 소수 민족 장애인, 지방 거주 장애인, 시설 거주 장애인에 중점

¹⁵² 농촌 지역과 난민 캠프에서 태어난 어린이를 포함합니다.

제 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에 관한 예시 지표 목록				
다른 이들과 동등한 이주, 거주지 선택, 국적의 자유				
속성/ 지표	이주의 자유	국적의 자유	신분확인 및 등록	출생등록
과정지표	18.6 거주, 귀화/시민권, 신분증 취득과 관련된 절차 내 장애인의 합리적 조정 요청 건수와 승인 비율 18.7 장애인 인권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가 및 직원 ¹⁵³ 의 수와 비율 ¹⁵⁴ 18.8 이주, 귀화/시민권, 신분증 취득 및 관련 절차에 관한 법률, 정책 및 절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 대표 단체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진행된 협의 절차 ¹⁵⁵ 존재 여부 18.9 성별, 연령, 장애, 민족, 출신 국가 및 (해당되는 경우) 거부 사유별로 입국, 출국, 거주, 국적, 망명 또는 난민 지위 또는 신분증 발급을 허가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의 수와 비율 18.10 장애 및/또는 관련된 장애인을 이유로 한 차별에 따른 이주 자유의 권리 또는 국적 취득의 권리 관련 민원 중 조사 및 판결 비율, 민원 중 민원 제기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비율, 정부 및/또는 의무 이행자가 이를 준수한 비율(각 단계별로 세분화 조사)			18.11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등록 시설 ¹⁵⁶ 을 갖춘 모든 도시 및 농촌 지자체와 난민 캠프의 인구 비율 18.12 민사 등록 기관 및 공공기관 ¹⁵⁷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출생 등록 ¹⁵⁸ 에 대한 교육 및 해당 교육을 받은 직원의 비율. 18.13 가족, 지역사회, 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대표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¹⁵⁹ 를 통해 전국적인 출생등록 캠페인 기획 여부
결과지표	18.14 영주권을 신청하고 허가받은 모든 연간 인원 중 성별, 연령, 장애 유형별 장애인 수와 비율	18.15 국적을 신청하고 허가받은 모든 연간 인원 중 성별, 연령별, 장애 유형별 장애인 수와 비율 18.16 전체 무국적자 중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와 비율	18.17 적어도 하나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의 성별, 연령별, 장애 유무별 통계(비율)	18.18 출생이 등록된 사람의 성별, 연령별, 장애 유무별 통계(비율) 18.19 민간 기관에 출생 등록을 한 5세 미만 아동의 연령(SDG 지표 16.9.1), 성별, 장애, 거주지, 가구 자산 5분위별 비율

¹⁵³ 특히 법 집행 및 국경 통제 요원, 사법부, 사회 및 보건 서비스, 난민 및 이주자(이재민) 수용소 내 인권활동가

¹⁵⁴ 교육에는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법, 차별 금지 및 합리적인 조정 제공, 유니버설 디자인, 접근성(접근 가능한 정보 및 의사소통 지원 포함) 등이 포함됨

¹⁵⁵ 이 지표는 장애인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제 관련 의사결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한 공공 기관(당국)의 구체적인 활동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제 4조 3항 및 일반논평 7호에 따름. 장애인 참여 보장 방식에는 간담회, 기술 발표회, 온라인 설문조사, 법안 및 정책안에 대한 의견 요청 등이 포함됨. 이를 위해 당사국은 다음의 의무가 있음;

- 협의 절차의 투명성, 접근 가능성 확인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보장
- 장애인 단체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때 정보 제공을 보류하거나 조건을 달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
- 등록 및 미등록 단체 모두 포함
- 조기에 지속적인 참여 보장
- 참여를 위한 비용 부담

¹⁵⁶ 등록 시설은 병원, 학교 등에 위치하거나 이동/파견 기관일 수 있음. 이 지표는 지역사회에서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¹⁵⁷ 지방 자치 단체, 사회 서비스, 교육 및 보건 담당자를 포함하여 국가 수준에서 지역 수준까지 포괄

¹⁵⁸ 특히 농촌 지역과 선주민 커뮤니티

¹⁵⁹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고 포함되며 현지 및 토착 언어로 제공되어야 함

제19조 -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예시 지표 목록

자립 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속성/ 지표	자립 생활 선택 *	지원 서비스 **	주류 서비스의 접근성 및 반응성 ***
-----------	------------	-----------	--------------------------

구조지표	<p>19.1 장애 및 필요한 지원 수준에 관계없이 개인의 자율성과 삶에 대한 자기 통제를 보장하고, 독립적으로 살고 지역사회에 포함될 장애인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법제정¹⁶⁰</p> <p>19.2 다양한 주거 선택지 및 지원 서비스 가용성을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timeframe) 설정, 측정 가능한 목표를 가진 종합적인 국가 전략 및/또는 계획의 채택.¹⁶¹</p> <p>19.2.1 기준, 기간 및 측정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 및 성인의 탈시설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및/또는 계획의 채택¹⁶²</p> <p>19.2.2 장애인의 강제 시설 수용에 따른 신규 입소 금지.</p> <p>19.2.3 장애아동 시설 신규 입소 금지(지표 23.8).</p> <p>19.3 주택소유권(소유권, 공식 임대 계약, 비공식 합의 등)의 모든 형태에서 타인과 동등한 기반에서 장애인을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하고 주택의 지속적인 제공과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는 법률 조항.</p> <p>19.4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 생활을 하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자신의 생활환경 선택권을 행사하고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수와 비율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 요건.</p> <p>19.5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 및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접근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한 표시자를 설정하기 위한 법적 요건¹⁶³</p>	<p>19.12 모든 주요 서비스¹⁶⁴ (공공 행정 및 공공 시설 포함)가 통일된 국가 접근성 표준을 채택하고 보장.</p> <p>19.13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주류 서비스의 보편적 디자인, 접근성, 문화적 적합성 및 반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 또는 계획의 채택¹⁶⁵</p>
------	---	--

¹⁶⁰ 개인의 생활과 가족 생활과 모델에 대한 문화적 접근의 다양성은 장애인들이 그들의 삶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를 행사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¹⁶¹ 그러한 계획은 다음을 예측해야 한다.

- 다양한 장애인 인구의 접근성과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수용 의무에서 벗어난 주택의 가용성. 주택 선택권은 특정 지역사회에서 일반 대중에게 관습적으로 적용되는 소유, 임대, 공동 주택, 기타 형태의 주택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개별 자율성을 존중하는 요건을 충족함(지표 19.8 참조).
- 개인에 의해 설계되거나 또는 자유롭게 수용되어 개인의 요구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한 지원(가정에서의 지원, 활동 참여 등)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개인 지원을 포함한 지원 서비스의 가용성(지표 19.9 참조)

¹⁶² 탈시설은 개인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지원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어떤 유형의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취업 지원을 포함하여 과도기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의 제공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지와 선호를 탐색하고 주장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적 지지와 지원은 시설화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고, 개인에 민감한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제공되어야 하며,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따라 개인의 필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탈시설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정신 건강 서비스 또는 기타 장애별 형태의 자유 박탈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구속된 모든 개인에 대한 구금 즉시 중단
- • 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의 과도기적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
- • 국가 또는 민간 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건설, 개발 또는 투자하는 것을 절대 금지
- • 거주인의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긴급한 조치를 제외하고 기존 시설의 개조 금지
- • 시설 케어에서 지역사회 기반 케어로 예산 자원의 재분배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적절하고 적합한 자원 할당

¹⁶⁴ "주류 서비스"에는 무엇보다도 공공행정(예: 지자체, 시민등록 등), 보건, 교육, 은행 등이 포함되며, "접근성 표준"은 접근성의 다양한 자원(구축된 환경, 교통, 정보, 통신)을 다루어야 한다.

¹⁶⁵ 이러한 전략이나 계획은 다음을 고려하고 포함해야 한다.

- 서비스에 접근할 때 구축된 환경, 교통, 정보, 통신의 접근성, 그 중에서도 경사, 점자 표기, 읽기 쉬운 언어, 수화, 자막, 대안, 증강 통신 모드, 촉각 의사소통을 포함
- 주류 서비스 이용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직면한 장벽을 제거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p>19.6.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조항 없음¹⁶⁶</p> <p>19.7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의무적 접근성 기준 채택</p> <p>19.8 장애인이 접근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 수준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보장하는 국내 전략 또는 계획의 수립. 이러한 주거 옵션에는 지역사회 전역에 장애인이 접근가능하고 개조 가능한 공간이 포함됨¹⁶⁷</p>	<p>19.9 "개인 주도/이용자 주도"의 인적 지원¹⁶⁸, 정신적 고통, 심리적 위기 및 기타 간헐적 또는 긴급한 필요에 맞춘 지원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 수당 및 서비스의 접근, 가용성 및 다양성을 개발하고 증가시킬 계획보조 장치와 기술 제공하는 국가 전략 또는 계획 수립¹⁶⁹</p> <p>19.10 가정 지원, 동료 상담, 재정 지원 또는 장애인, 친척 및/또는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다른 사람을 위한 수당을 포함한 지원 조치의 가용성.</p> <p>19.11 장애아동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 통합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가족 기반 대안 양육을 지원하는 적절하고 충분한 사회 서비스를 포함하여 가족 분리를 방지하기 위한 장애아동 가족 지원 정책 마련¹⁷⁰</p>	
--	--	--	--

¹⁶³여기에는,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의 개발, 제공, 탈시설 과정 비용 등 할당된 자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¹⁶⁶예를 들어, CRPD 제12조에 반하는 법적 능력의 제한 또는 거부, 정신 건강 상태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자유 박탈을 허용하는 법률, 특정 치료의 준수에 따른 사회적 주택의 접근을 조건화하는 법률 또는 규정 등

¹⁶⁷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사회적 주택단위의 직접적 귀속
- 장애인이 주택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적절한 대출의 촉진, 활성화

¹⁶⁸ 지원 서비스, 특히 개인 지원 서비스는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서비스 통제

-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이 통제해야 한다(예: 다양한 제공자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계약하거나 고용주 역할을 하는 것; 자체 서비스 설계, 서비스 제공 업체 요청과 지시).
- 개인 지원인(personal assistant)은 개인 지원을 받은 개인에 의해 모집, 교육 및 감독되어야 한다.
- 개인 지원을 받은 개인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동의 없이 개인 지원인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
- 개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환경과 선호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인의 통제 정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개인 지원에 대한 통제권은 지원되는 의사결정을 통해 행사될 수 있다.

자금할당/수당

- 개인 지원인 고용에 대한 자금 배분은 개인화된 기준을 따라야 하며, 개인의 생활 환경과 관련된 개인의 필요성 평가, 양질의 고용을 위한 국가 입법과 규정뿐만 아니라 인권 표준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 자격 기준은 의료 기준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 맞춤형 서비스로 인해 예산 절감 및/또는 개인 비용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
- 기금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지불할 목적으로 장애인에 의해 통제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재정 지원 혜택은 장애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수당 및 현금 이전 제도는 소득 부족으로 인한 소득 지원과 장애 관련 비용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및 이전 가능성 분산(Decentralisation of service provision and transferability)

- 서비스 제공의 분산은 위에 열거된 기준의 품질이나 준수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 지원 수당 및 서비스는 주 및 지역 조직의 다른 지역 내에서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

¹⁶⁹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A/HRC/34/58](#), 제14항, 보조기기 및 기술에 관한 자료표도 참조한다.

제19조 -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예시 지표 목록

자립 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속성/ 지표	자립 생활 선택 *	지원 서비스 **	주류 서비스의 접근성 및 반응성 ***
과정지표	19.14 지역사회 내 공공/사회적 주택을 제공받은 장애인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 장애, 거주지역 분리통계.		19.24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주요 서비스에 대한 직원 교육, 특히 비차별과 합리적인 편의시설의 제공에 관한 개인의 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¹⁷¹ 19.25 주요 서비스 내의 접근성 및 합리적인 편의 제공에 할당된 예산. 19.26 국가 접근성 표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주요 서비스 제공업체의 비율
	19.15 주택 정책과 시장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직원과 민간행위자 중 장애인의 권리와 이 권리의 관련 측면에 대해 훈련된 사람의 수와 비율 ¹⁷²	19.17 장애인 1,000명당 공인된 전문가를 포함한 가정 내, 주거 및 기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 (일상 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개인 지원(personal assistance),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심리사회적 위기상황에 따른 비공식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포함) 인증 유형 및 직업 유형에 따른 분리 통계.	
	19.16 (그룹홈, 지적장애인 주택 등을 포함한 시설 등)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제약하는 기관의 연간 폐쇄 개수 및 비율-시설 유형 및 지역 분리 통계 ¹⁷³		
	19.18 탈시설 지원 프로그램(경제적 지원 포함)에 접근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수와 비율. 19.19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전환을 지원하도록 훈련된 직원의 수와 비율. 19.20 신청가능한 지원 서비스 및 주택에 관한 정보 배포 등 일반 대중 및 장애인 가족/친족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활동. 19.21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할당된 예산,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1인당 지출 금액과 비교한 1인당 평균 지출 금액.		

- 접근성 보장을 위한 민간 지출을 보상하기 위한 세금 또는 기타 면제(예: 출입구, 복도, 생활공간 화장실 등의 개조)

¹⁷⁰ 정책은 명시적으로 아동 시설화를 끝내고 가족 보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우선 순위를 매길 것을 요구해야 한다; 직계가족이 아이를 돌볼 수 없다면, 더 넓은 가족 내의 대체 돌봄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는 가족 기반 환경 내 친족 관계 및 위탁 가정 케어를 포함한 양질의 가족 기반 돌봄이다.

¹⁷¹ 훈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인권 기반 장애 접근
- 대안적 의사소통 수단 및 방식을 포함한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

¹⁷²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사회적 주택 공공정책 입안자
- 부동산 중개인과 중개인을 대표하는 사무실, 연맹 또는 협회
- 세입자 협회
- 공증인 협회.

¹⁷³ (어떤 종류의) 시설이 효과적으로 폐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그곳에 시설화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이주했는지를 동시에 확인하고 효과적인 폐쇄를 측정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름 바꾸기"와 "재사용"(예: 특수교육을 위한 기숙학교로 재지정되는 장애인 거주시설)를 식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제19조 -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예시 지표 목록

자립 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속성/ 지표	자립 생활 선택 *	지원 서비스 **	주류 서비스의 접근성 및 반응성 ***
	19.22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 단체 등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협의 체계 ¹⁷⁴ 19.23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조사 및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접수율; 민원인에게 유리하게 결정된 사례 비율; 후자의 사례 중 정부 또는 담당기관이 권고를 준수한 비율; 각 비율 모두 민원 접수 체계별 분리 통계 도출.		
결과지표	19.27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주택 보유 형태별 장애 성인 세대주의 수 및 비율 ¹⁷⁵ 19.28 사회적 주택 거주자 수(성별, 연령 및 장애 유형별 분리 통계). 19.29 현재 생활환경에서 자신의 독립성 수준에 대한 만족을 보고하는 성별, 연령 및 장애 유형별 장애 성인의 수와 비율 ¹⁷⁶	19.30 개인 지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기반 지원 서비스 신청자 중 서비스 수급 장애인의 수 및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지원 서비스별 분리 통계 19.31 자립 생활을 위한 보조 기기 및 기술 지원 신청자 중 서비스 수급 장애인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19.35 전체 서비스 사용자 중 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 및 성별, 연령, 장애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구분된 비율 ¹⁷⁷ 19.36 주요 서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게 부여된 합리적인 편의에 대한 요청 수와 비율. 19.37 서비스 유형, 성별, 연령 및 장애별로 세분화된 주요

¹⁷⁴ 이 지표는 CRPD의 4.3조 및 CRPD 위원회의 제7호에 따라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자문 회의, 전문적인 브리핑, 온라인 자문 조사, 입법 초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 요구, 기타 참여 방법 등 공공 당국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검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반드시

- 협의의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접근가능하도록 보장
- 적절하고 접근하기 쉬운 정보의 제공을 보장
- 정보, 조건을 주지 않거나 장애인 단체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음
- 등록된 조직과 등록되지 않은 조직을 모두 포함
- 조기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
- 참가자의 관련 비용을 충당

¹⁷⁵ 특히 선택과 자원이 제한된 경우, 선택의 주관적 요소를 평가하는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개념은 장애인이 주거 시설의 선택권을 행사하고 독립적으로 살고 있음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대리 지표로 간주할 수 있다.

¹⁷⁶ 장애 및/또는 삶의 질 조사 또는 연구 내 자체 보고 평가는 선택 행사 범위에 대한 대리 표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생활 배치 및 독립성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¹⁷⁷ xvii 이 지표는 다양한 주류 서비스(예: 정부 행정 서비스, 교육, 건강 등)에 걸친 정보를 수집하며 장애인에 대한 포괄성과 대응성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장애 사용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장애인의 비율과 유사한 결과(나이, 지리적 범위 등을 고려)는 특정 서비스의 포괄적인 제공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규 교육 제도에 장애인의 등록률은 포함을 나타낸다. 단, 이는 범주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서비스의 특정 목적이나 특성을 포함한 몇 가지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예: 장애인이 재활 서비스 사용자 중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

제19조 -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예시 지표 목록

자립 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속성/ 지표	자립 생활 선택 *	지원 서비스 **	주류 서비스의 접근성 및 반응성 ***
	<p>19.32 성별, 연령, 장애, 기관 및 시설 유형별로 분류된 현재 시설(예: 정신병동 입원 시설, 지적 장애인 거주지 등 대규모 시설에서 그룹홈)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 및 비율.</p> <p>19.33 시설에 수용된 전체 장애인 중 시설(예: 정신 입원 환자, 지적 장애인을 위한 거주지 등)을 떠나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취한 장애인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p> <p>19.34 탈시설 후 개인 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반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의 수와 비율.</p>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만족도.

*CRPD 위원회, 제19조 16항에 대한 일반 논평 5번 참조: "(c) 자립적 주거 형태: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내 통합은 모두 모든 유형의 거주시설 밖 생활환경을 가리킨다. 이는 단순히 특정 건물이나 환경에서의 거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특정 생활 형태와 주거 형태로 인하여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백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시설도, 5~8명이 사는 작은 그룹홈도, 심지어는 혼자 사는 집도 시설화의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자립적 주거 형태로 볼 수 없다. 시설화된 환경은 그 규모나 형태가 제각각 다르지만, 타인과 개인 지원인을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하고, 보조인을 선택할 권한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으며,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로부터 고립 및 분리되고, 일상의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며, 동거인을 선택할 수 없고,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관계없이 정해진 일과를 수행해야 하며, 특정 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활동을 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이 권위적이며, 주거 형태가 감독의 대상이 되고, 일반적으로 같은 환경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가 불균형하다는 본질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시설 환경도 장애인에게 어느 정도의 선택과 통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선택은 삶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며 시설의 분리적 성격을 바꾸지는 못한다. 따라서 탈시설화 정책을 위해서는 시설 환경 폐쇄 이상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크고 작은 아동 그룹홈은 특히 위험하다. 가족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족 같은" 시설도 결국은 시설이며, 가족의 보살핌은 대체하지 못한다.

**"지원 서비스"는 목적, 설계 및/또는 결과가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포함과 참여를 촉진하고 다른 사람과의 격리와 분리를 방지하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예: 일상 생활에 대한 개인 지원, 지원 서비스)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이다.

- 집 안팎의 서비스를 포함
- 고용, 교육, 정치, 문화 참여 등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
- '정신 건강 위기' 상황에 특별히 맞추어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고 고립과 격리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원을 포함
- 각 주의 문화적, 경제적, 지리적 특성에 따라 이름, 유형 또는 종류가 다를 수 있음
- 일련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아래 미주 ix 참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특별 보고관, A/HRC/34/58 참조

*** "주류 서비스"의 개념은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의미하며 CRPD 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및 시설" 및/또는 "일반 서비스(general services)"라고도 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기술,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영화관, 공원, 극장, 체육 시설"(CRPD 제19조에 대한 일반 논평 5번)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건강, 행정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보고 및/또는 모니터링에 이 속성에 따른 지표를 활용할 때, 접근성 표준을 채택하고 준수하기 위한 "일반 서비스" 전반의 계획과 조치의 존재 및 구현과 특정 경우에 필요한 합리적인 편의시설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제20조 - 장애인의 개인 이동에 관한 예시 지표 목록

개인의 이동성에 대한 권리			
속성/ 지표	보조 기술 및 서비스	차량 개조 및 사용	환경 및 교통 가용성 증대
구조지표	20.1 이동, 시각, 청각 및 의사소통, 기타 장치 및 개인이 선택하고 개인의 필요에 맞는 보조 기술 ¹⁷⁸ 에 대한 접근 보장을 포함하여 개인 이동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		20.7 건축 허가 요건을 포함하여 건축 계획 및 건설에 관한 법률에 대중에게 공개되는 물리적 환경 및 서비스에 대한 필수 접근성 표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표 9.3). 20.8 이동 보조기기, 장치, 보조 기술 및 생활 지원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승객으로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안 제정 ¹⁷⁹

¹⁷⁸여기에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는 모든 보조 기술 및 장치(예: 휠체어, 안경, 흰색 지팡이, 스마트폰)가 포함됩니다. [보조 장치 및 기술에 관한](#)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 보고관 정보 자료 ([A/HRC/34/58](#), paras 14, 80-81)를 참조하세요.

¹⁷⁹여기에는 유럽 연합과 같은 지역 통합 기구의 영역 내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국내 및 국제 운송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20조 - 장애인의 개인 이동에 관한 예시 지표 목록

개인의 이동성에 대한 권리			
속성/ 지표	보조 기술 및 서비스	차량 개조 및 사용	환경 및 교통 가용성 증대
	<p>20.2 저비용의 이동, 시각, 청각 및 의사소통 장치 및 보조 기술¹⁸¹에 대한 연구를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애인 이동에 대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전략 또는 정책 채택</p> <p>20.3 장애인이 이동, 시각, 청각 및 의사소통 장치와 보조 기술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규제적, 정책적 조치¹⁸²</p>	<p>20.4 장애인이 개조된 차량과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규제적, 정책적 조치¹⁸³</p> <p>20.5 장애인도 취득할 수 있고 차량 개조를 허용하는 운전 면허증 취득에 관한 법률, 규제 및 정책 조치¹⁸⁴</p> <p>20.6 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성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및 정책 조치¹⁸⁵</p>	<p>20.9 교통 서비스 관련 법률이나 규정 중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부존재¹⁸⁰</p>

¹⁸⁰승객 권리 및 교통 서비스에 대한 법률 및 규제 체계는 장애인을 포함해야 하며 장애에 따른 제한이나 이동 보조 장치, 장치, 보조 기술, 실시간 지원 등의 사용을 기반으로 한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¹⁸¹국가 전략이나 계획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특정 사회 보장 제도나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다음 영역을 다루어야 합니다.

- 장애인이 양질의 이동성, 시각, 청각 및 의사소통 장치, 보조 기술, 실시간 지원 및 중개자 형태, 훈련을 포함한 관련 서비스(각 개인의 요구 사항에 맞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단.
- 공공 보조금 및 기타 인센티브를 통해 장애인 이동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성, 시각, 의사소통 및 청각 장치와 보조 기술의 현지 생산 및 수리를 장려하고 장려합니다.
- 장애인에게 이동성과 기타 기술을 부여하기 위해 보조 기술을 사용하는 오리엔테이션, 의사소통, 청각 및 이동 전문가 및 교사를 포함한 전문가 훈련
- 이동 장치 및 생활 지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예: 안내견을 이용하는 시각 장애인)에게 대중에게 공개되는 건물, 교통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거부를 예방합니다.

¹⁸²예를 들어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특히 현지에서 구할 수 없거나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을 위한 보조 이동성, 시각, 청각 및 의사소통 장치와 보조 기술을 수입하기 위한 세금 및 관세 면제.
- 이동성, 시력, 청각, 통신 장비 및 보조 기술 등의 구입을 위한 수당 또는 저리 대출을 포함한 재정 지원
- 추가 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평한 보상 제도를 마련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추가 비용 및/또는 행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행정 절차는 복잡하지 않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¹⁸³예를 들어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특히 현지에서 구할 수 없거나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 경우 개조 차량, 개조 장비 등을 수입할 때 세금 및 관세가 면제됩니다.
- 개조 차량, 개조 장비 등 구입에 대한 수당이나 저리 융자 등 금융 지원
- 추가 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평한 보상 제도를 마련합니다.

관련 행정 절차는 장애인에 대한 추가 비용 및/또는 행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복잡하지 않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¹⁸⁴운전 면허증에 대한 법률 및 규제 체계에는 객관적인 기준 및 평가(예: 운전 기술, 시력 테스트, 도로 규칙에 대한 지식, 공공 안전 등)를 기반으로 한 합법적인 제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 면허증 보유에 대한 제한은 다음 사항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편견과 낙인. 또한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현재 및 잠재적 적응을 예측해야 합니다.

¹⁸⁵장애인을 위한 예약된 주차 공간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20조 - 장애인의 개인 이동에 관한 예시 지표 목록

개인의 이동성에 대한 권리			
속성/ 지표	보조 기술 및 서비스	차량 개조 및 사용	환경 및 교통 가용성 증대
과정지표	20.10. 장애인의 개인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및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동, 시각, 청각 및 의사소통 기기, 보조 기술, 생활 지원 및 보완적 지원, 건축 환경 내 이동 및 승객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존에 주어진 자격 및 지원 방식들에 대해 장애인, 그 가족 및 일반 대중에 대한 접근 가능 형식 정보 제공		
	20.11 장애인에게 이동 기술(mobility skill)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 시각, 청각 및 의사소통 장치, 보조 기술, 생활 지원 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전문가의 수(전문가 유형별로 분류) ¹⁸⁶ 20.12 장애인의 개인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동, 시각, 청각 및 의사소통 장치, 보조 기술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 및 예산 배정	20.13 자동차 등록 사무소, 운전 면서 시험 연수 기관, 등록 및 갱신 절차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마련 20.14 합리적인 편의 제공 및 개조된 차량 안내 관련하여 장애인을 지원하도록 훈련된 자동차 등록 사무소, 운전 면서 시험 연수 기관 직원 수 및 비율	20.15 이동 기기 및 이동 기기 사용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및 접근성 표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와 도시 계획인의 수 및 비율 20.16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이동 기기 및 이동 기기 사용자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은 여객 운송 직원의 수와 비율
	20.17 장애인의 개인 이동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이동, 시각, 청각 및 의사소통 장치, 보조 기술, 생활 지원 형태 및 보완 지원을 개발 및 할당을 위해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 설계, 구현 및 모니터링시 장애인 대표 조직을 포함 하여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협의 과정 ¹⁸⁷ 20.18 장애인의 개인 이동에 관해 접수된 민원 사항들 중 조사 및 결정 통보된 비율; 신고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 그리고 이 중 정부 및/또는 의무 수행자가 준수한 비율; 민원 처리 절차별 분리 통계		

¹⁸⁶ 예를 들어 오리엔테이션 및 이동 실무자를 포함합니다.

¹⁸⁷ 일반 논평 2번에 따라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검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협의 회의, 기술 브리핑, 온라인 협의 설문 조사를 포함한 CRPD 위원회의 7개 위원회는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중에서 법률 초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협의 과정이 투명 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을 보장합니다.
- 장애인 단체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정보를 숨기거나 조건을 부여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조직과 등록되지 않은 조직을 모두 포함합니다.
- 조기에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합니다.
- 참가자의 관련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20조 - 장애인의 개인 이동에 관한 예시 지표 목록

개인의 이동성에 대한 권리

속성/ 지표	보조 기술 및 서비스	차량 개조 및 사용	환경 및 교통 가용성 증대
결과지표	<p>20.19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및 거주 지역별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이동 기기에 접근하고 있는 장애인 수.</p> <p>20.20 연령, 성별, 장애 유형 및 거주 지역, 지원 유형별로 이동, 시각, 청각, 의사소통 장치 및 보조 기술을 구매하기 위해 세금 및 관세 면제, 재정적 지원 또는 보조금 과 같은 특정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수</p> <p>20.21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및 거주 지역별 이동 기술과 이동, 시각, 청각 및 의사소통 장치 및 보조 기술 사용에 대해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을 받는 장애인 수</p>	<p>20.22 세금 및 관세 면제, 개조 차량 및 개조 장비 구매 및/또는 수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또는 보조금과 같은 특정 조치를 받고 있는 장애인 수</p> <p>20.23 관련 공공 기관에 등록된 장애인용 개조 차량의 수</p> <p>20.24 연령, 성별, 장애 유형, 차량 종류, 일반 차량/개조 차량별 운전 면허증 소지 장애인 수</p>	<p>20.25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SDG 지표 11.2.1)</p> <p>20.26 도시에서 공공목적을 위해 개방된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SDG 지표 11.7.1)</p>

제21조 -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에 관한 예시적 지표 목록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속성/지표	의사의 자유와 정보 전달의 자유	모든 장애인의 접근 가능한 수단을 통한 정보 접근	수어, 점자 및 대체 의사소통 방식의 공식 승인 및 개발
구조지표	<p>21.1 장애인 대표 조직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만들어져 CRPD 제2조의 의사소통에 대한 정의에 따라 정보를 찾고, 받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하여 표현과 의사의 자유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¹⁸⁸ 제정 여부</p> <p>21.1.1 접근가능한 형태와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장애인이 추가 비용 없이 적시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제도¹⁸⁹</p> <p>21.1.2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대중 매체와 인터넷 등 일반 대중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 행위자 모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접근성에 대한 의무 표준을 수립하는 법적 제도¹⁹⁰. (동 지표 9.4)</p> <p>21.2 장애인의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 및/또는 계획(벤치마킹, 기간, 측정 가능한 목표 포함¹⁹¹).</p>		<p>21.3 공식 언어로 수어 인정, 장애인이 선택/요청한 공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수어의 사용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¹⁹²</p> <p>21.4 점자, 읽기 쉬운 형식, 자막, 촉각 의사소통, 의사소통 지원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기타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태를 인정하고 장애인이 선택/요청한 경우 공식 상호 작용에서 이러한 사용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p> <p>21.5 공식 언어인 수어, 점자, 읽기 쉬운 언어, 기타 장애인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 방식 및 형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 개발 및 관련 전문가(예: 수어 통역사, 번역사, 지원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국가 전략 및/또는 계획(벤치마크, 기간 및 측정 가능한 목표 포함)의 장애인 대표단체의 적극적 참여 통한 개발 여부</p>
	21.6 모든 공공 지출에 대해 장애인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권 보장 지표를 설정해야 하는 법적 규정 유무		
	21.7 공적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 정보 및 의사소통 접근권 보장 조치 데이터 수집 관련 법적 규정 유무 ¹⁹³		

¹⁸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법률은 다음을 수행해야 함.

- 장애인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는 어떠한 제한도 금지.
-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와 관련된 위험이나 보복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
- 표현의 자유 행사와 관련된 직위에 미디어 산업의 장애인을 포함시키기 위해 사실상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포함. 예를 들어 방송 허가 신청 요건에 다양성 요구 사항 적용 등.

¹⁸⁹ 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은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공개된 정보는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배포되며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와 토착/소수 언어로 제공됩니다.
- 공공 정보(반드시 일반 대중에게 배포될 필요는 없음)를 요청하는 절차는 모든 장애인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RPD 제12조에 반하여 법적 능력 박탈을 근거로 한 정보 접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¹⁹⁰ 이 지표는 예를 들어 통신법, 방송법, 관련 규정, 인터넷, 디지털 기술, (통신 중계 서비스 및 이동 전화를 포함한) 전화에 대한 접근성 관련 조항을 참조한다. "소셜 미디어"에는 웹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ITU-T H Series Supplement 17 | ISO/IEC 가이드 71: 표준에서 접근성을 다루기 위한 가이드 및 ITU-T F.790: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통신 접근성 가이드라인 참조/

¹⁹¹ 그러한 계획에는 특히 다음이 포함되어야 함.

-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공무원, 근로자 및 직원의 인식수어제고하기 위한 조치
- 대체 형식의 공공 정보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 수화 통역사, 점자 프린터, 의사소통 지원 등을 포함하여 공식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대체 의사소통 수단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 관련 교육 및 고용 기간 동안 지원 및 합리적인 편의 제공, 차별을 구성하지 않는 차별 철폐 조치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장애인을 저널리즘 작업 커뮤니티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법 제5조 제4항) CRPD).

¹⁹² 여기에는 특히 수어의 경우 모든 형식이나 방언, 비차별 조항, 합리적인 편의 제공 및 의사소통 정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¹⁹³ 여기에는 다음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21조 -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에 관한 예시적 지표 목록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속성/ 지표	의사의 자유와 정보 전달의 자유	모든 장애인의 접근 가능한 수단을 통한 정보 접근	수어, 점자 및 대체 의사소통 방식의 공식 승인 및 개발
과정지표	<p>21.8 전문 저널리즘 및 기타 관련 직업을 위한 고등교육 훈련에 등록된 장애인 비율(장애 유형별 분리통계)</p> <p>21.9 집회 시위 및 야외 인식 제고 행사 개최를 목적으로 당국에 제출된 전체 사전 통지 중 장애인단체가 제출한 비율(선거구별 통계)¹⁹⁴</p>	<p>21.10 장애인 구금(detention)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 및 대체 의사소통 형식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관련 공공 인력(public staff)의 수와 비율.</p> <p>21.11 장애인과 그 단체를 포함한 공공 및 민간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보 접근성과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 표준 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활동¹⁹⁵</p> <p>21.12 접근성 표준 의무 준수 지침을 제공받아 대중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행위자, 특히 국가와 계약을 맺거나 허가를 받은 민간 행위자의 수와 비율</p> <p>21.13 미디어 소유권(민간/공공), 콘텐츠 유형(뉴스/기타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및 접근성 기능을 포함합니다.¹⁹⁶</p> <p>21.13 수어 통역, 오디오 설명, 자막, 기타 접근성 관련 장치 및 방안들이 포함된 TV 방송 및 시간 비율(미디어 소유권 유형(민간/공공), 콘텐츠 유형(뉴스/어린이 프로그램 등 기타 프로그램), 접근성 기능별 구분)</p> <p>21.14 수어 통역, 오디오 설명, 자막 및 기타 접근성 관련 장치 및 방안을 포함하는 '주문형' 또는 비선형 서비스(예: 구매형 비디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비율(미디어 소유권(비공개/공개) 및 접근성 기능별 구분)</p> <p>21.15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는 정부 웹사이트 및 앱의 비율(지표 9.12)</p> <p>21.16 공공 기관 일반 대중 대상 보고서 중 접근 가능한 형식 제작 비율(접근가능 형식 유형별/공공 기관이 발행한 보고서 전체 내 비율)(지표 9.15)</p> <p>21.17 서비스 요구 장애인 수 대비 수어통역사 및 속기사, 지적장애인 의사소통 조력인 등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인정받아 특히 공적 의사소통에 투입되는 인력 수</p> <p>21.18 장애인 정보 접근 보장 예산(조치의 종류-예: 인식 제고, 역량 개발, 접근성 직접 제공 등-별 분류)</p>	

- a) 일반 대중에게 공공 정보를 배포하기 위한 문서의 수와 비율(형식별로 분류되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됨)
- b) 전체 공개 정보 요청 중에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승인된 정보 요청의 수와 비율.
- c) 공식적인 상호작용에서 대체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요청의 수와 비율.
- d) 장애인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거부하거나 제한한다고 주장하는 불만 사항의 수와 비율

¹⁹⁴ 이 지표에 나오는 "사전 통지"라는 표현은 국가가 시위나 야외 인식 제고 행사 개최를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님. "사전 통지" 요건은 공공 기관이 집회의 자유를 촉진하고 공공 질서, 공공 안전 및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리는 목적으로만 이뤄져야 함. 일부 국가에서는 소규모 시위 등의 경우 사전 통지를 받을 필요가 없음. 따라서 지표 21.9는 대리 지표를 구성합니다. 추가 정보: www.osce.org/odihr/73405?download=true

¹⁹⁵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에 관한 지침 문서 개발 포함 가능

¹⁹⁶ 캡션, 수어 및 오디오 설명과 같은 접근성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을 설명하는 ITU-T 권장사항 H.702를 참조하세요.

제21조 -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에 관한 예시적 지표 목록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속성/ 지표	의사의 자유와 정보 전달의 자유	모든 장애인의 접근 가능한 수단을 통한 정보 접근	수어, 점자 및 대체 의사소통 방식의 공식 승인 및 개발
	21.19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접근권 관련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 대표 조직 등을 통한 장애인의 적극적 참여 보장을 위한 협의 과정 ¹⁹⁷ 21.20 장애인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보장 거부 또는 제약 관련 민원 중 조사 및 결정 비율; 이 중 신고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 그리고 이 중 정부 및/또는 의무 수행자가 준수한 비율; 민원 처리 절차별 분리 통계		
결과지표	21.21 성별, 연령, 장애, 미디어 유형(예: TV, 라디오 등) 및 미디어 소유권(공공 또는 민간)별 장애인 언론인의 수와 비율	21.22 수어를 비롯, 다양한 언어권의 인구 집단이 자신의 언어로 미디어 방송을 접하는 비율 21.23 전체 공공 정보 공개 요청 중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 공공 정보 수와 비율(응답 공공 기관별)(지표 31.15) 21.24 기술별, 성별, 연령별, 장애별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인구 비율(SDG 지표 9.c.1). 21.25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SDG 지표 17.8.1)-성별, 연령, 장애별	

¹⁹⁷ 이 지표는 장애인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제 관련 의사결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한 공공 기관(당국)의 구체적인 활동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제 4조 3항 및 [일반논평 7호](#)에 따름. 장애인 참여 보장 방식에는 간담회, 기술 발표회, 온라인 설문조사, 법안 및 정책안에 대한 의견 요청 등이 포함됨. 이를 위해 당사국은 다음의 의무가 있음;

- 협의 절차의 투명성, 접근 가능성 확인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보장
- 장애인 단체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때 정보 제공을 보류하거나 조건을 달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
- 등록 및 미등록 단체 모두 포함
- 조기에 지속적인 참여 보장
- 참여를 위한 비용 부담

제22조 - 사생활 존중에 관한 예시 지표 목록		
개인 정보 보호 권리		
속성/ 지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사생활 간섭 및 개인 정보 접근	장애 관련 개인 정보 및 데이터 공개
구조지표	<p>22.1 장애인을 포함하여 사생활 권리를 인정하고 규제하는 법률¹⁹⁸</p> <p>22.2 장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장하는 법률¹⁹⁹</p> <p>22.3 장애를 이유로 개인 정보 보호 및/또는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법률 또는 규정 조항 부재²⁰⁰</p>	<p>22.4 장애/건강 관련 개인정보 및 데이터 기밀 관련 규정으로 다음을 방지하는 법률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장애 및/또는 건강 관련²⁰¹ 개인 정보 부당한 공개²⁰² - 당사자의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동의 없이 이뤄지는 장애/건강 관련 정보의 제3자간 이관(이송) 및 활용²⁰³
과정지표	<p>22.5 장애인, 그 가족, 일반 대중, 공무원 및 장애인 개인 정보 기록을 보관하는 민간 행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활동 여부</p> <p>22.6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직원과 장애인 개인 정보 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예: 보건, 금융 부문)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사생활 존중 및 보호, 개인정보 접근에 관한 지침 자료 및 규정 채택 여부</p> <p>22.7 장애/건강 관련 개인정보 부당 공개 대응 등 장애인을 포괄하는 사생활 존중 정책을 채택한 민간 주체, 특히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업체와 기관의 수</p> <p>22.8 장애인 사생활 존중과 장애/건강 관련 개인정보 기밀 유지에 대한 교육을 받은 공무원 비율(관련 기관별)</p>	

¹⁹⁸ 법률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서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와 평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함. 예를 들어 의료 및 자선 목적으로 공개 전시하기 위해 장애 아동의 이미지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등의 관행을 방지하고 제재하는 등의 조치 등이 있음. 또한, 이러한 법률은 개인 소지품 박탈, 시설 외부인과의 방문 및 접촉 제한, 비디오 감시 등 장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시적 또는 장기적 거주 환경에도 적용되어야 함.

¹⁹⁹ 법안에 다음이 포함되어야 함;

- 장애인은 다른 사람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떠한 제한도 장애에 근거할 수 없다 (예: 장애인거주시설이 장애인이 자신과 관련된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개인 정보 기록을 보유한 국가 기관 및 민간 행위자의 의무, 이를 요청하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의 가용성을 보장할 의무
-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

²⁰⁰ 특히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접근 제한이 없어야 함.

- 현재 법적 능력을 박탈당한 장애인(협약 제12조 위배)
- 실제 또는 인지된 장애로 인해 현재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협약 제14조 위배. 예를 들어 정신병원 입원환자)
- 실제 또는 인지된 장애에 근거하여 또는 다른 근거(예: 자신의 보호, 최선의 이익 등)와 결합하여;
- 의사결정 시 인식된 한계에 기초하거나 정신적 능력 평가에 기초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른 근거(예: 자신의 보호, 최선의 이익 등)와 결합하여.

²⁰¹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 지원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장애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장애 카드나 증명서 제시 등 공공 기관이나 기관의 인정으로 충분해야 하며, 인종의 근거가 되는 장애 평가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없어야 함

²⁰²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건강 관련 정보가 필요한 경우와 그 목적을 명시적으로 명시해야 함. 예를 들어 고용 분야에서 장애/건강 관련 데이터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안한 후 필요한 경우 합리적 조정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요구할 수 있음

²⁰³ 이러한 법률에는 제3자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 오용이나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예: 장애가 있는 지원자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채용 과정에서 정보의 오용)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가 포함되어야 함.

제22조 - 사생활 존중에 관한 예시 지표 목록		
개인 정보 보호 권리		
속성/ 지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사생활 간섭 및 개인 정보 접근	장애 관련 개인 정보 및 데이터 공개
	22.9 장애인 사생활 존중과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의 대표 단체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협의 절차 ²⁰⁴ 22.10 장애인 사생활 권리 관련 민원 중 조사 및 결정 비율; 이 중 신고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 그리고 이 중 정부 및/또는 의무 수행자가 준수한 비율; 민원 처리 절차별 분리 통계	
결과지표	22.11 공공 및 민간 행위자에 의한 사생활 침해로 신고한 장애인의 수와 비율. ²⁰⁵ 22.12 사생활 침해 피해자인 장애인 중 연간 보상을 받은 사람의 수 및 비율	

²⁰⁴ 이 지표는 장애인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제 관련 의사결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한 공공 기관(당국)의 구체적인 활동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제 4조 3항 및 일반논평 7호에 따름. 장애인 참여 보장 방식에는 간담회, 기술 발표회, 온라인 설문조사, 법안 및 정책안에 대한 의견 요청 등이 포함됨. 이를 위해 당사국은 다음의 의무가 있음;

- 협의 절차의 투명성, 접근 가능성 확인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보장
- 장애인 단체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때 정보 제공을 보류하거나 조건을 달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
- 등록 및 미등록 단체 모두 포함
- 조기에 지속적인 참여 보장
- 참여를 위한 비용 부담

²⁰⁵ 이러한 지표는 사생활 보호 문제를 해결하여 가구 조사 또는 특정 장애 조사에서 생성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음

제23조 - 가정과 가족 존중에 관한 예시 지표 목록			
가정과 가족을 존중할 권리			
속성/ 지표	가정생활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 부모의 권리	장애아동이 지역사회 내 가족환경에서 성장할 권리
구조지표	23.1 장애인이 포함된 가족 생활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또는 도움을 받을 권리 규정 23.2 가족 생활과 관련된 법률에 장애를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기초하여 결혼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 자녀의 수와 나이 터울을 결정할 권리(성 및 재생산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포함), 입양 및 입양될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 없음 ²⁰⁶		23.3 아동의 장애를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제정 23.4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장애 아동이 지역사회 내 가족 환경에서 대안양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제정 ²⁰⁷
	23.5 성적/재생산 건강 관리 서비스 및 가족 계획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및 정책 마련	23.6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의 장애를 이유로 자녀를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 ²⁰⁸ 23.7 재정 지원, 상담, 지역사회 기반 및 개인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원을	23.8 장애 아동 시설 신규 입소 중지(지표 19.2.3) ²¹⁰ 23.9 장애 아동 탈시설을 위한 시기별 계획 및 측정 가능한 목표를 포함한 국가 정책 ²¹¹ 23.10 장애 아동의 가족 내 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양질의 가족 기반 대안적 돌봄 구축을

²⁰⁶ 해당 내용에 아래 포함:

- 의사 결정 능력, 정신 능력, 법적 능력 상태 등과 같이 장애를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야 함.
- 특히 지적 장애인과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경우 법적 능력 박탈(예: 후견인)을 포함하여 장애를 이유로 결혼할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야 함.
- 장애를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차별하는 건강 관련 요건을 포함하여 결혼할 권리를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요건도 금지. 예: 지적 장애인이 결혼하기 위해 사법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결혼,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 결혼과 관련된 재정 지원금 수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기타 목적을 위해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의무적인 혼전 건강검진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음
- 장애를 이유로 부모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의 장애를 이유로 자녀를 부모로부터 분리하거나 부모로부터 양육권을 박탈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음.
- 후견, 후견, 신탁, 아동 입양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인에게 부과되는 제한이나 제도가 국가 법률에 존재하지 않아야 함.
-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의 생식 능력을 유지하고 신원을 보존할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 불임 시술과 같은 비자발적 행위(부모나 후견인 등 제3자의 동의가 있었으나 CRPD 제12조에 위배되는 경우 포함)을 허용하는 조항이 없어야 함.

²⁰⁷"지역사회 내 가족 환경에서의 대안 양육"은 직계 가족이 장애 아동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을 포함하며, 국가는 CRPD 제23조 5항에 따라 더 넓은 가족 내에서 대체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 내의 가족적 환경에서 대안 양육 제공을 권고하고 있음

²⁰⁸부모의 실제 또는 인지된 장애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고려 사항과 함께 양육권을 포함한 부모의 권리를 중단하거나 박탈하는 정당화 사유가 되어선 안 됨.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결정은 차별적이지 않은 기준에 근거해야 함.

²¹⁰아동을 위한 대규모 및 소규모 그룹형 신규 입소 중단 포함. 장애 아동과 관련된 이 지표의 맥락에서 무엇이 "시설"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RPD 19조에 관한 [일반 논평 5 참조](#).

²¹¹성인 장애인의 탈시설은 CRPD 제19조 지표 참고

제23조 - 가정과 가족 존중에 관한 예시 지표 목록			
가정과 가족을 존중할 권리			
속성/ 지표	가정생활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 부모의 권리	장애아동이 지역사회 내 가족환경에서 성장할 권리
		요청하는 장애인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마련 ²⁰⁹	위한 충분한 사회 서비스 제공 및 가족 분리를 방지하기 위한 장애 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 ²¹² 보장 국가 정책 마련 ²¹³
과정지표	23.11 장애인 부모 자녀 양육 지원 예산 23.12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특히 결혼할 권리, 가족을 설립할 권리, 성 및 재생산 권리, 입양, 부모의 권리, 법적 절차에서의 절차적 조정 제공 의무, 합리적인 조정 제공, 접근 가능한 대체 의사소통 방식 등에 관해 교육을 받은 판사, 공증인, 의료 전문가, 사회복지사 및 관련 전문가의 수와 비율		23.13 장애 아동 시설 보호 예산 대비 탈시설 예산 비율 ²¹⁴ 23.14 장애 아동 탈시설 촉진을 위해 장애 아동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은 아동 거주 시설 직원, 사회복지사 및 관련 전문가의 수와 비율. 23.15 장애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보장 및 지역사회 내 가족 환경 대안적 돌봄에 배정된 예산

²⁰⁹ 여기에는 장애인 부모의 특별한 필요와 상황에 맞춘 사회 보호 및 지원 서비스(예: 장애인 한부모 지원 조치), 장애인도 참여가능한 육아 교육, 장애인 부모 및 동료 지원 그룹 등 다양한 임의적 지원 조치 포함 필요 모든 지원 서비스 및 관련 정보는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고려하여 모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함

²¹² 지원 조치에는 장애 아동과 그 가족에게 포괄적인 정보, 서비스 및 지원을 조기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청각 장애 아동의 부모의 수어 교육비 지원 등 장애 아동과 가족의 특별한 필요와 상황에 맞게 조정 필요. 모든 지원 서비스 및 관련 정보는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따라 모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 정신장애와 관련된 정보, 서비스 및 지원은 아동의 고통을 의료화하지 않아야 하며, 아동이 가족 안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기밀을 유지하며 지원해야 함

²¹³ 정책은 가족과 지역사회가 가족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직계가족이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가족 내에서 대안 양육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가족 기반 환경 내에서 친척 및 위탁 보호를 포함한 양질의 가족 기반 대안 양육을 우선시해야 함.

CRPD 제 19조에 관한 일반논평 제5호 참조

²¹⁴ 공공 예산의 양방향 배분을 비교하기 위해 총액 검토 필요

제23조 - 가정과 가족 존중에 관한 예시 지표 목록			
가정과 가족을 존중할 권리			
속성/ 지표	가정생활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 부모의 권리	장애아동이 지역사회 내 가족환경에서 성장할 권리
	<p>23.16 장애인과 그 가족, 일반 대중에게 가족 생활과 인간 관계에서 장애인의 권리(성 및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포함), 장애 아동이 지역사회 내 가족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편견, 고정관념에 맞서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활동</p> <p>23.17 장애 아동이 지역사회 내 가족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포함하여 가족 생활 및 인간 관계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 아동과 성인 대표 단체나 아동 주도 계획 등을 통해 장애 아동과 성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협의 과정.²¹⁵</p> <p>23.18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주장하거나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 가족 및 관계에 대한 존중 권리에 대한 민원 중 조사 및 결정 비율; 이 중 신고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 그리고 이 중 정부 및/또는 의무 수행자가 준수한 비율; 민원 처리 절차별 분리 통계</p>		
결과지표	<p>23.19 성관계, 피임 및 재생산 건강 관리(SDG 지표 5.6.1 기준)에 대해 스스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여성 및 소녀의 비율(연령, 장애, 거주 지역별 비율) (지표 6.19)</p> <p>23.20 가족 생활 및 관계와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한 장애인 중 권리 회복된 사람 수²¹⁶</p>	<p>23.21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장애를 가진 가구의 수와 비율.</p> <p>23.22 부모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주류 지원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수(성별, 연령, 장애 유형, 지원 유형별 및 해당 서비스 이용자 전체 중 비율)</p> <p>23.23 장애인의 부모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 이용자 수(성별, 연령, 장애 유형, 지원 유형별)</p> <p>23.24 장애 부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만족도.²¹⁷</p>	<p>23.25 지원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장애 아동과 그 가족 수(아동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보조/지원 유형별).</p> <p>23.26 대안 보호(가족 환경/소규모 그룹홈 또는 기타 거주 보호 시설)에 있는 전체 아동 중 장애 아동의 수 및 비율(아동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및 환경별) (지표 7.26)</p>

²¹⁵ 장애인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제 관련 의사결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한 공공 기관(당국)의 구체적인 활동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제 4조 3항 및 일반논평 7호에 따름. 장애인 참여 보장 방식에는 간담회, 기술 발표회, 온라인 설문조사, 법안 및 정책안에 대한 의견 요청 등이 포함됨. 이를 위해 당사국은 다음의 의무가 있음;

- 협의 절차의 투명성, 접근 가능성 확인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보장
- 장애인 단체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때 정보 제공을 보류하거나 조건을 달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
- 등록 및 미등록 단체 모두 포함
- 조기에 지속적인 참여 보장
- 참여를 위한 비용 부담

참가자의 관련 비용을 부담합니다.

²¹⁶ 이 지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장애로 인해 법적 능력을 박탈당했던 사람이 법적 능력을 회복하여 친권을 포함한 가족의 권리를 회복(예: 자녀 양육권 회복)한 사람
- 강제불임, 강제낙태, 강제피임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으로서 보상과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장애인

²¹⁷ 부모 역할 지원에 대한 장애인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권리 보유자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 도구로 유용함

제24조 - 교육에 관한 예시적 지표*

장애인이 자유로운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가치의 완전한 개발				
속성/ 지표	통합 교육 시스템	양질의 무료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직업훈련,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	통합적인 교육
구조지표	24.1 모든 교육 수준/공립 및 사립 교육 환경에서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통합 교육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²¹⁸ 24.2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형태/수준의 교육, 훈련, 자격증 취득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하는 조항이 법률 내에 없음	24.3 통합 교육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부가 주도하는 국가 전략/계획 존재 ²¹⁹ 24.4 장애 아동 조기 식별 및 정규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참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24.5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포괄하는 비공식 및 비형식 학습을 모두 포함하는 직업 및 기술 교육과 평생 학습에 대한 국가 전략/계획 수립 여부	24.6 모든 교육 수준에서 모든 교사와 직원의 통합 교육을 위한 필수 사전 및 현직 교육 ²²⁰
	24.7 모든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반영하고 각 학습자에게 맞게 커리큘럼을 수정/조정할 수 있는 통합 교육 표준을 갖춘 국가 교육과정 24.8 과외 활동을 포함한 모든 교육 환경과 자료에 대한 국가 접근성 표준 수립 및 적용 ²²¹ 24.9 교육 환경 내 장애를 이유로 한 폭력, 체벌, 왕따,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			

²¹⁸ 모든 수준의 교육에는 유아기, 초등, 중등, 고등, 직업, 성인 교육 및 평생 학습 포함. 법안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 UN CRPD에 부합하는 통합 교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
- 장애에 근거한 차별 금지
- “거부 불가” 조항
- 합리적 조정 및 지원을 제공할 의무
-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가 담당
- 모든 학습자가 수어, 토착/소수 언어를 포함하여 자신의 언어로 배울 권리

²¹⁹ 이러한 계획에는 통합 교육 촉진을 위한 인식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교사, 학생, 장애 아동 및 기타 부모의 부모, 더 넓은 지역 사회를 참여시키기 위한 조치와 함께 명확한 목표, 벤치마킹, 적용 범위 및 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²²⁰ 교육은 초등, 중등, 고등, 기술 및 직업 교육(tVET), 연수 교사 등 모든 수준과 모든 종류의 행정 직원과 교사(예: 체육, 성교육 등)를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함. 사전 교육은 대학 등에서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말하며, 커리큘럼에 통합 교육에 관한 필수 과목을 포함해야 함. 현직 교육은 교사가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직에 종사하는 동안 받는 교육 또는 연수를 지칭함. 여기에는 전문성 개발 연수, 재교육 과정 및 기타 교육 훈련 기회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필수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함

- 통합 교육 교육학(주로 교사용);
- CRPD에 따른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
- 교실 및 학교 환경의 접근성
- 합리적인 조정 제공
- 장애가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보완 및 대체 방식, 의사소통 수단 및 형식, 교육 기술 및 자료 사용.

²²¹ 건물, 교실, 도서관, 체육관, 운동장, 매장, 위생 시설, 교통수단, 장비 및 통신 수단 포함

제24조 - 교육에 관한 예시적 지표*

장애인이 자유로운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가치의 완전한 개발

속성/ 지표	통합 교육 시스템	양질의 무료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직업훈련,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	통합적인 교육
과정지표	<p>24.10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5세 아동의 비율(유니세프 MICS 지표 참고)(성별, 연령, 장애 유형별)</p> <p>24.11 (a) 전기; (b) 교육 목적의 인터넷; (c) 교육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들을 위한 개선된 교육기반 시설 및 자원; (e) 기본적인 식수 시설; (f) 성별로 구분되는 기본적인 위생시설 그리고 ;(g)(WASH 지표 정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손 씻기 시설에 접근 가능한 학교의 비율 (SDG 지표 4.a.1)²²²</p> <p>24.12 장애 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생활 기술 기반 HIV/ 성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의 비율(유네스코 지표)</p> <p>24.13 성별, 연령, 장애, 교육기관 유형(공립/사립, 초등/중등/고등/직업)에 따른 괴롭힘, 체벌, 괴롭힘, 폭력, 성차별 및 학대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유네스코 지표).</p> <p>24.14 성별, 연령, 장애별 교육 수준 및 자원별 학생 1인당 교육비(유네스코 지표).</p> <p>24.15 특수학교 수 대비 일반 학교 수.</p>	<p>24.16 개별 교육 계획, 지원 및 기타 조정²²³을 받는 장애 학생의 비율(성별, 연령, 장애 유형 및 거주 지역별)</p> <p>24.17 수어로 교육을 받는 청각장애 학생의 비율.</p> <p>24.18 일반 교육 기관에 고용된 공인 수어통역사 비율</p> <p>24.19 미리 구비된 접근가능(readily accessiblt)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 학생 비율</p>	<p>24.20 지난 12개월 동안 공식 및 비공식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성별)(SDG 지표 4.3.1)) 및 장애 유형별 수치</p>	<p>24.21 모든 수준의 교사 및 교직원 중 통합 교육과 합리적인 편의 제공에 대한 교육을 받은 비율</p> <p>24.22 성별, 연령, 장애 유형, 소수민족 또는 원주민 배경, 고용된 교육기관 유형별로 세분화된 장애인 교사 비율²²⁴.</p>

²²² 손씻기 시설과 생리 위생 시설 포함 www.unicef.org/wash/files/4_WSSCC_JMP_Fact_Sheets_4_UK_LoRes.pdf 참조

²²³ 다음을 포함

- 조정 및/또는 수정된 커리큘럼/ 평가;
- 보조 장치
- 보완 및 대체 방식, 의사소통 수단 및 방법
- 실시간 지원

²²⁴공립/사립, 초등/중등/고등/직업.

제24조 - 교육에 관한 예시적 지표*				
장애인이 자유로운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가치의 완전한 개발				
속성/ 지표	통합 교육 시스템	양질의 무료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직업훈련,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	통합적인 교육
	<p>24.23 통합 교육을 장려하고 학생, 교직원, 가족, 일반 대중에게 통합 교육 제공의 의무 및 권리, 관련 지원을 알리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활동 여부</p> <p>24.24 일반(주류) 교육 환경 내 장애인 통합 교육 권리 보장 예산(주류 학교나 특수 학교 등 배제/분리 교육 환경 배정 예산보다 커야 함)</p> <p>24.25 교육 계획 및 개혁과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 특히 장애 아동의 대표단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수행된 협의 과정²²⁵</p> <p>24.26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장애 아동 및 성인의 교육권 관련 민원 중 조사 및 결정 비율; 이 중 신고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 그리고 이 중 정부 및/또는 의무 수행자(예: 사립학교)가 준수한 비율; 민원 처리 절차별 분리 통계</p>			
결과지표	<p>24.27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의 학교 밖 아동, 일반 초등/중등/고등 교육 기관/직업 훈련/평생 학습 과정 등록, 출석, 학년별 진급, 수료²²⁶, 중퇴 비율(성별, 연령, 장애 유형, 소수민족 또는 원주민 배경, 학년 및 교육 수준별)</p> <p>24.28 (a) 전체 학년 ⅓ 지점, (b) 초등학교 말기, (c) 중등학교 말기에 (i) 읽기, (ii) 수학에서 최소 숙련도 이상을 달성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별 통계(SDG 지표 4.1.1) 및 장애 유형/소수민족 또는 원주민 배경별 통계 (지표 7.25)</p> <p>24.29 특정 연령대의 인구 중 기능적 문해력과 수리 능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도를 달성한 인구의 성별 비율(SDG 지표 4.6.1) 및 장애/소수민족 또는 원주민 배경별 비율</p> <p>24.30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의 기술 유형별 비율(SDG 지표 4.4.1)-성별, 연령별, 장애 유형별 세분화.</p>			

* 포괄적 교육에 대한 권리에 관한 CRPD 위원회의 [일반 논평 4호](#) 참조

²²⁵ 이 지표는 장애인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제 관련 의사결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한 공공 기관(당국)의 구체적인 활동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제 4조 3항 및 일반논평 7호에 따름. 장애인 참여 보장 방식에는 간담회, 기술 발표회, 온라인 설문조사, 법안 및 정책안에 대한 의견 요청 등이 포함됨. 이를 위해 당사국은 다음의 의무가 있음;

- 협의 절차의 투명성, 접근 가능성 확인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보장
- 장애인 단체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때 정보 제공을 보류하거나 조건을 달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
- 등록 및 미등록 단체 모두 포함
- 조기에 지속적인 참여 보장
- 참여를 위한 비용 부담

²²⁶ 개별 교육 계획에 따라 장애 학생별 목표가 포함된 교육 수준을 달성한 경우도 수료에 포함. 이때, 해당 교육 수준을 이수했음을 증명하고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추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함.

제25조 – 건강권에 관한 예시적 지표*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 향유			
속성/ 지표	주류 및 특정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포괄적인 건강 보험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동의
구조지표	<p>25.1 다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건강 관련 법률 제정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및 공공 환경에서 저렴하고 접근 가능하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장애인도 평등하게 이용²²⁷ - 합리적인 조정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에 따른 차별 - 여성, 어린이, 노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기밀 존중 <p>25.2 장애 여성과 소녀를 포함하여 여성과 소녀들이 성 및 재생산 건강 관리, 정보 및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과 규정(SDG 지표 5.6.2).</p> <p>25.3 장애인, 특히 여성, 아동 및 노인이 보편적인 건강 보장 및 응급 치료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여²²⁸ 고품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에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 정책/계획 마련²²⁹(지표 10.4)</p> <p>25.4 공공 및 민간 의료 시설에서 채택되고 적용되는 국가 접근성 표준</p> <p>25.5 건강보험회사가 기존 장애/건강 상태를 근거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p>		<p>25.6 다음과 같은 법안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적 고통의 상황을 포함하여 법적 능력 상태, 자유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동의에 따라 의료적 치료를 받거나 이를 거부할 권리 인정 -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행사할 때의 차별 금지(합리적 조정 제공 거부 등) - 모든 건강 정보와 동의서 양식이 완전히 접근 가능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도록 보장 -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사전 의료 지시서, 위임장 및 기타 의료적 의사 결정 지원 형식에 따라 행동할 의무 규정²³⁰ <p>25.7 법률이나 규정에²³¹ 다음 내용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 동의²³²

²²⁷HIV/AIDS 감염인 포함

²²⁸필수 건강 서비스부터 보건 재정 개혁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건강 보장의 구현에는 건강 관련 훈련 및 재활, 보조 장치 및 기술을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건강 관리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함

²²⁹아래 내용 포함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 인정
-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주류 건강 및 예방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 다음을 포함한 일반 의료 서비스 내 특정 서비스: 적절한 조기 식별 및 조기 개입(물리 치료, 작업 치료, 언어 치료, 수어 통역, 유아 자극 등과 같은 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기 아동 장애 검사 및 계획 포함) 이동성, 시각, 청각, 의사소통 및 자기 관리를 위한 보조 장치 및 기술)
- 추가 손상을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서비스
- 특히 성과 재생산 건강, HIV/AIDS, 청소년 및 노인 건강,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건강 분야. 정신건강 서비스는 모든 유형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서비스와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장애별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함. 이러한 서비스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동료 지원, 위기 지원, 심리 치료 및 상담(트라우마 상담 포함) 등을 포함한 기존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대안을 포함.

²³⁰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이 선택한 지지자의 참여를 존중하면서 건강 관리에 대해 논의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를 구할 때 장애인에게 직접 받아야 함. 사전 지시서와 위임장은 법적 능력을 행사하여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에 따라 지원 조치로 받아들여져야 함.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면 증거("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당사자의 이전에 나타난 선호도, 가치관, 태도, 서술 및 행동에 대한 고려" 포함)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도에 대한 최선의 해석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A/HRC/37/56, 31문단), 이후 당사자의 의사 표현이나 의사 결정(지원 조치를 통해 얻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²³¹건강, 정신 건강, 가족, 민사 및 형법 포함

²³²제3자: 가족, 법적 보호자, 의료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가 등

제25조 - 건강권에 관한 예시적 지표*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 향유			
속성/ 지표	주류 및 특정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포괄적인 건강 보험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동의
			- 모든 유형의 비자발적 치료-모든 형태의 수술 ²³³ , 모든 유형의 약물 투여 ²³⁴ , 치료(예: ECT), 의료 기기, 벨트 또는 구속 장치
	25.8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의 의료 및 보건계통 교육 과정 내 의무교육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사회적 결정 요인(정신건강 등) 포함		
과정지표	25.9 접근 가능한 건물 및 환경, 의료 및 보건 장비, 정보 및 통신 등 국가 접근성 표준을 충족하는 공공 보건소, 병원 및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 시설의 비율 ²³⁵ 25.10 접근 가능한 대체 의사소통 방법을 제공하는 공공 보건소 및 병원의 비율 ²³⁶ 25.11 정신보건에 배정된 예산 중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지원에 할당된 예산의 비율(정신병원 및 병상에 할당된 예산과 대조)	25.12 총 가계 지출 또는 소득에서 건강에 대한 가계 지출이 많은 인구의 비율(SDG 지표 3.8.2)(성별, 연령, 장애 유형별) 25.13 전체 인구 중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비율(연령, 성별, 장애 유형별). 25.14 성별, 연령,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인 평균 본인 부담 의료 비용	25.15 정신적 고통 상황을 포함한 모든 의료 서비스, 특히 정신건강 서비스 전반에 적용되는 치료에 대해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 및 치료를 거부할 권리에 대한 규정 채택 ²³⁷

²³³ 불임수술, 임신중단 수술 등

²³⁴ 피임약, 신경이완제, 성장억제제, 정신을 바꾸는 약물 등

²³⁵ 상담실, 진료 및 수술시설, 화장실, 대기실 포함

²³⁶ 무엇보다도 수어, 선주민/소수자 언어, 점자 등 접근 가능한 언어와 형식으로 환자를 위한 정보 및 통역 제공

²³⁷ 이러한 규칙에는 아래 내용 포함

- 명시적으로 장애인 포함
- 제3자에 따른 치료 및 동의 금지
- 개인의 자율성, 의지, 선호도를 존중하는 지원 인식 및 보장
- 접근 가능하고 대안적인 의사소통 방법 인식 및 제공
- 항상 개인의 법적 능력 행사에 따른 사전 지시서/계획 도구 인지
- -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사 표현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최선의 이익' 기준이 아니라 의사와 선호도에 대한 최선의 해석이 행동 방침을 결정하도록 보장 (CRPD 제12조에 관한 [일반논평 제1호](#) 참조).

제25조 - 건강권에 관한 예시적 지표*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 향유			
속성/ 지표	주류 및 특정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포괄적인 건강 보험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동의
	25.16 성별, 연령, 장애 유무별로 세분화된 필수 보건 서비스 보장 ²³⁸ (SDG 지표 3.8.1) ²³⁹ 25.17 성과 재생산 및 정신 건강을 포함한 건강 관련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 대표단체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협의 진행 ²⁴⁰ 25.18 공공 및 민간 보건 부문 직원, 특히 의료 전문가와 보건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 중 장애인의 건강권 및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에 대해 교육을 받은 비율 25.19 장애인,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건강 정보, 프로그램 및 서비스,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 정신 건강 및 복지, 성과 재생산 보건, 신체 활동 참여의 이점 등에 관한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활동		
	25.20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및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의료 보험의 접근 및 제공에 대한 민원 중 조사 및 결정 비율; 이 중 신고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 그리고 이 중 정부 및/또는 의무 수행자(예: 민간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한 비율; 민원 처리 절차별 분리 통계		

²³⁸이는 생식, 산모, 신생아 및 아동 건강, 전염병, 비전염성 질환, 서비스 역량 및 접근성을 포함한 추적 개입을 기반으로 한 일반 및 가장 취약한 인구의 평균 필수 서비스 보장률로 정의

²³⁹SDG 지표 메타데이터 참조: "형평성은 UHC 정의의 핵심이므로, 국가 내 서비스 보장 범위의 불평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UHC 서비스 보장 지수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인구와 취약 인구에 대한 지수를 별도로 제시하여 두 인구 간의 차이를 강조할 수 있음"

²⁴⁰ 이 지표는 장애인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제 관련 의사결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한 공공 기관(당국)의 구체적인 활동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제 4조 3항 및 일반논평 7호에 따름. 장애인 참여 보장 방식에는 간담회, 기술 발표회, 온라인 설문조사, 법안 및 정책안에 대한 의견 요청 등이 포함됨. 이를 위해 당사국은 다음의 의무가 있음;

- 협의 절차의 투명성, 접근 가능성 확인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보장
- 장애인 단체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때 정보 제공을 보류하거나 조건을 달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
- 등록 및 미등록 단체 모두 포함
- 조기에 지속적인 참여 보장
- 참여를 위한 비용 부담

제25조 - 건강권에 관한 예시적 지표*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 향유			
속성/ 지표	주류 및 특정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포괄적인 건강 보험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동의
결과지표	25.21 연령, 장애유형별 산모 사망률(SDG 지표 3.1.1) 25.22 현대적 방식의 가족계획이 필요한 연령별, 장애별 가임기 여성 및 소녀의 비율((SDG 지표 3.7.1) 25.23 성별, 연령별, 주요 인구(SDG 지표 3.3.1) 및 장애별 미감염 인구 1,000명당 신규 HIV 감염자 수 25.24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 1,000명당 결핵, 말라리아 및 B형 간염 발생률(SDG 지표 3.3.2, 3.3.3, 3.3.4) 25.25 성별, 장애, 원주민/소수자 배경 인구 1000명당 15~60세 사이 사망 확률((WHO 지표) 25.26 성별, 연령, 장애별 영양실조 유병률(SDG 지표 2.1.1). 25.27 5세 미만 아동의 영양불균형 출현률-유형별(영양실조 및 과체중), 성별, 연령 및 장애별(SDG 지표 2.2.2). 25.28 출산인 연령별, 장애 유형별 숙련된 보건 인력이 참여하는 출산 비율(SDG 지표 3.1.2)		25.29 성관계, 피임 및 재생산 건강 관리와 관련해 정보에 입각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여성과 소녀의 연령 및 장애별 비율(SDG 지표 5.6.1) 25.30 일반 인구 10만 명당 연간 비자발적 임원 비율.

* 장애인의 건강권에 관한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73/161](#)) 참조.

제26조 - 가활 및 재활에 대한 지표 예시

가활 및 재활 서비스 및 보조 기기에 대한 접근성 향상

속성/ 지표	부문 간 재활 시스템 및 서비스	가활 및 재활을 위한 보조 기기 및 기술의 가용성, 지식, 사용*
-----------	-------------------	--------------------------------------

구조지표	<p>26.1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에 부합하는, 모든 장애인의 가활 및 재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²⁴¹ (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를 포함한 장애, 국적, 또는 이주 지위, 기타 사유 등을 이유로 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 -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지하여 장애인을 강제 또는 조건부 재활 및 재활 서비스로부터 보호.²⁴² <p>26.2 동료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부문 간 접근 가능하며, 저렴한 가활 및 재활 서비스를 조직, 강화 및 확대하기 위한 국가 전략/계획의 채택²⁴³.</p> <p>26.3 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의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할 권한을 갖는, 장애 아동과 성인을 위한 가활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공 및 민간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검사를 수행할 독립 기관의 지정.</p>	<p>26.4 공공 조달을 포함하여²⁴⁴ 장애인의 가활 및 재활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보조 기기 및 기술의 가용성, 지식,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 정책 또는 법률의 채택.²⁴⁵</p> <p>26.5 장애인의 가활 및 재활 관련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보조 기기 및 기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적 및 규제 조항²⁴⁶</p>
------	---	---

²⁴¹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서비스의 조직, 제공 및 전달이 개인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비차별적이고, 참여적이고, 이용 가능하고, 저렴하고, 접근 가능하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²⁴² 가활 및 재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 개인의 선택, 의지 및 선호를 배제하거나 협약의 조항 및 원칙에 위배되는 치료 또는 생활 방식을 받거나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예: 재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시설 입소 요구).
-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지에 대한 선택권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예: 시설에 수용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예: 사회 보호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재활 과정의 초기 요건을 넘어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영구적이고 특정한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²⁴³ 이러한 전략 또는 계획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장애, 성별, 연령에 관계없는 모든 장애인의 포괄;
- 가활 및 재활 서비스 이용 자격에 대한 재정 기준(소득 기준)의 제외 또는 삭제;
- 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참여와 포함이라는 원칙과 목표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
- 특히 보건, 고용,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를 조직, 강화 및 확장하기 위한 부문 간 접근 방식의 보장;
- 개인의 필요와 강점에 대한 다학제적 평가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

²⁴⁴ 공공 조달 정책은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기의 공급, 품질, 경제성, 다양성 및 선택의 폭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의 수혜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춰 경제성을 보장함으로써 시장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규정과 입찰 요청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²⁴⁵ 이 계획에는 정보통신 기술, 이동 보조기구, 기기 및 보조 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착수 및 촉진이 포함되어야 하며, 저렴한 비용의 기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²⁴⁶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 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보조 기기 및 기술을 수입할 시의 세금 및 관세 면제(특히 현지에서 구할 수 없거나 가격이 저렴한 경우).
- 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보조 기기 및 기술 구매를 위한 수당 또는 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재정 지원.
- 추가 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한 환급 제도.
- 공적 지원을 받는(가활 및 재활을 위한) 보조 기술의 직접 제공.
- 필수보조기기목록(Priority Assistive Products List)의 채택 및 보조 제품의 공공 조달, 규제, 제공 및 전달을 촉진하기 위한 기타 WHO 도구의 사용([WHO 웹사이트](#) 참조). 이로 인해 장애인이 가활 및 재활을 위해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제품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관련 행정 절차는 투명하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로써 장애인이 가활과 재활을 위한 보조기기 및 기술을 이용할 때 추가 비용 및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제26조 - 가활 및 재활에 대한 지표 예시		
가활 및 재활 서비스 및 보조 기기에 대한 접근성 향상		
속성/ 지표	부문 간 재활 시스템 및 서비스	가활 및 재활을 위한 보조 기기 및 기술의 가용성, 지식, 사용*
과정지표	26.6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을 포함하여 CRPD에 따라 가활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및 인증을 받은 전문가의 수(전문가의 종류, 업무 분야 및 지리적 위치별로 세분화). ²⁴⁷	26.7 장애인의 가활 및 재활과 관련하여 공공 조달을 포함하여 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보조 기기 및 기술의 가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할당 및 지출된 예산.
	26.8. 장애인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 및 관련 보조 장치와 기술을 포함하여 가활 및 재활 분야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자격과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배포하는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활동. ²⁴⁸ 26.9 지정된 독립 기관과의 조율 하에 재활 및 보조 기기 제공과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및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의 대표 단체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협의 절차의 수행. ²⁴⁹ 26.10 가활 및 재활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중 조사 및 판결이 이루어진 비율, 민원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비율, 정부 및 의무 이행자(예: 사립학교)가 그 결정을 준수한 비율(각각 메커니즘 유형별로 세분화).	

- 지역사회 내에서 또는 가능한 한 지역사회와 가까운 곳에서 접근성, 서비스의 적시 제공 및 연속성을 보장;
- 다양한 동료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 및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포함;
-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는 장애 아동의 부모를 위한 교육의 포함.
- 국제협력을 포함한 적절한 자원 배분의 보장.

²⁴⁷ 예를 들어 건강 관련 재활 전문 의사, 보조 기기 및 기술의 제공, 장착 및 사용 교육을 받은 인력, 직업 개발 및 배치 전문가, 직업 및 고용 분야의 업무 조정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²⁴⁸ 인식 제고 캠페인은 장애인을 환자나 시혜와 돌봄의 대상이 아닌 권리 보유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인권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보조 기기나 기술의 공개적인 전달 행사 등을 통해 시혜적 접근을 강화하거나 장애를 병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협약 제8조에 관한 지표를 참조할 것.

일반적인 인식 제고 캠페인은 최종 사용자에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그들의 권리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보다 개인화된 캠페인은 재활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²⁴⁹ 이 지표는 CRPD 제4조 제3항 및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7호([General Comment no. 7](#))에 의거하여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 입법 및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타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포함)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협의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 정보와 조건을 제한하거나, 장애인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등록 단체와 미등록 단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 조기 참여와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참여자의 참여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참여에 관한 보고서인 [A/70/297보고서](#)와 연계된 [포괄적 의사결정을 향한 효과적인 참여 활성화에 관한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참조.

제26조 - 가활 및 재활에 대한 지표 예시		
가활 및 재활 서비스 및 보조 기기에 대한 접근성 향상		
속성/ 지표	부문 간 재활 시스템 및 서비스	가활 및 재활을 위한 보조 기기 및 기술의 가용성, 지식, 사용*
결과지표	<p>26.11 성별, 연령, 장애 서비스의 유형 및 분야, 지리적 위치별로 세분화된,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수와 비율(WHO 및 IDDC 지표 기준)²⁵⁰.</p> <p>26.12 성별, 연령, 장애, 서비스의 유형 및 분야, 지리적 위치별로 세분화된, 지난 12개월 동안 재활 서비스가 필요했지만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장애인의 수와 비율(WHO 및 IDDC 지표 기준).</p> <p>26.13 성별, 연령, 장애, 서비스의 유형 및 분야, 지리적 위치별로 세분화된, 장애인의 가활 및 재활 서비스 만족도 수준.²⁵¹</p>	<p>26.14 성별, 연령, 장애, 제품의 유형, 지리적 위치별로 세분화된, 자신의 필요에 적합한 보조 기기 및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수와 비율(WHO 및 IDDC 지표에 근거).²⁵²</p> <p>20.15 성별, 연령, 장애, 지리적 위치, 조치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된, 가활 및 재활 목적에 특화된 보조 기기 및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 (세금 및 관세 면제, 재정 지원 또는 보조금과 같은) 특정 조치의 혜택을 받는 장애인의 수.</p> <p>26.16 성별, 연령, 장애, 제품의 유형, 지리적 위치별로 세분화된, 보조 기기 및 기술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수와 비율(WHO 및 IDDC 지표 기준).</p>

*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34/58](#), 단락14 및 [보조 기기 및 기술에 관한 팩트시트](#) 참조.

²⁵⁰ 몇 가지 결과 지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장애개발 컨소시엄이 '[우리가 만드는 차이를 포착하기: 지역사회 기반 재활 지표 매뉴얼](#)' 제안한 바에 기초해 있다. 이 표의 목적상, 지표는 건강 관련 재활 서비스 영역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²⁵¹ 장애인의 가활 및 재활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권리 보유자와 서비스 수혜자의 견해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 도구로서 유용할 수 있다.

²⁵² WHO의 신속한 보조 기술 평가(RATA)는 보조 기술의 필요성, 수요 및 접근 장벽에 대한 인구 수준에서의 데이터 수집을 지원한다. WHO의 보조 기술 평가 역량 도구(ATA-C)는 보조 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역량(재정, 법률, 인력 및 제공 포함)을 평가한다. 자세한 내용은 [WHO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이메일(assistivetech@who.int)로 문의할 수 있다.

제27조 - 근로 및 고용에 관한 지표 예시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성이 높은 노동 시장과 노동 환경에서 자유롭게 선택한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권리			
속성/ 지표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에 대한 접근성	직장 내 평등한 기회	강제 또는 강압적인 노동으로부터 보호
구조지표	27.1 장애인을 포함하는 업무와 고용, 교육 및 고용 서비스의 모든 측면에 관한 법률 제정. ²⁵³ 27.2 장애를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고용을 제한하는 법률 또는 규정상의 조항이 없어야 할 것. ²⁵⁴ 27.3 장애인을 포함하는 직업 훈련을 장려하는 국가 계획(주류 또는 장애특정)의 채택. 27.4 공공 및 민간 고용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가 고용 전략 및 계획(주류 또는 장애특정)의 채택. ²⁵⁵ 27.5 직장 내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제공)과 업무 환경 및 의사소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주, 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²⁵⁶ 27.6 장애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 보호 제도는 부정적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않으며, 근로 및 고용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할 것. ²⁵⁷ 27.7 국가 접근성 표준의 채택과 직장 내 적용. 27.8 장애 여성을 포괄하는 근로 및 고용과 관련된 국가 젠더법을 및 정책.		27.9 강제 또는 강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모든 법률과 정책에는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27.10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근절하기 위해 제정되는 모든 법률과 정책에는 장애 아동이 포함됩니다. ²⁵⁸

²⁵³ 근로 및 고용 관련 법률은 채용, 고용, 근무 지속성, 경력 발전,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급여/보수, 자영업 및 기업가 정신의 모든 측면과 조건을 다루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를 포함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
- 강제 노동, 폭력 및 괴롭힘의 금지 및 그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보호;
- 적극적 우대 조치 프로그램, 세금 면제, 기타 인센티브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한 장애인 고용 촉진;
- 자영업, 창업, 협동조합 개발, 장애인의 사업 추진에 있어 동등한 기회의 보장;
-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한 동등한 대우
- 육아휴직 및 휴가 자격에 대한 동등한 권리 보장
- 주류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대출, 저축, 보험, 송금 등)에 대한 동등한 권리(특히 자영업, 창업 등의 허용과 관련).

²⁵⁴ 최소한 다음과 관련된 조항들은 없어야 한다:

- 모든 유형의 장애와 관련된 고용 또는 직업 훈련에 대한 접근 제한;
- 법적 능력 지위와 관련된 고용 또는 직업 훈련에 대한 접근 제한;
- 손상/장애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조항;
- 업무 능력이나 업무 적합성과 같은 손상/장애 기반 평가를 포함하는 조항;
- 장애인을 위한 제한된 고용 또는 직업 훈련 범주를 설정하는 조항
- 장애인을 위한 제한된 작업장 또는 분리된 작업 환경의 유지(예: 보호 작업장)

²⁵⁵ 국가 고용 전략/계획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고용 서비스, 자영업, 창업, 협동조합 개발 및 개인 사업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보장
- 고용 촉진 프로그램, 인센티브 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 장애가 있는 청소년 및 여성, 특정 및 다중 지원 요구가 있는 사람 등과 관련된 특정 조치.

²⁵⁶ 예를 들어, 헬프라인(helpine), 네트워크 등의 안내 및 지원 메커니즘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²⁵⁷ 예를 들어, 이러한 제도는 혜택의 부여를 업무상의 무능력함/역량없음의 선언적 의미와 연결지어서는 안 되며, 수혜자의 구직/취업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출퇴근 교통비 등 장애 관련 추가 비용을 언급하지 않은 채 취업을 이유로 급여가 자의적으로 회수되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²⁵⁸ ILO,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 협약, 1999(제182호) 참조.

제27조 - 근로 및 고용에 관한 지표 예시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성이 높은 노동 시장과 노동 환경에서 자유롭게 선택한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권리			
속성/ 지표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에 대한 접근성	직장 내 평등한 기회	강제 또는 강압적인 노동으로부터 보호
	27.11 성별,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된, 고용 결과 및 고용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규정하는 법적 요건.		
과정지표	27.12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 프로그램, 평생 학습, 직장 복귀 프로그램 및 기업가 정신, 창업, 협동조합 개발 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의 수와 비율(연령, 성별, 장애별로 세분화).	27.13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취업 코칭, 취업 알선 및 인턴십, 직장 재활, 소액 금융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²⁵⁹ , 적극적 우대 조치 ²⁶⁰ 를 통한 고용 등 각 조치의 혜택을 받은 사람의 수와 비율(연령, 성별, 장애별로 세분화). 27.14 무급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의 비율(성별, 연령, 지역(SDG 지표 5.4.1) 및 장애별로 세분화).	
	27.15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제공)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은 고용 서비스, 직업 훈련 및 소액 금융(공공 및 민간) 직원의 수와 비율. 27.16 통합을 증진하고 고용주 및 개인에게 고용 및 고용 서비스와 관련된 권리와 책임을 알리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활동. 27.17 고용 관련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의 대표 단체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협의 프로세스의 수행 ²⁶¹ . 27.18 장애를 사유로 하는 차별과 관련된 그리고/또는 장애인이 연루된 근로 및 고용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 중 조사 및 판결이 내려진 비율, 민원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비율, 정부 및 의무 이행자가 결정을 준수한 비율(각각 메커니즘 유형별로 세분화).		

²⁵⁹ 여기에는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예: 소액 금융)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소액 금융 프로그램에 등록된 후 사업이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²⁶⁰ 적극적 우대조치에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할당제와 보조금(subsidies) 및 인센티브, 보조금, 취업/생계 프로그램 전환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²⁶¹ 이 지표는 CRPD 제4조 제3항 및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7호([General Comment no. 7](#))에 의거하여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 입법 및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타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포함)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협의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 정보와 조건을 제한하거나, 장애인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등록 단체와 미등록 단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 조기 참여와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참여자의 참여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27조 - 근로 및 고용에 관한 지표 예시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성이 높은 노동 시장과 노동 환경에서 자유롭게 선택한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권리			
속성/ 지표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에 대한 접근성	직장 내 평등한 기회	강제 또는 강압적인 노동으로부터 보호
결과지표	<p>27.19 고용 형태(공공, 민간, 자영업) 및 직위 종류(예: 관리직/행정직), 성별,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된, 비장애인의 고용률 및 전체 고용률 대비 장애인의 고용률.</p> <p>27.20 연령, 성별, 장애별로 세분화된, 비장애인의 실업률 및 전체 실업률 대비 장애인의 실업률(SDG 지표 8.5.2 기준).</p> <p>27.21 성별,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된, 비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대비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p> <p>27.22 연령 및 장애별로 세분화된, 관리자 직책에 있는 여성의 비율(SDG 지표 5.5.2).</p>	<p>27.23 성별, 연령별, 장애별로 세분화된, 비공식 부문 경제에 종사하는 비장애인 및 전체 인구 대비 비공식 부문 경제에 종사하는 장애인의 비율.</p> <p>27.24 연령, 성별, 장애별로 세분화된, 시간제 및 임시직에 종사하는 비장애인 및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율.</p> <p>27.25 직종,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된, 여성 및 남성 직원의 평균 시간당 수입(SDG 지표 8.5.1).²⁶²</p>	<p>27.26 강제 또는 강압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p>
		27.27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공개 노동시장 밖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수와 비율. ²⁶³	

²⁶²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여성 고용권의 맥락에서 요인에 가중한 성별 임금 격차(factor weighted gender pay gap)의 사용을 장려하는 ILO, "[2018/19 글로벌 임금 보고서: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2018\)](#)"을 참조.

²⁶³ 여기에는 분리된 환경(예: '보호 작업장')에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포함된다.

제28조 - 적절한 생활 수준 및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표 예시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		
속성/ 지표	적절한 생활 수준	사회 보호 및 빈곤 감소
구조지표	<p>28.1 모든 사회 프로그램, 주거, 영양, 물, 위생 및 건강을 포함한 모든 주류 또는 장애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포괄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정책/계획을 채택할 것.</p> <p>28.2 국가 접근성 표준을 채택하여 공공, 민간 주택, 식수 및 위생 시설에 적용할 것.</p>	<p>28.3 장애인을 명시하고 사회 지원 및 사회 보험을 포함한 모든 사회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사회 보호 및 빈곤 감소에 관한 법률.²⁶⁴</p> <p>28.4 주류²⁶⁵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호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지표 28.3에 명시된 입법 기준을 충족하고,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장애인을 포용하도록 보장할 것.²⁶⁶</p> <p>28.5 다음의 법적, 규제적 조항 또는 정책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법적 능력 포기;²⁶⁷ - 혜택, 사회 보호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위해 이행할 수 없거나 수혜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²⁶⁸

²⁶⁴ 사회 보호법은 다음을 포함할 것:

- 합리적인 편의 제공 거부를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 주류 제도와 장애별 제도에 효과적 접근;
- 장애 관련 비용과 현금 및 현물 지원(예: 보조기기, 이동 보조기구)이 급여 수준 설정과 소득 기준선 설정 모두에서 국가 사회보장제도에 반영되도록 보장(예: 최저 소득 기준선에 대한 대리 수단 테스트에 장애를 요소로 포함시킴);
- 특정 연령대(아동, 청소년, 근로 연령 성인, 노인)를 포함하여 모든 연령대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 제공(시설 퇴소 또는 시설화 방지, 주거 적응, 장애인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장애 관련 지원 및 서비스 받기 위한 지원 포함);
- 급여 수급 자격, 수급과 고용 간의 호환성;
- 지역사회 장애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적절한 사회 보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거주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
- 혜택 자격은 의학적 진단 없이도 필요에 대한 대화형 평가에 따라 충족될 수 있어야 함.

자세한 지침은 2019 공동 성명서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포용적인 사회 보호 시스템을 향하여"를 참조.

²⁶⁵ 주류 사회보장제도와 프로그램에는 모든 근로자, 모든 아동, 모든 노인 등과 관련된 제도가 포함.

²⁶⁶ 이러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은 다음을 보장할 것:

- 사회 보호 단계 (참조 [ILO guidance](#))
- 장애가 있는 성인의 경우, 해당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
- 당사자 일부 비용 분담 프로그램 내에서 분담 능력이 제한적인 장애인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금;
- 당사자 일부 비용 분담 제도에서 비분담 제도로 전환할 때 혜택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
- 조건부 현금 이체 프로그램 또는 지원금 수령을 조건으로 하는 유사한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촉진해야 함.

²⁶⁷ 장애인의 완전한 법적 능력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CRPD 제12조에 위배됨)은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과 은행 계좌 관리를 금지하며, 이로 인해 장애인은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주어진 혜택과 지원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음. 사회 보호 프로그램은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법적 능력의 제한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가 혜택과 지원에 대한 선택, 통제 및 자율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²⁶⁸ 장애인이 혜택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는 경우에는 혜택과 관련된 조건이 요구되어서는 안 됨. 예를 들어, 장애인이 학교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학교 출석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교통수단이 없어 보건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 또한 조건부 지급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CRPD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됨(예: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재활 또는 치료(정신건강 치료 포함)를 준수해야 하거나,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

제28조 - 적절한 생활 수준 및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표 예시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		
속성/ 지표	적절한 생활 수준	사회 보호 및 빈곤 감소
	<p>28.6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는 공공 주택 등 주거지의 수와 비율.</p> <p>28.7 공공 주택 프로그램의 수혜자 수와 비율을 성별, 연령, 장애 및 지리적 위치별로 세분화한 수치.</p> <p>28.8 식수, 위생,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구의 수와 비율을 장애인 가구와 지리적 위치별로 세분화한 수치.</p>	<p>28.9 장애를 이유로 차별 없이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고, 여성, 아동, 노인, 원주민, 소수민족, 장애를 가진 이주민 등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장애 관련 추가 비용과 개인에 맞는 지원 서비스를 결정하는 완전한 접근성 시스템.</p> <p>28.10 사회 보호 혜택을 신청하는 장애인과 혜택을 받는 장애인의 수와 비율을 성별, 연령, 장애, 원주민/소수민족 배경, 이민자 신분, 혜택의 종류(주류 또는 장애별)로 세분화한 수치.</p> <p>28.11 수혜자는 장애인이며, 연령, 성별, 장애, 원주민/소수민족 배경, 이주민 신분, 프로그램 종류(주류 또는 장애별)에 따라 세분화된 주류 및 장애별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 사회 보호 프로그램에 할당되고 지출된 예산.</p>
과정지표	<p>28.12 영양, 주택, 물 접근성, 위생, 사회 보호 및 빈곤 감소와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협의 프로세스.²⁶⁹</p> <p>28.13 영양, 주거, 물 접근성, 위생, 사회 보호 및 빈곤 감소 계획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모든 공공 부문 직원 중 장애인의 권리, 특히 장애 관련 비용과 보조 기기 및 기타 형태의 장애인 지원 제공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의 비율.²⁷⁰</p> <p>28.14 영양, 주거, 물, 위생, 사회 보호 제도,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원주민, 소수 민족 및 장애를 가진 이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설계하고 실행하는 장애인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활동.</p> <p>28.15 영양, 식량, 주거, 물, 위생, 사회 보호 제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주장하거나 장애인이 관련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참여에 대한 불편사항 접수 중 조사 및 판결이 내려진 비율, 불만 제기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비율, 정부 및/또는 의무 수행자가 불만 사항을 준수한 비율을 각각 메커니즘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표시한 수치.</p>	

²⁶⁹ 이 지표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제3항 및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7호에 따라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을 검증해야 하며, 여기에는 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 상담 설문조사, 입법 및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타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등이 포함.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다음을 수행할 것.

- 상담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접근 가능성 확인;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보장;
- 정보를 보류하거나 장애인 단체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
- 여기에는 등록된 조직과 미등록 조직이 모두 포함;
- 조기에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
- 참가자의 관련 비용을 충당.

²⁷⁰교육에는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법, 차별 금지 및 합리적인 편의 제공, 유니버설 디자인, 접근성(접근 가능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포함)도 포함할 것.

제28조 - 적절한 생활 수준 및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표 예시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		
속성/ 지표	적절한 생활 수준	사회 보호 및 빈곤 감소
결과지표	<p>28.16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재 피해자, 빈곤층, 취약계층을 구분하여 성별에 따라 사회 보호 단계/제도의 혜택을 받는 인구의 비율 (SDG 지표 1.3.1).</p> <p>28.17 장애 관련 비용이 결정되고 보장되는 모든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비율(성별, 연령, 장애 유형별).</p> <p>28.18 성별, 연령별, 장애별 인구 10만 명당 노숙인 수.</p> <p>28.19 슬럼가, 비공식 거주지 또는 부적절한 주택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의 성별, 연령별, 장애별 비율(SDG 지표 11.1.1).</p> <p>28.20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의 성별, 연령별, 장애별 비율(SDG 지표 6.1.1).</p> <p>28.21 비누와 물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의 성별, 연령별, 장애별 비율(SDG 지표 6.2.1).</p> <p>28.22 성별, 연령, 고용 상태, 지리적 위치(도시/농촌) 및 장애별 국제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SDG 지표 1.1.1).</p> <p>28.23 전체 인구 대비 하루 국제빈곤선 미화 1.90달러(PPP) 미만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의 비율(성별, 연령별).²⁷¹</p> <p>28.24 성별, 연령별(SDG 지표 1.2.1) 및 장애별 국가 빈곤선 이하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p> <p>28.25 모든 연령대의 남성, 여성, 아동 중 국가적 정의(SDG 지표 1.2.2)에 따라 모든 차원에서 빈곤에 처해 있는 인구의 비율을 장애별로 구분하여 사회적 이동 전후에 비교한 비율.</p> <p>28.26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사는 인구의 비율(연령, 성별, 장애인 기준)(SDG 지표 10.2.1).</p> <p>28.27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SDG 지표 1.4.1), 장애인 가구별 비율.</p> <p>28.28 성별, 연령별, 장애별 식량 불안 경험 척도(FIES)에 근거한 인구 중 중등도 또는 중증 식량 불안의 유병률(SDG 지표 2.1.2).</p> <p>28.29 성별, 연령별, 장애별 영양실조 유병률(SDG 지표 2.1.1).</p> <p>28.30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 유병률, 유형별(영양실조 및 과체중), 성별, 연령 및 장애별로 세분화.</p> <p>28.31 성별, 연령, 장애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SDG 지표 7.1.1).</p>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권에 관한 보고서, [A/70/297](#) 참조. 또한 [특별보고관의 사회 보호에 대한 포용성 보장, 자립과 참여를 지원하는 사회 보호를 위한 선택과 통제, 포괄적인 사회 보호를 통한 빈곤 퇴치에 대한 팩트시트](#) 참조.

²⁷¹PPP 수치는 세계은행에서 업데이트하는 대로 사용할 것. PPP는 가구 및 개인 수준에서 건강, 교육, 생활 수준 등 다양한 박탈감을 파악하는 다차원 빈곤 지수(MPI)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득 기반 빈곤 측정을 보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 두 가지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경우, MPI와 PPP를 함께 사용하면 정책 입안자에게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제29조 - 정치 및 공공 생활 참여에 대한 지표 예시 목록			
정치 및 공공 생활에 참여할 권리			
속성/ 지표	보편적이고 평등한 참정권	선출, 공직, 공적 기능 수행	공적 생활 및 공무 수행에 대한 결사 및 참여의 자유
구조지표	<p>29.1 장애인을 포용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공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모든 수준과 정부 기관에서 모든 공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및 선거 제도에 관한 법률.²⁷²</p> <p>29.2 헌법, 법률 또는 규정에 장애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공직 수행 및 모든 공적 기능 수행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것.²⁷³</p> <p>29.3 투표 절차, 투표 환경, 시설 및 자료, 모든 공공 건물에 대한 접근성 표준을 수립하고 적용할 것.²⁷⁴</p> <p>29.4 유권자 등록 장애인 수와 비율, 관련 민원을 포함하여 선거권 행사 장애인 수 및 비율, 공직을 보유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 수 및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법적 요구 사항.</p>		<p>29.9 특히 반대 의견을 표명할 때 협박, 괴롭힘, 보복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여 장애인 단체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지표 1/4.10)</p> <p>29.10 장애인을 포용하는 대중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²⁷⁵</p>

²⁷²선거법에는 투표권, 선거 입후보, 선거의 설계, 절차 및 모니터링에 관한 법률을 포함할 것. 선거법에는 다음을 포함할 것:

- 합리적인 편의 제공 거부를 포함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 모든 필수 접근성 기능(건축 환경, 정보 및 통신)을 제공.
-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인적 지원(예: 수화 통역, 개인 보조)을 포함한 지원 조치를 받을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및 공직을 수행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불만 처리 메커니즘(선거 과정 중 및 선거 후 이용 가능)의 존재 여부.

²⁷³여기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공직 수행 및 공적 기능 수행에 대한 법률 또는 관행상의 모든 거부 또는 제한이 포함될 것:

- 현재 법적 능력이 박탈된 사람들의 비율(CRPD 제12조 위반).
- 장애를 이유로 한 직간접적인 차별(예: 유권자 등록이나 출마 또는 공직 취임에서 배제하는 법적 조항, "정신이 건전하지 않다고 선언된 사람", "정신이상자", "무능력자"로 간주되는 사람,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부적합" 또는 공식 언어를 쓰고 읽고 말하는 능력과 관련된 배제, 투표 절차의 접근성 부족 또는 투표소 접근 거부)에 해당하는 행위.
- 장애인에 대한 간접적 차별(예: 투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별적 평가에 근거한 배제, 또는 자필 서명, 지문 등 개인 식별/인증에 대한 엄격한 요건으로 인한 배제)에 해당.
- 정신 건강 환경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현재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비율(CRPD 14조 및 19조와 모순됨)
- 등록 절차 또는 요건을 통해 장애인의 투표권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행위 금지.

²⁷⁴제9조(접근성)의 지표 참조.

²⁷⁵대중 참여 법안은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으며,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정부 관리가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협의하고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요구.
- 커뮤니티에서 나온 이니셔티브가 법률이나 공공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려.
- 공공 절차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의 투명성과 적시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

제29조 - 정치 및 공공 생활 참여에 대한 지표 예시 목록			
정치 및 공공 생활에 참여할 권리			
속성/ 지표	보편적이고 평등한 참정권	선출, 공직, 공적 기능 수행	공적 생활 및 공무 수행에 대한 결사 및 참여의 자유
	<p>29.5 투표 절차, 환경, 시설, 자료, 불편사항 제기 메커니즘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 관리 기관의 국가 계획 채택과 유권자 등록 및 유권자 교육, 투표소 근무자 및 직원 채용 및 교육에 관한 포용적 관행 채택.²⁷⁷</p> <p>29.6 장애인이 스스로 비밀 투표를 통해 투표할 권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최대한 존중하여 자신이 선택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권리, 모든 투표 과정에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의무를 보장하는 법률과 규정 제정.²⁷⁸</p>	<p>29.7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의 활동과 행정에 장애인의 참여; - 장애인 후보의 선거 입후보; - 장애인 후보자 선출; - 장애인의 공공 기능 및 공공 서비스 직책 보유.²⁷⁹ <p>29.8 장애인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와 동등하게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으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하는 법적 조항의 존재 여부와 지원 조치의 가용성.</p>	<p>29.11 장애를 이유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 법률 또는 규정의 조항이 없을 것.²⁷⁶</p>

²⁷⁶여기에는 결사의 자유 권리에 대한 법률이나 관행의 부정이나 제한을 포함하지 않을 것:

- 현재 법적 능력이 박탈된 사람들의 비율(CRPD 제12조와 모순됨).
- 장애(예: "정신이상자", "무능력자" 또는 "무능력자" 등)를 근거로 한 경우
- 정신 건강 환경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현재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
- 정신건강 환경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현재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비율(CRPD 19조 및 14조와 모순됨).
- 장애인의 결사의 자유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단체의 등록 요건이나 절차를 통하지 않을 것.

²⁷⁷여기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

- 후보자의 공약 및 플랫폼에 대한 정보, 투표소 접근성, 투표소, 투표 자료, 지침, 선거 관리자와의 의사소통(예: 수화 통역)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
-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의 존중과 구현
- 정보 및 의사소통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형식의 가용성: 점자, 수화, 캡션, 촉각 커뮤니케이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 그림문자 및 기타 대체 및 증강 커뮤니케이션 방식(ICT 포함)
- 장애인의 접근성 관련 추가 요구 사항 고려하기
- 선거 관리 기관에 장애인 담당자를 임명.

²⁷⁸유권자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투표 절차, 투표 환경, 시설 및 자료의 접근성 보장 의무의 이행 및 준수를 대체, 연기 또는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

²⁷⁹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정치 및 공공 생활에서 장애인의 기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기타 홍보 조치;
- 미디어 접근 우대, 미디어가 장애인 후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등 캠페인 기회에 도움이 되는 조치;
- 정당 및 연합이 준수해야 할 후보자 명단에 장애인 할당제 의무화, 장애인이 포함된 후보자 또는 정당 명단에 대한 국가 지원금 우대;
- 의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정석;
- 공공 부문에서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의무적 할당.

이러한 모든 조치는 다양한 장애인, 특히 가장 소외된 집단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되어야 하며,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에 기반할 것.

제29조 - 정치 및 공공 생활 참여에 대한 지표 예시 목록			
정치 및 공공 생활에 참여할 권리			
속성/ 지표	보편적이고 평등한 참정권	선출, 공직, 공적 기능 수행	공적 생활 및 공무 수행에 대한 결사 및 참여의 자유
	29.12 장애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공직 및 공적 기능 수행권, 결사의 자유 및 공공 및 정치 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행사를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지시된 지출에 대한 표시를 설정하는 법적 요건.		
과정지표	29.13 모든 장애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공직 수행, 모든 공적 기능 수행, 결사의 자유, 공적 생활 및 공무 수행에 대한 참여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의 정치 및 공공 참여를 촉진하는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활동.		
	29.14 모든 유형의 장애를 가진 후보자를 내세우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장애에 기반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맞서기 위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공직 수행 및 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인식 제고 조치의 존재 여부, ²⁸⁰ 그리고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할 때 장애인을 포용할 수 있도록 장려.	29.23 시민사회단체(예: 협회, 재단 등)의 등록 시스템이 간단하고, 유연하며, 신속하고, 접근이 용이하고, 부담스럽지 않거나(또는 저렴하거나) 무료가 되도록 보장하는 규정 및 조치. ²⁸² (지표 1/4.15)	
	29.15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고, 선출되고, 공직을 수행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거 접근성, 합리적인 편의 제공 및 지원 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할당된 예산.	29.24 정책 결정의 모든 단계와 정치 및 공공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에 제공되는 교육 활동.	
	29.16 투표권, 피선거권, 공직 및 공적 기능 수행과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 단체를 포함한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협의 절차. ²⁸¹	29.25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할당된 전체 예산 중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29.17 선거인명부에 유권자로 등록된 장애인의 수와 비율을 성별, 연령, 장애 및 선거 관할 구역별로 구분한 표시.	29.21 장애인 후보자가 선거에 입후보하고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된 접근성 관련 조치, 지원 조치 등의 수.		
29.18 선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투표사무원, 선거 참관인 및 시민이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대해 교육을 받고 투표 관련 정보, 특히 접근성, 유권자가 선택한 사람에 의한 지원 권리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대해 제공받은 수와 비율.	29.22 선거관리기구의 일원으로서, 참관인으로서, 선거 과정에서 다른 직책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의 수를 성별, 연령, 장애 및 기능별로 구분한 집계.		
29.19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투표소의 비율.			

²⁸⁰이는 실제 또는 인지된 장애에 근거한 모든 지원자에게 적용되며, 특히 장애가 공개된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지원자와 같이 장애가 공개된 지원자의 경우 더욱 그러함.

²⁸¹이 지표는 CRPD 제4.3조 및 일반논평 2번에 따라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검증할 것을 요구함. 협의 회의, 기술 브리핑,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를 포함한 CRPD 위원회의 7개 위원회는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중에서 법률 초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다음을 수행할 것.

- 협의 과정이 투명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을 보장할 것.
- 장애인 단체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정보를 숨기거나 조건을 부여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
- 등록된 조직과 등록되지 않은 조직을 모두 포함할 것.
- 조기에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

참가자의 관련 비용을 부담할 것.

²⁸² [A/HRC/31/62](#), 40항; [A/70/266](#), 26항 참조.

제29조 - 정치 및 공공 생활 참여에 대한 지표 예시 목록			
정치 및 공공 생활에 참여할 권리			
속성/ 지표	보편적이고 평등한 참정권	선출, 공직, 공적 기능 수행	공적 생활 및 공무 수행에 대한 결사 및 참여의 자유
	29.20 접근성 측면에서 본인이 선택한 사람 또는 선거 관리인의 도움을 받거나 투표권 행사를 위해 모든 종류의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받은 장애인 수.		위해 장애인 단체에 할당된 재정 지원 비율. ²⁸³
	29.26 장애인의 정치 및 공적 생활 참여 권리에 대한 접수된 진정 중 조사 및 판결이 내려진 비율, 진정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비율, 정부가 이를 준수한 비율(각각 메커니즘 유형별로 구분). ²⁸⁴		
결과지표	29.27 전국, 지역 및 지방 선거의 성별, 연령, 장애 및 선거구별 투표율. 29.28 선거권자 중 선거 과정에서 불만 사항을 제출하고 선거권 행사를 위한 구제책을 제공받은 장애인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 장애, 선거구별). ²⁸⁵	29.29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율과 비교한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선거 관할구역별로 세분화된 선거 입후보자(후보자)의 장애인 비율(SDG 16.7.1 기준) 29.30 국가별 분포와 비교한 공공기관(국회 및 지방의회, 공무원, 사법부)의 성, 연령, 장애인, 인구집단별 직책 비율(SDG 지표 16.7.1 기준)	29.31 장애인 단체의 수, 단체의 종류, 대표 선거구, 총 회원 수 및 등록 현황에 따라 세분화된 수. ²⁸⁶ 29.3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반응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성별,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SDG 지표 16.7.2) (지표 1/4.31)

²⁸³장애인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다음과 같아야 할 것.

- 제3자 중개를 피할 것.
- 주로 장애 권리 옹호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 단체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
- 장애 여성, 장애 아동, 청소년 단체를 위한 특정 기금을 할당할 것.
- 공식 또는 비공식 네트워크 및 플랫폼, 특히 지적 장애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및 플랫폼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자기 옹호 조직을 포함할 것. 이러한 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법적 능력 제한 또는 거부로 인해 또는 등록 자금 부족으로 인해 법적 지위 및 등록이 방해받는 경우에도 자금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장애인 단체 간에 자금을 균등하게 분배할 것.
- 프로젝트 기반 자금이 국한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핵심 기관 자금도 포함할 것.
- 지원받은 자금과 관계없이 장애인 옹호 의제를 결정할 때 장애인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
-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자금 지원 신청 프로세스를 채택할 것.

²⁸⁴투표권과 관련하여 불만 사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음.

- 다음에 의한 처리: a) 선거 관리 기관(EMB)을 포함한 행정 기관, b) 국가인권기구 및/또는 평등기구; c) 사법부
- 다음에 관해 a) 유권자 등록 및 자격; b) 투표권의 효과적인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접근성 및 기타 문제;
- 선거 과정 전, 후 또는 도중에 제출된 것(예: 장애인이 투표를 시도하는 경우, 접근성 또는 지원 부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²⁸⁵해당되는 경우, 이 지표에는 장애인의 접근 및 포함과 관련하여 국내 및 국제 관찰자 그룹이 제시한 권장 사항의 수와 선거 과정에서 준수된 권장 사항의 비율도 포함될 수 있음.

²⁸⁶이 지표를 해석하려면 신중한 분석이 필요함.. 조직 수의 증가 또는 감소는 다양한 발전을 반영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새로운 조직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발전함. 대규모 조직은 분할 등을 할 수 있음. 조직의 전체 구성원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함.

제30조 -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참여에 관한 지표 예시 목록			
문화 생활,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스포츠 참여			
속성/ 지표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과 발전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스포츠에 대한 접근 및 개발*	모든 장애인의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 인정 및 지원
구조지표	<p>30.1 장애인이 문화 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문에 걸쳐 제정된 입법 조항.²⁸⁷</p> <p>30.2 관광 명소, 박물관, 미술관, 문화 센터 및 시설, 국립 공원 및 기타 공공 장소, 스포츠 센터 및 시설과 관련하여 채택된 접근성 표준은 건축 환경, 정보 및 통신의 접근성을 포괄할 것. (지표 9.1, 9.3, 9.4 기준)²⁸⁸</p> <p>30.3 디지털 및 소셜 미디어를 포함하는 대중 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 행위자 모두를 위한 정보 및 의사소통의 접근성에 대한 필수 표준을 설정하는 법적 틀.²⁸⁹(동일 21.1.2)</p>		<p>30.4 농문화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연구, 인식 제고 및 문화적 풀뿌리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인식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전략/계획.²⁹⁰</p> <p>30.5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장애인의 선택/요청에 따라 점자, 읽기 쉬운 형식, 자막, 촉각 의사소통, 의사소통 지원자 등의 사용을 장려, 공식 상호 작용에서 수화의 사용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²⁹¹(21.3과 21.4 동일)</p>

²⁸⁷법률에는 다음과 같이 이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할 것.

- 미디어에 관한 법률(제21조 지표 참조)
- 지적 재산에 관한 법률(시각 장애인 또는 기타 인쇄 장애가 있는 사람의 출판 저작물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마라케시 조약의 지표 30.5 참조)
- 문화산업(영화관, 극장, 도서관 등) 기업의 상업 라이선스에 관한 법률
- 스포츠 협회, 그 기능 및 활동을 다루는 법률 및 규정

²⁸⁸이용 가능한 경우 가이드 방문 및 투어를 포함한 관련 서비스는 장애인을 포함해야 하며 접근성과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

²⁸⁹이 지표는 예를 들어 통신 법률, 방송 코드, 관련 규정, 인터넷, 디지털 기술, 통신 중계 서비스(ITU-T F.930 멀티미디어 통신 중계 서비스 참조)를 포함한 전화 및 이동 전화에 대한 접근성 조항을 나타냄.. “소셜 미디어”에는 웹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됨.

²⁹⁰문화적 정체성의 인식과 발전 측면에서 다른 문화적 배경과의 교차점(예: 원주민 장애인)을 고려할 것.

²⁹¹여기에는 특히 수화의 경우 모든 형식이나 언어, 방언, 비차별 조항, 합리적인 편의 제공, CRPD 제2조에 따른 의사소통의 정의를 포함할 것.

제30조 -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참여에 관한 지표 예시 목록			
문화 생활,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스포츠 참여			
속성/ 지표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과 발전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스포츠에 대한 접근 및 개발*	모든 장애인의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 인정 및 지원
	30.6 시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또는 기타 인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출판물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마라케시 조약 비준. ²⁹² 장애인을 적극적 참여자이자 수혜자/관객으로 포함하는 문화 ²⁹³ 생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정책/전략/계획 채택.	30.8 장애인을 포함하는 스포츠에 관한 국가 정책/전략/계획의 채택. ²⁹⁴ 30.9 장애인을 포함하는 국가 정책/전략/레크리에이션 및 여가 계획의 존재.	

²⁹²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웹사이트 참조: <https://wipolex.wipo.int/en/treaties/textdetails/13169>

²⁹³ 계획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아야 함.

- 효과적인 구현을 위한 벤치마크, 측정 가능한 목표 및 충분한 자원을 예측,
-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소외된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포함.
- 공공도서관의 접근성과 읽기 쉬운 디지털, 오디오 및 점자 출판물 재고 홍보.
- 출판사, 공립 및 사립 도서관, 교육 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을 개발하고 강화.
- 연극, 무용, 음악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통합 시설, 프로그램 및 활동을 개발하고 홍보.
- 장애인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포함된 문화 및 관광 유적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모든 여행사 및 관광 기관에 접근 가능한 관광에 대한 세계 관광기구 권장 사항을 홍보.

²⁹⁴ 이러한 계획은 장애 관련 스포츠와 주류 스포츠를 모두 다루고 다음 사항을 다룰 것.

- 효과적인 구현을 위한 벤치마크, 측정 가능한 목표 및 충분한 자원을 예측하고,
- 학교 스포츠부터 프로 스포츠까지 모든 수준에서 장애 여성과 장애 아동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
- 모든 연령의 장애인이 포용적인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원을 보장.
- 모든 수준의 주류 스포츠 활동에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참여를 최대한 장려.
- 레크리에이션과 여가를 위한 포괄적인 공간을 장려.
- 스포츠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에 관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침을 포함.

제30조 -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참여에 관한 지표 예시 목록

문화 생활,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스포츠 참여

속성/ 지표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과 발전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스포츠에 대한 접근 및 개발*	모든 장애인의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 인정 및 지원
과정지표	<p>30.10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학습 프로그램 및 행사를 포함한 문화 프로그램 내 장애인 참여 할당량 등을 포함하여 문화 생활에 장애인의 참여를 촉진 하기 위해 채택 된 구체적인 조치.</p> <p>30.11 장애인을 적극적 참여자 및 수혜자/관객으로서 문화생활에 장려하고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와 활동에 할당된 예산.²⁹⁵</p> <p>30.12 장애인의 문화 생활 분야와 관련된 고등 교육 및 전문성 개발과 문화 행사 참여를 위한 공공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에 예산 할당.</p> <p>30.13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문화 생활에 대한 접근과 참여를 촉진하도록 훈련된 관련 공공 및 민간 부문 직원의 수와 비율(공공/민간) 및 업무 영역별 분류.²⁹⁶</p>	<p>30.14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스포츠 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채택된 구체적인 조치(예: 비용 면제 또는 감면, 트레이너 및 코치 훈련 포함).²⁹⁷</p> <p>30.15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스포츠에 적극적 참여자 및 수혜자/관객으로 ²⁹⁸장려하고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 및 활동에 할당된 예산.</p> <p>30.16 부문(공공/민간) 및 업무 영역(레크리에이션/여가)별로 분류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스포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도록 훈련된 관련 공공 및 민간 부문 직원의 수와 비율 /스포츠).²⁹⁹</p>	<p>30.17 미디어 소유권(민간/공공), 콘텐츠 유형(뉴스/기타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포함 및 접근성 기능 제공 (지표. 21.13, 21.14 참조)</p> <p>30.18 특히 공식적인 상호 작용과 관련하여 의사소통 지원을 제공하는 기타 수화 통역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속기사, 캡션 작성자 및 기타 관련 전문가(전문 인증 및 공식 업무 승인))의 수를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과 비교(21.17).</p>

²⁹⁵ 여기에는 잠재적인; 마라케시 조약 이행 조치 등 장애인이 자신의 창의적, 예술적, 지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류 환경 및/또는 행사뿐만 아니라 장애인 예술 축제와 같은 장애 관련 특별 행사에도 장애인의 참여를 지원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음.

²⁹⁶ '관련 공공 및 민간 부문 직원'에는 문화 활동, 행사, 프로그램 조직에 참여하고 박물관, 극장, 영화관, 관광 명소 등 문화 장소, 특히 대중과 소통하는 곳에서 일하는 직원이 포함.

²⁹⁷ 훈련은 장애인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데 직면할 수 있는 장벽을 다루어야 함.

²⁹⁸ 이와 같은 장애 관련 행사뿐만 아니라 주류 환경 및/또는 행사에 장애인의 참여를 지원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음.

²⁹⁹ '관련 공공 및 민간 부문 직원'에는 스포츠 활동, 행사, 프로그램 조직에 관여하는 직원, 체육 교사 등 관련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이 포함.

제30조 -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참여에 관한 지표 예시 목록			
문화 생활,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스포츠 참여			
속성/ 지표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과 발전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스포츠에 대한 접근 및 개발*	모든 장애인의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 인정 및 지원
	<p>30.19 장애인, 그 가족 및 일반 대중에게 장애인의 문화 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활동.</p> <p>30.20 장애인의 문화 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와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구현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의 조직을 통한 활동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협의 프로세스.³⁰⁰</p> <p>30.21 문화 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에 대해 접수된 불만 사항 중 장애에 따른 차별 및/또는 장애인 관련 차별을 주장하며 조사 및 판결을 받은 비율; 신고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 그리고 정부 및/또는 의무 수행자가 준수한 후자의 비율; 각각은 일종의 메커니즘으로 분류됨.</p>		
결과지표	<p>30.22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및 문화 유적지에 접근하는 장애인의 수 및 비율(성별, 연령 및 장애별로 분류)³⁰¹</p> <p>30.23 성별, 연령, 장애별로 분류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장애인이 문화 생활 및 활동에 소비한 평균 시간.³⁰²</p>	<p>30.25 성별, 연령, 장애, 지리적 위치 및 해당되는 경우 스포츠 종류(주류/장애인별)별로 분류된 스포츠, 피트니스 및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의 수와 비율.</p> <p>30.26 경쟁을 위해 공공 재정 지원을 받는 장애인 운동선수의 수와 비율을 다른 운동선수와</p>	<p>30.27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한 일반 인구 중 장애별로 분류된 사람의 비율.³⁰⁵(8.20과 동일)</p> <p>30.28 성별, 연령, 장애, 지리적 위치에 따라 분류된 장애인 생활 또는 관련 정체성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p>

³⁰⁰ 이 지표는 CRPD 제4(3)조 및 [일반논평 2](#)번에 따라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검증할 것. [협의 회의](#), 기술 브리핑,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를 포함한 CRPD 위원회의 [7개 위원회는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중에서 법률 초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요청](#)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다음을 수행할 것.

- 협의 과정이 투명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을 보장.
- 장애인 단체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정보를 숨기거나 조건을 부여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
- 등록된 조직과 등록되지 않은 조직을 모두 포함할 것.
- 조기에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
- 참가자의 관련 비용을 부담할 것.

³⁰¹ 이 지표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기반함.

³⁰² 이 지표의 목적으로 시간 사용 설문조사를 사용할 수 있음. 시간 사용 조사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계 조사입니다. 시간 사용 설문조사는 다양한 목적에 유용하지만, 표본과 설문지가 정보를 장애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경우 장애인이 문화 활동에 소비한 시간을 평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³⁰⁵ [사회적 거리 척도](#)를 기반으로 한 것과 같은 인식 조사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몰도바의 차별 방지 및 철폐와 평등 보장에 관한 협의회, OHCHR 및 UNDP "몰도바 공화국의 평등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2015)를 참조.

제30조 -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참여에 관한 지표 예시 목록			
문화 생활,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스포츠 참여			
속성/ 지표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과 발전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스포츠에 대한 접근 및 개발*	모든 장애인의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 인정 및 지원
	30.24 성별, 연령, 장애, 지리적 위치별로 구분된 문화생활 분야와 관련된 고등교육 및 전문성 개발을 위해 공공 재정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수와 비율을 다른 사람과 비교. ³⁰³	비교하여 성별, 연령, 장애 및 지리적 위치별 분류. ³⁰⁴	30.29 성별, 연령, 장애별로 분류된 국가 내 토착 문화 및 소수 문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장애인을 수용한다고 보고한 일반 인구의 비율.

* 지표 30.8 및 30.25 는 카잔 행동 계획의 액션 2에 따라 연방 사무국이 조정한 스포츠 모델 지표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개방형 실무 그룹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함.

³⁰³제도적 맥락에 따라, 문화 활동 분야(연극, 음악 등) 별로 더 세분화하면 보다 정확한 비교에 유용할 수 있음.

³⁰⁴제도적 맥락, 스포츠, 경쟁 수준(국내, 국제) 등에 따라 추가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비교에 유용할 수 있음.

제32조 - 국제협력에 관한 지표 예시				
국제 협력이 장애인을 포용하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속성/ 지표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국제 협력	역량 강화	기술 및 경제적 지원	연구와 지식
구조지표	<p>32.1 ³⁰⁶민주주의 증진, 법치주의, 올바른 거버넌스 및 인권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국제 협력 협정(양자 또는 다자)에 채택된 법률 및 정책에는 다음이 포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협력에 장애인 권리를 포함시키는 목표와 약속; - 각 구호 활동과 자원 할당에 있어서 장애인의 포함에 관한 지표³⁰⁷ - CRPD 원칙 및 표준에 대한 보편적인 디자인, 접근성 및 존중을 적용하고 지원 활동에 대한 성별, 연령 및 장애별 데이터 수집 및 분류에 대한 요구 사항 - 원조 활동과 관련된 모든 조달 계약의 접근성 표준 - 활동의 계획,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있어 장애인 및 장애인 대표 조직의 협의 및 참여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요구 사항³⁰⁸ - 사람과 환경에 대한 국제 협력 협정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 및 보호 정책 -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인이 구호 활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고려하여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p>32.2 대학과 연구 센터는 연구 수립에 관한 지침/정책을 채택할 것.</p> <p>장애인 통합과 관련된 활동 및 자금 조달을 추적하는 지표</p> <p>연구 우선 순위, 방법, 설계, 구현 및 연구 프로젝트의 평가를 정의하기 위해 장애인을 포함한 참여 방법론.</p>

³⁰⁶“협정”은 국제 협력 및 개발을 통한 활동 및 조치 이행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 프로그램, 금융 수단, 지원 방식, 의정서 및 기타 형태의 합의를 포함.

³⁰⁷이는 도입이 승인된 장애인의 포함 및 권한 부여에 관한 OECD DAC 정책 지표와 장애 지표에 대한 보고 안내 핸드북(출시 예정)을 준수하거나 이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음. OECD, DAC 개발 재정 통계 작업반, [장애인 포함 및 권한 부여에 대한 지표에 대한 핸드북, DCD/DAC/STAT/RD\(2019\)1/RD1, 페이지 2를 참조.](#) 지표는 또한 추적 및 분석을 허용할 것.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지원하는 활동과 자금 조달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할 것. [OECD DAC 성평등 정책 마커](#) 참조.

³⁰⁸특히 활동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유권자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장애인 대표 단체를 포함.

제32조 - 국제협력에 관한 지표 예시				
국제 협력이 장애인을 포용하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속성/ 지표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국제 협력	역량 강화	기술 및 경제적 지원	연구와 지식
과정지표	<p>32.3 장애인 권리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는 국제 협력 협정의 비율.</p> <p>32.4 해당되는 경우 글로벌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예: 2018년 세계 장애 정상 회담, 2016년 세계 인도주의 정상 회담 등)에 보고된 목표 및 약속의 수와 진행 중이거나 달성된 비율.</p> <p>장애인을 포함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을 채택한 국가 협력 기관의 국가 현장 사무소의 비율.³⁰⁹</p> <p>32.6 국가 협력 기관의 국가 현장 사무소 비율 1) 장애인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거나 혜택을 주는 계약 이행하거나 2) 장애인 단체와 양해각서 및/또는 공식적인 협력 계약을 채택한</p> <p>32.7 대표 조직을³¹⁰ 포함 하여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된 협의 과정 과 사전 협의를 통해 체결된 합의 비율은 장애인 포함이 다음과 같은 합의로 분류할 것. 1) 주요 목표이며 예상 결과에 기본임. 2) 중요하고 의도적인 목표이지만 합의의 주된 이유는 아님. 3) 전혀 타겟팅되지 않음.³¹¹</p> <p>32.8 장애인 권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국제 협력 협정의 설계, 체결,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담당하는 직원의 비율.³¹²</p> <p>32.9 조사 및 판결된 국제 협력 협정 활동과 관련하여 장애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접수된 불만 사항의 비율 신고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 그리고 정부 및/또는 의무 수행자가 준수한 후자의 비율; 각각은 일종의 메커니즘으로 분류됨.</p>			
결과지표	<p>32.10 장애인 대표단체를 파트너로 포함하는 국제협력 협정의 수와 비율.</p> <p>장애인을 포함하는 국제 협력 협정의 수와 비율. 1) 주요 목표이며 예상 결과에 기본임. 2) 중요하고 의도적인 목표이지만 합의의 주된</p>	<p>3 2.12 국제 협력 협정의 일환으로 훈련을 통해 혜택을 받은 장애인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 장애별로 구분)</p> <p>32.13 국제 협력 협정을 통해 훈련을 받은 국제 협력 기관, 정부 및 모니터링 체계 (모든 수준의 정부 및 모든 부문,</p>	<p>3 2.14 장애인 포함이 다음과 같은 경우 협정에 따라 분류된 국제 협력 협정에 대한 USD 투자 비율: 1) 주요 목표이며 예상 결과에 기본임. 2) 중요하고 의도적인 목표이지만 합의의 주된 이유는 아님. 3) 전혀 타겟팅되지 않음.</p>	<p>32.15 장애인의 포함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구 및 과학 및 기술 지식에 대한 접근에 대한 USD 투자 비율은 다음과 같음. 1) 주요 목표이며 예상 결과에 기본임. 2) 중요하고 의도적인 목표이지만 합의의 주된 이유는 아님. 3) 전혀 타겟팅되지 않음.</p>

³⁰⁹FAQ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라는 용어는 지역 통합 기구인 유럽 연합을 포함하여 협약의 당사자(CRPD 제44조 참조)로 해석할 것.

³¹⁰ 이 지표는 CRPD 제4(3)조 및 일반 논평 2번에 따라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검증할 것을 요구함. 협의 회의, 기술 브리핑, 온라인 협의 설문 조사를 포함한 CRPD 위원회의 7개 위원회는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중에서 법률 초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다음을 수행할 것.

- 협의 과정이 투명 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을 보장할 것.
- 장애인 단체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정보를 숨기거나 조건을 부여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
- 등록된 조직과 등록되지 않은 조직을 모두 포함할 것.
- 조기에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
- 참가자의 관련 비용을 부담할 것.

³¹¹ 장애인의 통합 및 권한 부여에 관한 OECD DAC 정책 지표에 대한 보고 지침은 핸드북 참조(출시 예정).

³¹² 훈련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 차별 금지, 합리적인 편의 제공, 보편적 디자인, 접근성(접근 가능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포함),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그리고 그들의 대표단체.

제32조 - 국제협력에 관한 지표 예시

국제 협력이 장애인을 포용하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속성/ 지표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국제 협력	역량 강화	기술 및 경제적 지원	연구와 지식
	이유는 아님 . 3) 전혀 타겟팅되지 않음.	통계청, 국가 인권 기관 등 포함)의 직원 비율(성별, 연령 및 장애 기준).	32.16 장애인의 이익을 위한 접근 가능 및 보조 기술에 대한 접근 및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 이전과 관련된 국제 협력 협정의 비율.	

제33조 - 국가 이행 및 모니터링에 관한 지표 예시 목록

국가적 이행 및 모니터링			
속성/ 지표	포컬포인트 및 조정 메커니즘	독립적인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장애인 단체 참여 *
구조지표	<p>33.1 협약 이행을 위해 장애인의 권리를 주류화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진 정부 내(정부, 부처, 분야의 모든 부서와 수준에 걸쳐) 하나 이상의 포컬포인트를 법적 및/또는 법적으로 임명. ³¹³(idem 1/4.7)</p> <p>33.2 국가적 CRPD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명확한 구조, 임무, 리더십, 주류화 및 이행을 보장하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다양한 부문과 수준에 걸쳐 관련 조치를 촉진하기</p>	<p>33.6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 및 그 대표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협약 이행을 촉진, 보호,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할 것.</p> <p>- 하나 이상의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포함 ³¹⁶.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임명할 것.</p> <p>-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 기관의 상태 및 기능과 관련된 원칙을 존중할 것 ³¹⁷(SDG 지표 16.a.1 포함). ³¹⁸</p>	<p>33.8 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데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모든 장애 지지층의 대표 조직이 참여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절차와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법적 또는 규제 조항. ³¹⁹(1/4.9와 유사)</p> <p>33.9 CRPD 이행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장애인 조직 강화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p>

³¹³하나의 일반 또는 주요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부처나 기관 내의 담당자를 지정할 때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과 비차별 의무에 대한 지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또한, 부처 구조 내 기관(예: 장애인 담당국) 또는 부처 산하 기관(예: 장애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의 포컬포인트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질 것. 장애인 조직의 대표를 포함하여 정부 주도의 장애인 기관을 설립한다고 해서 장애인 대표 조직을 통해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제4조 3항에 따른 국가의 의무가 모두 소진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것. 그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책의 개발 및 시행.

³¹⁶국가는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때 다음 기준을 따를 것.

- 프레임워크가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단일 개체로 구성된 경우: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파리 원칙을 준수할 것.
- 프레임워크가 하나 이상의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엔터티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적어도 하나는 파리 원칙을 준수할 것.

CRPD 위원회, 독립적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침 및 위원회 작업 참여(2016), [CRPD 절차 규칙 부록 - CRPD/C/1/Rev.1](#), para. 12.

³¹⁷독립적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을 것.

- 당사국의 행정부로부터 독립될 것.
- 계획 및 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갖춘 국가 예산 할당을 통해 적절한 자금과 자원(직원 간의 적절한 기술 전문 지식 포함)을 확보할 것.
- 공개적이고, 민주적이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임명되며, 정해진 기간 동안 권한을 부여받는 구성원이 있을 것.
- 장애인 단체의 “대표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을 고려할 것(파리 원칙, “독립성과 다원주의의 구성 및 보장” 섹션, 1(a) 참조).
-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헌법 또는 법률에 명시)을 갖출 것.
- 어떤 문제가 고려 대상인지 결정하고 고려할 때 자율성을 행사할 것.
- 도시, 농촌 또는 외딴 지역 모두에서 정보, 데이터베이스, 기록, 시설 및 건물에 신속하고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가질 것.
- 모든 사람, 단체, 조직, 정부 기관 또는 단체에 제한 없이 접근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음.
-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불만 사항 처리 권한이 있는 경우, 협약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제출한 불만 사항을 듣고 고려할 것.

³¹⁸CRPD 제33조(2)에 규정된 지표 33.5에는 SDG 지표 16.a.1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파리 원칙을 준수하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 글로벌 연합, 인증 차트 참조.

³¹⁹규정은 모니터링 활동의 계획 및 실행에 시민 사회를 참여시키도록 독립적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구성원과 직원을 의무화할 것. 예를 들어, IMF나 NHRI의 임원은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프레임워크 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협의 프로세스를 수행해야 함. 공동 활동의 경우, 장애인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장애인 권리 침해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기존 주거 시설 및 서비스 조사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어야 함.

제33조 - 국가 이행 및 모니터링에 관한 지표 예시 목록			
국가적 이행 및 모니터링			
속성/ 지표	포컬포인트 및 조정 메커니즘	독립적인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장애인 단체 참여 *
	<p>위해 정부 내에 조정 메커니즘을 법적으로 임명. ³¹⁴(idem 1/4.8)</p> <p>33.3 포컬포인트 또는 조정 메커니즘의 기능, 참여 및 협력에 관해 공공 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 또는 프로토콜 채택.</p> <p>33.4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포컬포인트 및 조정 메커니즘의 기능 및 참여에 관한 규정 및/또는 프로토콜 채택.³¹⁵</p> <p>33.5 CRPD 이행과 관련된 포컬포인트 및 조정 메커니즘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지출에 대한 지표를 채택해야 하는 법적 및/또는 법적 요구.</p>	<p>33.7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메커니즘에 대한 공공 지출에 채택 및 적용되는 CRPD 구현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지표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p>	<p>예산에서 자금 할당을 요구하는 법적 조항.³²⁰(1/4.11과 유사)</p>
과정지표	<p>33.10 CRPD 교육을 받은 조정 메커니즘에 속하거나 연락 담당자로 임명된 공공 부문 직원의 수와 비율.³²¹</p> <p>33.11 모든 관련 공공 부문 직원에게 발행된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의 수와 연락 담당자 및 조정 메커니즘, 이들의 임무 및 참여 절차/프로토콜에 관해 발행된 지침 문서의 수.</p>	<p>33.12 독립적인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의해 수행되는 협약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역량 구축 및 교육 계획을 포함한 홍보 활동의 유형 및 수는 대상 고객(예: 일반 대중, 공공 부문 직원 등)별 분류.³²²</p> <p>33.13 국내 법률 초안, 정책, 전략, 행정 결정 및 기타 행정 행위 등의 수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의해 검토되고, 프로세스 종류와 검토 요청 여부에 따라 분류됨.</p> <p>33.14 인권 모니터링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 교환, 상호 기술 자문 등의 목적을 포함하여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메커니즘과 국가 및/또는 지방 통계청 간의 공식적인 협력/협력 협정을 채택함. 장애인도 포함.³²³</p>	<p>33.1 7 예산은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의 국가 예산 배정 및 장애인 단체 배분. (1/4.16과 유사)</p> <p>33.18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장애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CRPD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량 구축 활동의 수.</p> <p>33.19 장애인 단체의 참여가 가능한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모니터링 프로세스/활동의 수와 비율은 개입/프로세스 및 주제 유형별 분류.</p>

³¹⁴제5~30조에 규정된 의무 이행과 국제 모니터링과 관련된 의무 이행을 조정하는 것 외에도 조정 메커니즘은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명시된 일반 및 특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위임될 것.

³¹⁵장애인 단체와 관련하여 이 지표는 CRPD 제4조 3항에 따른 국가 의무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도 기여하며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관련 지표와 함께 고려될 것.

³²⁰자금 지원 계획은 모니터링 활동에 기여하는 장애인 조직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

³²¹훈련에는 최소한 장애, 차별 금지, 합리적인 편의 제공, 보편적 디자인, 접근성(접근 가능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포함)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을 포함하여 협약의 일반적인 개요와 주요 원칙 및 개념을 포함할 것. , 장애인 및 그들의 대표 조직과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할 의무, 그리고 각 포컬포인트의 임무와 관련된 협약 영역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려(예: 교육부 포컬포인트의 경우 다음과 같음. 통합 교육에 대한 권리에 관한 제 24조에 해당).

³²²"독립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따른 이 프로세스와 결과 지표는 프레임워크 내에서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수행된 조치를 통해 의무 이행을 평가.

³²³예를 들어, OHCHR의 지원을 받아 NHRI와 국가 통계청 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음(예: 케냐와 팔레스타인). 추가 정보 및 양해각서 템플릿을 확인하려면 hrindicators@ohchr.org 로 문의.

제33조 - 국가 이행 및 모니터링에 관한 지표 예시 목록			
국가적 이행 및 모니터링			
속성/ 지표	포커포인트 및 조정 메커니즘	독립적인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장애인 단체 참여 *
		<p>33.15 다음을 포함한 모니터링 활동의 유형 및 횟수 (규정에 따라 또는 사실상) 장애인이 자유를 박탈당하는 기관 및 기타 장소 방문, 장애인 서비스 제공업체 시설 점검, 채택된 법률 및 정책 평가.</p> <p>33.16 장애인의 권리를 다루는 국제 및 지역 모니터링 메커니즘(예: CRPD 위원회 및 기타 조약 기관)에 제출된 기고문을 포함하여 독립적 모니터링 체제에서 발행한 보고서의 수와 비율.</p>	
결과지표	33.20 CRPD 이행과 관련된 장애 담당자 및 조정 메커니즘, 부처 간, 부처 간 정부 위원회 또는 실무 그룹 간의 회의 수.	<p>33.21 CRPD에 따른 권리와 구제 방법에 대해 독립적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지원을 구하는 개인 또는 조직의 수, 장애인과 관련된 독립적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의한 집단 사건의 사법 체계에 회부된 비율.³²⁴</p> <p>33.22 해당되는 경우, ³²⁵협약 위반을 주장하는 모니터링 체계의 메커니즘에 제출되어 조사 및 판결된 개인 또는 그룹 불만 사항 중 접수된 불만 사항의 비율 신고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 그리고 정부 및/또는 의무 수행자가 준수한 후자의 비율.³²⁶</p>	<p>33.23 독립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장애인 대표 조직의 수는 조직의 종류, ³²⁷장애인을 대표하는 선거구 및 지리적 위치별 분류.</p> <p>33.24 정부 장애 담당관 및/또는 조정 메커니즘의 업무에서 역할을 맡은 장애인 대표 조직의 수는 조직 종류, ³²⁸장애인이 대표하는 선거구, 지리적 위치별 분류.</p>

* 제33조 3항은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 및 그 대표단체”를 의미함. 현재 목적을 위해 지표는 장애인 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CRPD 제4(3)조 및 33(3)조에 대한 CRPD 위원회의 [일반 논평 7번](#) 과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 보고관의 참여 보고서([A/HRC/31/62](#)) 를 참조.

³²⁴ 가장 소외된 집단에 속하는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추세를 파악하고 추가로 처리하기 위해 집단 불만사항의 회부는 침해된 권리/물건별로 분류하고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관련 기준으로 분류할 것.

³²⁵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 기관의 지위 및 기능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진정 메커니즘을 위임받을 것을 제안하지만 요구하지는 않음. “국가 기관은 개별 상황에 관한 불만과 청원을 듣고 고려할 권한이 있을 수 있음. 개인, 그 대표자, 제3자, 비정부 기구, 노동 조합 협회 또는 기타 대표 조직이 사건을 제기할 수 있음.”

³²⁶ 가장 소외된 집단에 속하는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추세를 파악하고 추가로 다루기 위해서는 개인 및 집단 불만 사항을 침해된 권리/물건별로 분류하고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관련 기준으로 분류해야 함.

³²⁷ 장애 여성, 장애 아동 및 청소년, 장애 원주민과 같이 소수 대표 집단의 조직에 대한 명시적인 정보를 포함. CRPD 조항 4(3) 및 33(3)에 대한 CRPD 위원회의 [일반 논평 7번을 참조](#).

³²⁸ 장애 여성, 장애 아동 및 청소년, 장애 원주민과 같이 소수 대표 집단의 조직에 대한 명시적인 정보를 포함. CRPD 조항 4(3) 및 33(3)에 대한 CRPD 위원회의 [일반 논평 7번을 참조](#).